국립생물자원관 10주년
10th Anniversary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국제동물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제4판

한국어판

김일회 번역 / 국제생물과학연합회 채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 10주년
10th Anniversary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국제동물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제4판

한국어판

김일회 번역 / **국제생물과학연합회** 채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이 규약의 저자는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이다.

편집위원회

W. D. L. Ride (대표)
H. G. Cogger
C. Dupuis
O. Kraus
A. Minelli
F. C. Thompson
P. K. Tubbs

발 간 사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 발효됨으로써 우리 주변의 생물종은 이제 중요한 자원이자 국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국가 생물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생물 주권에 대한 주장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을 파악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생물의 이름인 학명은 18세기 분류학의 선구자인 린네(Linnaeus)에 의해 이명법으로 정립된 후, 식물학과 동물학에서는 세계의 석학으로 구성된 명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명명규약을 정하여 규칙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하도록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1년에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이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1일 제4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동물명명규약은 전문적인 학술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분류학자들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된 명명규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발효된 제2판의 요약문이 처음으로 번역되어 1971년과 1972년 한국동물학회지에 출판된 바 있으나, 전문을 우리말로 해석하여 출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디 이번에 발간되는 국제동물명명규약집 한국어판이 분류학자의 전문연구 뿐만 아니라 생물학자 양성교육에도 널리 활용되어 자생생물의 발굴과 목록화를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생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어판의 번역을 기꺼이 맡아주신 강릉원주대학교 김일회 명예교수님과 감수해주신 인하대학교 민기식, 이화여자대학교 박중기, 연세대학교 한호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국립생물자원관장 백운석

목 차

일러두기 IX
제4판 전문 X
서 문 XIV

국제동물명명규약

머리말 3

제1장 동물명명법
제1조. 정의 및 범위 3
제2조. 동물명명법에서의 특정 명칭의 허용성 5
제3조. 발효일자 5

제2장 동물 학명의 단어 수
제4조. 종군 이상의 분류계급의 분류군 명칭 5
제5조. 이명식 명명 원칙 6
제6조. 삽입명칭 6

제3장 출판물의 기준
제7조. 적용 7
제8조. 출판 저작물의 구성 요건 7
제9조. 출판 저작물이 아닌 발표물 9

제4장 적합성의 기준
제10조. 적합성과 관련된 규정 10
제11조. 필요조건 11
제12조. 1931년 이전에 발표된 명칭 17
제13조. 1930년 이후에 발표된 명칭 18
제14조. 저자 불명인 명칭과 명명활동의 저작권 20
제15조. 1960년 이후에 발표된 명칭 및 명명활동 20
제16조. 1999년 이후에 발표된 명칭 21

제17조. 하나 이상의 분류군이나 잡종 기원의 분류군에 붙여진 것으로 밝혀진 명칭이나 동물의 생활사 단계 또는 비정상 표본을 근거로 붙여진 명칭 22
제18조. 부적당한 명칭 및 반복명칭 23
제19조. 수정, 부정확한 철자법 및 강제적 변경의 지위 23
제20조. 화석에 대해 붙여진 -ites, -ytes 또는 -ithes로 끝나는 속군명칭 23

제5장 출판 일자
제21조. 출판 일자의 결정 24
제22조. 출판 연도의 인용 25

제6장 명칭 및 명명활동의 유효성
제23조. 우선권 원칙 26
제24조. 동시에 발표된 명칭들, 철자법 또는 명명활동 사이의 우선순위 31

제7장 명칭의 형성과 처리
제25조. 명칭의 형성과 처리 33
제26조. 학명에서의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전제 조건 33
제27조. 발음부호와 기타 기호 33
제28조. 첫 글자 34
제29조. 과군명칭 34
제30조. 속군명칭의 성 36
제31조. 종군명칭 39
제32조. 원철자법 40
제33조. 사후철자법 43
제34조. 분류계급 또는 조합의 변경에 대한 사후철자법의 강제적 변경 45

제8장 과군 공칭분류군 및 이들의 명칭
제35조. 과군 45
제36조. 동등 원칙 46
제37조. 공칭모식 분류군 47
제38조. 과군명칭들 사이의 이물동명관계 47
제39조. 모식속명의 이물동명관계 또는 금지로 인한 무효성 47

제40조. 모식속의 동물이명관계 ····· 48
제41조. 모식속의 오동정 및 모식확정 결여 ····· 49

제9장 속군 공칭분류군 및 이들의 명칭
제42조. 속군 ····· 49
제43조. 동등 원칙 ····· 50
제44조. 공칭모식 분류군 ····· 50

제10장 종군 공칭분류군 및 이들의 명칭
제45조. 종군 ····· 50
제46조. 동등 원칙 ····· 52
제47조. 공칭모식 분류군 ····· 52
제48조. 속의 할당 변경 ····· 53
제49조. 오동정으로 잘못 적용된 종군명칭의 사용 ····· 53

제11장 저작권
제50조. 명칭 및 명명활동의 저자 ····· 53
제51조. 명명자 이름의 인용 ····· 55

제12장 이물동명관계
제52조. 이물동명관계 원칙 ····· 58
제53조. 과군, 속군 및 종군의 이물동명관계의 정의 ····· 58
제54조. 이물동명관계에 가입하지 못하는 명칭들 ····· 59
제55조. 과군명칭 ····· 59
제56조. 속군명칭 ····· 60
제57조. 종군명칭 ····· 60
제58조. 종군명칭의 변형철자법들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 62
제59조. 후이물동명의 유효성 ····· 63
제60조. 하위이물동명의 교체 ····· 64

제13장 명명법의 모식 개념
제61조. 모식화 원칙 ····· 65

제14장 과군의 모식
제62조. 적용 ····· 67

제63조. 담명모식 ····· 67
제64조. 모식속의 선정 ····· 67
제65조. 모식속의 동정 ····· 67

제15장 속군의 모식
제66조. 적용 ····· 68
제67조. 일반 규정 ····· 68
제68조. 원출판물에서 확정된 모식속 ····· 72
제69조. 원출판물에서 확정되지 않는 모식종 ····· 74
제70조. 모식종의 가정 ····· 76

제16장 종군의 모식
제71조. 적용 ····· 77
제72조. 일반 규정 ····· 78
제73조. 원출판물에서 확정된 담명모식(정모식 및 총모식) ····· 82
제74조. 모식계열 중에서 사후에 확정된 담명모식(총모식에서 나온 후모식) ·· 84
제75조. 신모식 ····· 87
제76조. 모식산지 ····· 89

제17장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제77조. 심의회와 심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원천인 국제단체의 관계 ····· 90
제78조. 심의회의 권한과 의무 ····· 91
제79조. 동물적합명칭목록 ····· 92
제80조 심의회 활동의 지위 ····· 95
제81조. 전권 행사 ····· 97
제82조. 심의 중인 사안의 지위 ····· 98
제83조. 심의회의 의무 및 재량권 ····· 98
제84조. 조직규정 및 부칙 ····· 98

제18장 본 규약을 지배하는 규정
제85조. 제목과 저작권 ····· 99
제86조. 규약의 발효일자 및 효력 ····· 99
제87조. 공식 원본 ····· 100
제88조. 규약의 적용 ····· 100

제89조. 규약의 해석 100
제90조. 규약의 개정 100

용어 해설 101

부 록

부록 A. 윤리 규정 125
부록 B. 일반 권고 126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조직규정 129

색 인 137

일러두기

이 규약은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함)가 채택하고 국제생물과학연합회(IUBS)의 총회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가 승인하였다. 심의회는 다른 언어로 된 공식본들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공식본들은 원본과 동등한 효력과 의미를 가진다(제87조).

규약의 핵심부는 머리말(Preamble), 90개의 조항(18개의 장으로 구분됨)과 용어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강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규정들은 때로 권고와 해설적 예를 수반하고 있다. 이 규약에서의 단어나 표현에 대한 해석은 용어 해설에 제시한 대로 따라야 한다(제89조). 이 규약의 규정들의 엄격한 적용이 혼란을 일으키는 특별한 경우에는 적용이 보류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나, 모든 동물학자들을 대신하여 전권을 위임받은(제78조, 81조) 심의회만이 같은 권한을 가지며, 개인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

이 책에는 규약 자체 외에 전문(심의회의 현위원장과 전위원장들의)과 서문(편집위원장의)을 포함한다. 세 가지 부록이 있는데, 처음의 두 가지는 권고적 지위를 가지며 세 번째 것은 심의회의 회칙이다.

이 규약의 영문 및 불문 원본은 심의회를 대신하여 영국의 비영리 회사이자 심의회의 업무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사무 인력을 제공하는 동물명명법국제신탁회(International Trust for Zoological Nomenclature)가 출판하였다.

이 규약에 관한 모든 문의나 특별 사안에 대한 규정들의 적용에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주소는 다음과 같다.

The Executive Secretary, I.C.Z.N., c/o The Natural History Museum, Cromwell Road, London SW7 5BD, U.K. (e-mail: iczn@nhm.ac.uk)

제4판 전문

1985년 2월 국제동물명명규약 제3판이 출판될 때, 이미 제4판의 필요성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심의회, 특히 제3판을 입안한 편집위원회 회원들은 몇 가지 문제점은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규약의 다음 판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유일한 문제 해결 방안임을 공감하게 되었다. 전 세계 동물학계로부터 논평들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는데, 일부는 이 규약의 적용 경험에서 생긴 것이고, 일부는 생물 계통분류학의 전 영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것이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것도 있었다. 제4판을 입안하는 사업은 1988년 10월 캔버라에서 제23차 국제생물과학연합회(IUBS) 총회와 함께 개최된 심의회 회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이 규약의 이전 판들이 과거 동물학자들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했는데, 신판은 이와 함께 이전 판들의 주요 변경 부분을 담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10년 이상 동안의 토의와 상담이 이어졌고, 그 과정과 결과는 W.D.L. Ride가 이 전문 다음에 나오는 서문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 신판을 위한 편집위원회는 캔버라에서 임명되었는데, 원래의 위원은 H.G. Cogger (오스트레일리아), C. Dupuis (프랑스), R.V. Melville (영국), W.D.L. Ride (오스트레일리아), F.C. Thompson (미국; 의장), P.K. Tubbs (영국)였다. 1989년에 O. Kraus (독일)는 W.D.L. Ride로부터 심의회 의장직을 이어받고 당연직으로 편집위원회에 가입하였다. 1990년에 Thompson은 의장직을 사임하였으나 위원으로는 잔류하였으며, 그 대신 제3판 준비 시의 의장이던 Ride가 의장직을 다시 이어받았다.

1990년 7월 메릴랜드 대학에서 열린 제4차 국제계통진화생물학 대회(ICSEB)의 공개회의와 그곳에서 열린 심의회 회의에서 새로운 명명규약이 논의되었다. 1991년 8월, 편집위원회는 L.B. Holthuis 교수의 초청으로 Leiden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수일 동안 회합을 가졌으며, 그 다음 달에 암스테르담에서의 IUBS 총회에서 심의회와 IUBS 동물명명법 분과위원회에서 이 규약이 논의되었다. 심의회는 정확히 동일한 목적으로 96년 전에 이 규약이 처음 만들어진 도시인 Leiden에서 규약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였다.

제4판의 중추적 준비 단계는 1993년 10월 함부르크 부근에서 수일 동안 열린 편집위원회 회의였다. 추가 수정의 결과 논의 초고가 1995년 5월에 동물학계 전체에 제시되었다. 사무국에 의해 약 700부의 이 초안들이 최소 43개 국가에 배포되었으며, 기타 다수가 미국동물명명법연합회(American Association for Zoological Nomenclature)에 배포되고, 신규약에 대한 토론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최되었다. 이 초안에 담겨진 새로운 개념과 규정들은 O. Kraus와 D. Ride에 의해서 제기된 논평 및 조언과 함께 1995년 11월에 발행된 동물명명법공보(Bulletin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제시되었다. 1995년 11월에는 A. Minelli (이탈리아)가 O. Kraus로부터 심의회장직을 이어받고 당연직으로

편집위원회에 가입하였다. 논의 초고에 대한 논평을 제시한 전 세계의 동물학자의 수는 오늘날의 지구상의 인간 개인 정보망의 크기를 반영한다. 이 초안의 공개적 배포 후 일년 내에 약 500명의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800쪽 이상의 서류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되었다. 이 중 다수가 동물명명법공보(1995년 9월부터 1996년 6월까지)에 발표되어 추가적인 토론이 유도되었다.

1996년 6월 Vicenza(이탈리아)에서 열린 일주일간의 편집위원회의 준비를 위해 접수된 모든 서류들은 분류되고 주석이 붙여졌다. 이 많은 접수서류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는 여러 규정들을 다시 작성하였다. 토의 초안에 있던 일부 제안들(모든 새로운 명칭의 강제 "등록"과 속명과 종본명 사이의 성의 일치의 폐기 등)은 폐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제적 어려움과 동물학자들의 전반적 합의에 따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편집위원회의 결론은 평의회가 제출한 심의회의 조직규정 변경안과 함께 제5차 ICSEB대회(1996년 8월, 부다페스트) 때 모인 심의회 위원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었고, 1996년 12월판 동물명명법공보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요 요점들에 대한 이들의 합의는 IUBS의 동물명명법 분과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새로운 규약의 주요 특징에 대한 윤곽은 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1996년 8월 플로렌스의 제20차 국제곤충학대회에서 Minelli에 의해 설명되었고, 곧 온라인으로 발표되었다.

1997년에는 전체 심의회의 우편 투표를 통해 규약과 조직규정의 주요 변경안이 수용되었다. 편집위원회(1996년 8월에 러시아의 I.M. Kerzhner가 가입하였으나, 수많은 귀중한 기여를 한 뒤 1998년 2월에 사퇴함)는 원안의 마무리와 점검을 하였고;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예기치 않은 상당한 지연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파도바, 런던, 캔버라에서 2~3명의 모임을 통해 유익한 작업이 수행되었다.

한편, P. Boucher, J. Le Renard 및 R. Roy는 C. Dupuis의 도움으로(모두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소속임) 규약의 불문판 본문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는 또한 영문 본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고, 번역하면서 발견된 불일치성이나 모호함이 편집위원회를 통해 개선되었다.

어휘 수정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1998년 10월 이 규약(규정과 용어 해설로 구성된)은 규약 제4판으로서의 채택을 위해 최종적으로 3개월 동안의 표결을 위해 심의회에 배포되었다; 이때 조직규정 개정안도 배포되었다. 심의회는 다수결로 새로운 규약을 채택하였고(찬성 24표, 반대 2표); 조직규정의 경우는 만장일치로 표결되었다. 이와 동시에 규약과 조직규정은 국제생물과학연합회(IUBS)의 집행위원회에 보내졌고, 이 집행위원회는 연합회 총회를 대신하여 이 두 가지를 승인하였다.

국제동물명명규약의 제4판은 2000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여 동물명명법을 제3의 천년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더 겸손하고 완곡하게 말하자면 이 주제의 공식적 출발점 즉 린네의 자연 계통 제10판의 출판으로부터 242주년이 된다. 물론 이 신판은 대체되는 제

3판(1985)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제3판은 또 대체로 1961년판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 제4판의 준비(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전 판에서와 같이)는 계획하거나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긴 시일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연이 과거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도 높은 자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전자우편에 감사한다). 이 규약은 단순한 개정 이상의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서론에서 David Ride가 다시 설명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심의회가 관여해야만 할 경우에 동물학자 개인이 기존의 명칭 사용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이 널리(전폭적이지는 않지만) 환영받을 것으로 믿는다. 반대로, 한편으로는 규정들이 더 엄격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명칭이 적합명칭이 되려면 갖추어져야 할 기준들이 추가되었다.

우리는 동물학자들이나 학명 사용자들이 머지않아 규약의 더 많은 변경을, 아마도 특히 기존 명칭들의 목록화 및 새로운 명칭들의 등록 과정에 관한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자에 관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빠른 속도록 계속 등장하고 Species 2000과 같은 사업에 의해 정리되고 있으며, 본 규정의 제4판은 동물적합명칭목록의 발간과 채택을 위한 규정들을 통해 이미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새로운 명칭들의 등록에 관한 한, 이는 이미 세균학에 도입되었고, 이해할만한 회의와 반대가 있지만 식물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은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영역에서 미래의 생물명명법은 아마도 19세기에 갈라져 나온 다양한 전통들의 수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린네식 분류체계는 단독으로 존속될 수는 없을 것이고, 계통적(분지론적) 분류학의 개념이나 용어들과 공존해야만 할 것이다. 분지계통학적 시각으로 볼 때 전통적 명명법은 흔히 너무 규범적이고 동시에 너무 관용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 분류체계가 모든 분류군들(및 이들의 명칭들)로 하여금 임의적 분류계급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한 너무 규범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단계통적 집단이나 측계통적 집단이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 너무 관용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안들이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체계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250년 된 린네식 동물(및 식물)분류학과 명명법의 폐기가 가능하거나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분류의 중요한 기능이 정보 검색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린네식 전통은 보완될 것이지만, 새로운 의미론적, 어휘적 도구에 의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본 규약의 준비를 위해 기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감사는 우리들과 심의회를 대신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동물학계 및 동물분류군들의 학명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린다.

우리가 감사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으나, 이분들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David Ride 및 기타 편집위원회 회원들, 전직 및 현직 심의회 회원들(이들 중 다수는 회의에서 또는 통신을 통해서 조력하였다), 캔버라, 함부르크, 레이던, 비첸차에서의 편집회의를 극진

하게 주선한 Phillippe Bouchet, Jacques Le Renard 및 Roger Roy, 고 Richard Melville 및 Curtis Sabrosky, IUBS의 임원들, 심의회 사무국 및 Biosis U.K. (Zoological Record의 출판자)의 임원들이 그분들이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성에 대하여 조언을 해준 호주국립대학의 고전문학 조교수 Robert Barnes에게 감사드린다. 회의에서 또는 서신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논평과 조언을 해준 전 세계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와 심의회는 특별히 사의를 표하며, 이분들의 관심과 기여가 없었다면 본 규약이 우리가 희망했던 만큼 오늘날 동물학자들의 요구와 견해를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판의 인쇄를 위해 귀중한 재정 지원을 해준 프랑스계통분류학회 및 미국동물명명법연합회에 감사드린다; 미국동물명명법연합회의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는 Curtis Sabrosky를 재차 언급하는바, 본 규약에 대한 그의 재정 지원은 미국 동물명명법연합회에게 기증된 그의 유산이었다.

제3판의 전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다: “완벽하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규약은 없다. 참으로, 모든 개인에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규약이란 존재할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항상 진실로 남을 터이지만, 전임자들이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새로운 규약을 동물학자들에게 제시한다.

ALESSANDRO MINELLI, 회장(1995～)
OTTO KRAUS, 회장(1989～95)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서 문

"모든 언어처럼, 동물명명법은 이것을 만든 사람의 역사를 반영하고 다양하고도 상충적인 실제 사용의 결과로써 생긴다. 명명법의 사용 관습 일부는 일반적인 언어, 국가 관습, 자존심 및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무지, 허영심, 개인 편애적인 완고한 고집에 의해 초래되었다. 일반적인 언어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생물명명법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정밀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J. Chestger Bradley. 1961년 국제동물명명규약 제1판 서문.

국제동물명명규약 제4판은 이전 판이나 이에 앞서 나온 Règles internationales de la Nomenclature zoologique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근본적 목표를 가지는데, 이는 분류학적 판단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는 과학자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면서 동물 학명의 최대의 보편성과 지속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규약은 조문(강제적인)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다. 조문은 동물학자들로 하여금 특정 분류학적 상황에서 정확한 분류군 명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규약의 사용으로 동물학자는 종, 속 및 과(아종, 아속, 그리고 아과나 족과 같은 과군 분류계급을 포함하여)의 분류계급에서 동물이 속하는 분류군의 유효명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약은 과군 이상의 분류군 명칭을 완전히 규제하지는 않으며, 아종보다 낮은 분류계급의 사용에 대한 규정도 제시하지 않는다.

원칙

이 규약이 토대를 둔 근본 원칙이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이 규약은 분류학적 판단을 침해하는 것을 삼가고, 규제나 제한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명명법은 특정 분류군의 포함 또는 배제 범위를 결정하거나 분류계급이 특정 동물 집단에게 적합하도록 하지 않으며, 단지 분류학적 한계나 계급에 관계없이 분류군에 사용될 명칭을 제공한다.

(3) 담명모식의 설정은 분류학적 판단에 대한 침해 없이 명칭들이 분류군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규약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명칭은("집합군"과 과군 이상의 분류군들은 제외) 영구적으로 담명모식과 결부되어 있다. 종과 아종에서 이 담명모식은 하나의 표본이거나 함께 담명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표본이며; 속과 아속에서 담명모식은

하나의 공칭종이고; 과군 분류계급의 분류군에서의 담명모식은 하나의 공칭속이다. 따라서, 어느 분류계급의 한 분류군이 분류학자에 의해 묘사될 때 이 분류군에는 여러 개의 담명모식이 포함될 수가 있으며, 이들 각각은 해당 분류계급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칭을 가진다. 우선권 원칙(안정성과 보편성을 위하여 이의 운용은 조절될 수 있다-아래의 (4)를 보라)은 명칭들 중 어떤 것이 유효명칭인가를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4) 명명법적 규정들은 분류학적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최대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들이다. 따라서 우선권 원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덜 알려지거나 오랫동안 잊혀졌던 명칭이 유효화되고 익히 알려지고 수용되어 왔던 명칭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이 규약은 인식한다. 그러므로 규정들은 우선권 원칙의 적용이 안정성과 보편성을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때 보류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규약은 명칭의 창설 또는 우선 지위에 관여하는지, 담명모식의 확정, 명칭의 철자법, 또는 다른 어떤 사안에 관여하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우선권 원칙의 자동적 적용을 조절하는 조항을 가진다.

(5) 모호함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분류군에 대하여 동일 명칭의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금지한다. 이것이 이물동명관계 원칙이다.

(6) 이 규약은 새로운 명칭을 창설하고자 하는 동물학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며, 전에 제안된 명칭이 유효명칭인지 어떤 우선 지위를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규정을 제공한다; 또한 명칭이 정확한 사용을 위하여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해당 분류군의 담명모식을 확인할 수 있게(필요할 경우 확정할 수 있게) 한다.

(7) 이 규약은 또한 규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의 조직규정과 운용을 규정하여 자체적인 해석과 관리를 한다.

(8) 동물명명법에 판례법은 없다. 명명법 안의 문제점들은 규약을 직접 적용함으로써 해결되고 과거 사례의 참고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만약 심의회가 특정 사안의 판정을 위해 소집되면 판정은 해당 사안 자체에만 관련된다.

역사적 배경

국제적으로 수용된 동물명명규약(Code of Rules for Zoological Nomenclature)의 기원은 19세기 초기의 동물학 문헌에 나타난 명칭의 혼란에 기인하였다. 1758년 린네의 자연 계통(Systema Naturae) 제10판의 출판과 이 저서에서의 동물의 이명식 종명의 채택에 이어, 다음 세기는 이 새로운 체계가 여러 지역과 여러 동물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19세기의 제2분기에 여러 가지 다른 사용법이 남발하여 동물의 학명에서 보편성과 더 큰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합의의 필요성이 사방에서 명백해졌다.

더욱이, 과학의 성장과 유럽 외 지역에서의 적극적 탐사의 결과로 생긴 기록종의 폭발적 증가는 명칭들의 수를 여러 배로 증가시켰는데; 이들 중 다수는 과학자들의 독립적 연구 때문에 생기는 동물이명들이었다. 이들을 취사선택하는 데 필요한 널리 용인되는 방법의 고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동물명명법을 규정하려는 초기 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ugh Strickland의 것이었다. Strickland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규정들은 그 후 영국학술협회규약(British Association Code) 또는 Strickland 규약으로 불리는 규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의 공식적 제목은 Series of Propositions for Rendering the Nomenclature of Zoology Uniform and Permanent였다. 1842년에 영국과학진흥협회(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발표된 뒤 Charles Darwin, Richard Owen, John Westwood 등과 같은 저명 동물학자들이 포함된 위원회에 의하여 이 규약은 번역되고 널리 확산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 규약은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이 규약은 1843년 파두아 과학학술대회와 1845년 미국지질학 및 자연과학 학회에서 접수되고 1846년에 영국과학진흥협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규약은 후년에 개정되었으며 지질학자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채택된 Henri Douvillé(1881)가 수립한 규약과 미국조류학자연합규약(1886)의 토대가 되었다.

국제지질학대회(1878년 파리; 1881년 볼로냐)에서의 토론 이후, 모든 동물 명칭을 다루는 규정에 대한 공식적 국제적 합의가 생겨야 할 필요성이 명백해졌는데, 이는 이를 사용하는 단체나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화석이나 현생 동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제1차 국제동물학대회(1889년, 파리)는 Maurice Chaper와 Raphael Blanchard가 작성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였고, 이 사안은 제2차 국제동물학대회(1892년 모스크바)에서 토론 안건이 되었다. 제3차 국제동물학대회(1895년 레이던)는 "법전(codex)"을 만들어 제4차 국제동물학대회(1898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보고하기 위하여 5명의 동물학자(R. Blanchard, J.V. Carus, F.A. Jentink, P.L. Sclater, C.W. Stiles)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의 탄생이었다. 10명의 위원이 추가되고 더 많은 숙고가 이루어진 후, 제5차 국제동물학대회(1901년 베를린)에서 보고서가 채택되고 그 학술대회의 결정을 구체화한 규약이 1905년에 불어, 영어,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이 규약은 제목이 Règles internationales de la Nomenclature zoologique로서 차후의 국제동물학대회(1907년 보스턴; 1913년 모나코; 1927년 부다페스트; 1930년 파두아)를 통해 연속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국제동물명명규약 제1판으로 전반적으로 교체된 1961년까지 유효하였다. 이 제1판은 1939~1945년의 전쟁 뒤의 국제동물학대회(1948년 파리; 1953년 코펜하겐; 1958년 런던)의 연구 결과로서, 1961년판을 장식한 이 작업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이 편집위원장이던 Norman R, Stoll에 의해 이 판의 서문에 제시되었다. 제2판은 1964년에 출판되었는데, 워싱턴(1963년)에서

채택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17차 국제동물학대회(1972년 모나코)는 당시의 대부분의 동물학자들에게 마지막 동물학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서 결의된 바로서, 제2판(1964)을 수정하고, 더불어 규약의 지속성과 업데이트를 위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약(및 심의회)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을 국제동물학대회에서 국제생물과학연합회(IUBS)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규약과 심의회에 대한 책임을 IUBS가 제18차 IUBS총회(1973년 노르웨이 우스타오셋)를 통해 수용하였다. 규약의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변화에 대하여 당시의 동물학계가 제시한 제안에 대응하고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규약의 제3판이 준비되고 1983년 말에 IUBS의 권한으로 심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1985년에 출판되었다. 이 판에서 채택된 변경에 대한 글, 제안에 대한 논평, 그리고 심의회의 표결 내용이 그 판의 서문에 제시되어 있다.

동물명명법의 발전과 현대적인 규약이 생기도록 만든 사건들에 대한 더 상세한 해설이 심의회의 전 사무장이었던 Richard Melville에 의해 동물 명칭의 안정성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1995년에 출판된 심의회의 100년 역사에 제시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20년은 동물학자의 직업적 방향성과 교육의 더욱 두드러진 변화, 그리고 주로 새로운 유전적 정보와 컴퓨터의 이용, 문헌 자료의 누적, 전자 출판을 포함한 정보공학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분류학의 방법론적 변화를 목격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수용하고, 또 여러 가지 명명규약 사이의 일관성을 요구하면서 IUBS에게 압력을 가하는 생물과학의 세계주의를 포함하여, 다른 요인들을 수용하는 제4판을 위해 심의회가 작업해야 하는 것이 명백해졌다.

1988년 10월 캔버라에서 심의회에 의해 편집위원회가 임명되었고, 심의회, 메릴랜드(1990) 및 암스테르담(1991)의 IUBS의 동물명명법 분과위원회, 레이던(1991) 및 함부르크(1993)에서의 심의회의 회의를 통하여 제안들이 조사, 논의된 후 하나의 토의 초안이 1995년에 공표되었다. 그 결과 일 년 내에 약 500개 발신자로부터 800여 쪽에 달하는 논평들이 왔는데, 발신자의 다수는 동물학자들이었으며, 이 논평들의 다수는 동물명명법공보에 발표되었다. 모든 논평들(대부분 전자메일로 온 것들임)과 문서는 1996년 6월 비첸차에서의 편집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고, 그해 8월에 하나의 보고서가 심의회와 부다페스트의 동물명명법 분과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논평들에서 나타난 바로서, 토의 초안의 일부 잠정적 제안(신명칭의 “등록”이나 속명과 종본명의 조합에서 성의 일치를 폐기하는 것과 같은)은 동물학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약간 수정된 초고가 우편 투표(1997년)를 통해 심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심의회는 투표를 하면서 많은 설명을 제안하였는데 이것들은 이 판본에 포함되어 있다.

현 판본의 편집위원회의 작업과 동시에, 또한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IUBS는 생

물 명명법의 통일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생물명명규약(한 가지 “Biocode”)이 개발되기 전에 극복해야 할 난관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와 심포지움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 작업은 규약의 밑바탕으로서 확립된 원칙과 구조에 대한 주요 변화를 현 판본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드러냈다. 상이한 규약들이 이것들이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근본적으로 너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어서, 오늘날 공통적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상이한 규약 아래서 확립되고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많은 명명상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규약들이 현재 훨씬 개선된 용어 통일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적합성(availability)”(동물학에서)이나 “유효하게 발표된(validly published)”(식물학과 세균학에서-동일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각각 다름)과 같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의 의미상의 직접적 동등성의 결여가 현재 이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신명칭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생물규약(Biocode)”의 개발에 대한 IUBS의 지원하에 작업은 진전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볼 때, 만약 모든 학문 분야에서 신명칭의 등록을 위한 합당한 체계가 개발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모든 현생 명칭들을 공식적으로 목록화한다면,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는 규약들이 과거의 것이 된다면, 단일의 규약이 가능할 것이다.

현 판본

현대의 국제동물명명규약은 과거의 규약 못지않게 복잡하고 조밀하게 집적된 문건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부분적으로 조항들의 상호의존적인 연계성 때문이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오늘날의 명명활동과 신명칭들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들이 오늘날과 다르고 덜 제약적이었던 규약이나 관습 아래에서 작동했던 과거 세대의 활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조건 때문이다.

가령, 다수의 이러한 명칭들이, 오늘날 명칭의 객관적 동정이나 동물이명관계의 확립을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담명모식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던, 초기 규약(Règles)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원칙은 속군명칭을 위해 1931년부터 발효된 규약에 도입되었고, 새로운 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의 명백한 확정 의무는 현 판본에서야 도입되었다. 분류군 명칭의 동정을 위한 엄격한 객관적 기준이 있기 전에는, 명칭들은 쉽사리 잘못 적용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흔히 그랬다. 그러므로 담명모식의 정확한 동정의 요구와 아울러, 모식과 관련된 규정들은 덜 정밀한 규정들 하에서 창설된 명칭들도 보호해야 한다.

본 규약의 규정들의 상호 의존적인 부분 때문에, 상충되는 해석을 일으키는 모순된 규정들과 상이한 표현이 쉽사리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언어가 정확해야 하

고; 동일한 단어나 구절이 사용되고 재사용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교차 참고가 있어야 한다. 많은 동물학자들에게 이 필요조건은 지나치게 법률 존중적인 것으로 보이게 될 소지가 있는 지루하고 현학적인 말이 된다. 표현의 우아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의심할 여지없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가 선택한 용어에 대하여 사과하지는 않는다. 또한, 모호함을 줄이기 위하여 용어 해설(Glossary)은 본 규약의 핵심부가 되고 있다; 용어 해설에 주어진 용어의 의미는 해석에 이용되어야 할 의미 그 자체에 한정된다.

심의회가 대부분의 현장 분류학자 등이 쉽사리 해석할 수 있는 규약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단지 이의 적용이 말해준다. 불현듯, 현대적 규약 이전의 판본들(및 그 이전의 것들)을 입안한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것을 희망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 판본에 있던 것을 재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판단될 때는 그와 같이 했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제4판은 제3판의 배열을 따르고 있다.

기본 원칙의 발전

본 규약은 적합명칭이 되기 위해서는 명칭은 복수의 동일하고도 오래 존속하는 복제물로서 출판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항상 견지하였다. 이 방식으로 규약은 출판 시기나 장소와 관계없이 신 분류군의 명칭과 기재는 영구적인 접근과 손쉬운 참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어느 명칭이 모든 동물학자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 출판과 통신이 갈수록 정보 교환과 탐색의 보편적 매체가 되고 있으며 "출판"의 기준에 접근하는 수많은 단명성 출판 유사물들이 있는 이때, 현재의 규정이 영구성과 접근성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지는 의심할 여지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본 규약은 신명칭이 지면에 잉크를 사용하여 출판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assumption, 나중에는 필요조건 requirement이 됨)으로부터 점차 벗어났다. 1905년의 규약(Regles)은 특정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대부분의 과학 정보는 활자로 식자되어 잉크로 인쇄된 저작물 형태로 배포되었다. 기술이 변화되어, 1948년 파리 동물학대회는 출판을 지면 인쇄로 재생된 것으로 한정할 필요를 발견하였으며, 이 필요조건(requirement)은 1961년 판 규약에 포함되었다. 제3판(1985년)에서는 대다수의 단명성 출판 유사물을 배제하려는 특정 안전 조치를 전제로 지면에의 잉크 인쇄의 필요조건(requirement)에 대한 조항은 제거되었다. 제4판에서는 읽기 전용의 레이저 디스크가 허용되었으나(일부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무선에 의한 배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과 새로운 정보 체계의 발달로 볼 때, 문제 해결 방안은 출판의 정의를 짜 맞추는 데 있지 않고, 차라리 이를 폐지하고 적합성의 일차적 결정 요소로

서 “출판”을 대체할 수단을 찾아내는 데 있을 것이다.

현 판본의 개발 과정에서 신명칭의 등록 자체를 이를 결정하는 요소로 도입하자는 제안도 심의회에 의해 숙고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이와는 반대였으며, 반대자들이 인지한 주요 난점은 수긍할만한 그 과정이 현재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학자들은 신명칭의 등록 체계를 시행하려는 듯 보이며, 시간이 지난 뒤 그들의 경험이 동물학에서 훨씬 더 큰 어려움(신명칭의 수적 관점에서)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용할만한 한 가지 기전을 만들 것처럼 보인다. 이 판본에서 심의회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신명칭을 Zoological Record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저자들에게 권고하며, 모든 신명칭은 원출판물에 신명칭이라고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제적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주요 분류학 영역에서 기존 적합명칭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 목록들을 심의회가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에 만들어진 명칭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명칭들에 대한 탐색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진척이 이 판본에서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과거의 명칭이나 새로운 명칭이나 적합명칭이 되지 못하는 미생물학에서는 모든 속과 종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정책이 이미 채택되어 있다.

현재 의문시 되고 있는 다른 주요 기본 정책 쟁점 중의 하나는 본 규약이 다수의 조항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는 라틴어 문법에 대한 집착이다; 오늘날 또는 미래에는 소수의 동물학자들만이 이 언어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요구들을 부담으로 여길 것이다.

이전의 규약에서와 같이, 현재의 판본은 라틴어나 라틴어화한 형용사적 종군명칭은 이와 조합하는 속명과 성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과 아종의 명칭은 임의적 단어로 취급되도록 허용해서(즉 라틴어 형용사로 취급하지 않아서) 이들의 철자법이 속명의 성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하자는 제안이 숙고되었다. 이 제안은 라틴어에 대한 부담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탐색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철자법을 변화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제안된 방안들은 모두 대부분의 응답자들에 의해 결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제안은 각하되었다. 그러나 현 판본에서 속군명칭의 성의 식별과 과군명칭의 어간 형성을 단순화하는 변경안이 제시되었으며, 심의회는 이 변경안이 라틴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곤란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희망한다.

아마도 심의회가 승인한 가장 중대한 운용상의 변화는 전에 심의회의 간섭이라고 불렸던 경우에 여러 가지 자동적 작용을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1900년 이전에 제안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던 명칭의 부활로 기존 명칭이나 철자법이 위협을 받을 경우 우선권 원칙으로부터의 자동적으로 이탈할 것을 요청한 것도 포함된다. 또한 어느 속이나 아속이 창설될 때 모식종이 오동정 되었음을 발견하면 이를 발견한 동물학자는 원저자

가 실제로 명명한 종이나 또는 사용되고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 공칭종을 선정하여 모식종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예가 심의회에 가장 흔히 조회된 사안으로서, 이의 조회할 필요성의 제거는 지연과 불확실성을 막을 것이다. 저자의 개인적 조치가 적합한 결과를 촉진하기보다는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 심의회에 위탁하여 규정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역시 항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로서 개방되어 있다; 심의회는 또한 규약이 자동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의 제기 통로로서 개방되어 있다.

이 판본에 도입된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에 다시 언급했다. 이 규약 자체는 실제 규정들의 표현법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처음 나오는 신명칭의 제안에 관한 세 가지는 현재 관련 분야의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

신명칭 제안에 영향 주는 변경

1. 1999년 이후에 발표된 신명칭은 새로운 명칭이라는 명백한 언급이 없으면 적합명칭이 아니다(“sp. nov.”, “gen. nov.”, “fam. nov.”, “nom. nov.”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논문에 사용한 언어로 직접 이와 동등한 용어를 기입한다).

2. 1999년 이후의 새로운 종군 공칭분류군의 제안에는 사후에 증빙이 가능하도록 이의 담명모식(정모식 또는 명백히 지시된 총모식)의 확정을 포함해야 한다.

3. 1999년 이후 제안된 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이 보존된 표본(들)으로 구성될 경우, 제안자는 담명모식이 있거나 있게 될 장소(collection)의 이름을 표기하여야 한다.

4. 1999년 이후 흔적화석(생적 분류군)에 대한 새로운 속군 공칭분류군의 제안은 모식종의 지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5. 1999년 이후 새로운 과군명칭을 창설하는 저자는 라틴어 문법 원칙에 따라 속명의 소유격에서 나온 것이 아닌 모식속명의 어간을 취할 수 있으며, 이때 만들어진 과군명칭의 철자는 사후의 저자들에 의해 통용되어져야 한다(이는 이물동명의 과군명칭들이 생길 여지를 피하도록 저자들은 이 규정을 활용하여 속명 전체를 어간으로 취하기를 권장한다).

후모식 지정

6. 1999년 이후 이루어진 후모식 지정은 “lectotype”이라는 용어 또는 이를 직접 번역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 지정이 한 분류군에 대한 명칭을 명백히 적용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신모식에 영향 주는 사항

7. 만약 한 종의 정모식, 총모식 또는 후모식이 분실되고 나서 신모식 지정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원래의 표본(들)이 발견되면, 이 원래의 모식표본(들)은 신모식을 자동적으로 대체하고 담명모식이 된다. 만약 이 행위가 혼란이나 불안정을 일으키면 저자는 명명법위원에 신모식의 복위를 신청해야 한다.

8. 만약 한 종군 분류군의 기존 담명모식이 모호하여 특정 분류군에 정확한 명칭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면(즉 그 명칭이 모호명칭이면) 저자는 심의회에 이를 폐기하고 신모식을 지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출판에 영향 주는 변경

9. 1999년 이후에 수많은 동일한 영구적이고 불변적인 복제물로 간행된 지면 인쇄가 아닌 저작물(예. 읽기 전용 레이저 디스크)은, 만약 해당 저작물 자체에 이의 복제물이 적어도 그 저작물이 명시한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5개의 주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성명이 있다면, 출판된 것으로 취급된다.

10. 동물명명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것들은 비출판으로 취급된다.

(a) 전자적으로 배포된 문건 또는 삽화;

(b) 다운로드한 복제물 또는 이러한 문건의 출력물;

(c) 학술대회, 심포지엄 및 기타 회합의 참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달리 출판되지는 않은, 논문 요약, 포스터, 강연 자료 등;

(d) 1999년 이후에 저작물에 적시된 출판 일자에 앞서 그 저작물의 일부로서 배포된 추인본(발췌 인쇄물).

확립된 용법의 유지를 위하여 저자에게 부여된 권한

11. 저자는 실제 유효명칭으로 간주되어 사용된 10년 이상을 포함하여 과거 50년 동안 적어도 10명의 저자들이 25개의 출판물에서 유효한 것으로 사용한 명칭은 그 전에 발표되었으나 1899년 이후 유효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물동명이나 동물이명으로 교체하지 않아야 한다(심의회의 규정은 없음).

12. 심의회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명명 관련 문제에서, 저자는 한 명칭의 특정 철자법이 원래의 철자법과 다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의 성행용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가령, 과군명칭들의 현재 사용되는 철자법이 문법적으로 부정확한 어간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3.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저자가 한 속군 분류군의 모식종 확정이 그 모식종

의 오동정에 토대를 둔 것임을 발견하면 이 저자는 안정성의 이점을 위하여 심의회에 문의하지 않은 채, 실제로 소속된 분류학적 분류군 또는 이전에 확정된 오동정된 공칭종을 모식종으로 확정할 수 있다.

14. 만약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과군 분류군의 명칭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과군 분류군의 부속분류군 중 하나의 명칭보다 뒤에 발표된 것임을 발견하면 상위 분류계급 분류군 명칭은 하위 분류군 명칭으로 교체되지 않아야 한다.

적합명칭 목록

15. 보호 장치를 위해 심의회는 주요 분류학 범주의 명칭 목록을 채택하는 권한을 가진다. 채택된 목록의 범주 안에 수록되지 않은 명칭은 부적합명칭으로 취급될 것이다. 목록은 출판된 것 중에서 국제단체가 제안한 것을 전문가 위원회나 기타의 폭넓은 자문을 받고 공적인 논평을 참작하여, 심의회가 채택한다.

맺는 말

분류학자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사용자들은 과거의 판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판본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모험성과 보수성 사이의 절충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절충 속에서 편집위원회가 제시하고 1995년 논의 초안의 논평을 출판한 제안들에 대한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본 규약은 심의회가 접수한 현대 현장 동물학자들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의 판본과 같이, 최종적인 규약은 이미 이전 판들에 있던 것에 대한 설명과 현대 과학의 도전에 부응하는 대책의 혼합체이다.

제4판은 확정본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물학자들, 특히 심의회는, 규약의 표현법을 지속적으로 더욱 개선해서 모호성을 더욱 줄이고 과거와 현재의 결과물(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한, 미래의 결과물까지) 처리가 충분히 부족하도록 할 것이다. 과학자가 일하는 과학 자체나 사회적, 기술적 체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 규약은 이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발전해야 한다. 동물학자들은 규약이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할 것이다.

W.D.L. Ride
편집위원회 의장,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캔버라
1999년 5월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국제동물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제4판

한국어판

국제동물명명규약

머리말

국제동물명명규약은 원래 국제동물학대회(Intenational Congresses of Zoology)가, 1973년 이후에는 국제생물과학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IUBS)가 채택한 규정 및 권고 체계이다.

이 규약의 목적은 동물 학명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증진하고 각 분류군 명칭의 독특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규약의 모든 규정과 권고는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분류학적 사고와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출판의 우선권은 동물명명법의 기존 원칙이지만, 이 규약에서 제시한 조건하에서는 이의 적용을 제한하여 장기간 통용된 명칭은 보존되도록 하였다. 개별적 사정으로 명명법의 안정성이 위협 받을 경우에는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에 의해 이 규약의 엄격한 적용이 특정 조건하에서 유예되도록 하였다.

용어 사용의 정확성과 일관성은 명명규약에 필수적이다. 이 규약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용어 해설 항에 제시되었다. 이 머리말과 용어 해설은 이 규약의 제 규정 중 핵심 부분이다.

이 규약의 저자는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이다.

제1장 동물명명법

제1조. 정의 및 범위.

1.1. 정의. 동물명명법은 현생 동물 또는 절멸동물의 분류군(taxa; 단수 taxon)에 적용되는 학명 체계이다.

1.1.1. 이 규약에서 말하는 “동물”이란 후생동물(Metazoa)을 일컬으며, 원생생물 분류군의 경우 연구자가 명명법의 적용을 위하여 이를 동물로 취급할 때도 동물로 취급한다(제2조를 보라).

1.2. 범위.

1.2.1. 현생 동물 또는 절멸동물의 학명에는 가축을 대상으로 한 명칭, 화석동물의 활동 흔적 대체물(치환물, 인흔, 주형, 주성물)의 명칭, 생물활동 화석(ichnotaxa)의 명칭, 이들 집합군에게 부여된 명칭(특히 제10조 3, 13조 3.2,

23조 7, 42조 2.1, 66조 1, 67조 14를 보라), 또한 1931년 이전에 현생 동물의 활동 흔적을 대상으로 제안된 명칭을 포함한다.

1.2.2. 이 규약은 과군, 속군, 종군 안의 각 분류군 명칭의 규범을 정한다. 아울러 제1~4조, 7~10조, 11조 1~3, 14조, 27조, 28조, 32조 5.2.5는 과군 이상의 분류군과 분류계급의 명칭에 대한 규범도 정한다.

1.3. **예외.** 다음을 위해 제시된 명칭들은 이 규약에서 제외된다.

1.3.1. 가설적 개념을 위해 제시된 명칭.

1.3.2. 기형표본에 제시된 명칭.

1.3.3. 잡종표본에 제시된 명칭(잡종 기원의 분류군에 대해서는 제17조 2를 보라).

1.3.4. 제45조 6.4.1에 의거하여 적합명칭(available name)이라고 간주될 경우를 제외한 아종 미만의 존재.

1.3.5. 동물명명법상의 학명으로서 공식적 분류학적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일시적 참고 수단으로서 제안된 명칭;

1.3.6. 1930년 이후, 현생 동물의 활동 흔적물에 붙여진 명칭;

1.3.7. 한 분류 집단에서 소속 분류군들이 그 집단의 구성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표준화된 접두사 또는 접미사를 추가하여 적합명칭을 변형한 것(제10조).

예. Herrera (1899)는 곤충강의 모든 속명에 *Ins*-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것처럼, 한 속이 특정 강에 소속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종의 공식처럼 모든 속명에 접두사를 붙이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단어들이 "동물학 공식"(zoological formulae)으로서(전문 의견 72), 동물명명법과는 관련이 없다.

1.4. **독립성.** 동물명명법은, 한 동물군의 명칭이 동물이 아닌 분류군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명명법 체계로부터 독립적이다(제1조 1.1을 보라).

권고 1A. 비동물 분류군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명칭. 새로운 속군명칭을 창설하고자 하는 명명자는 식물 속군명칭 색인 *Index Nominum Genericorum* (*Plantarum*) 및 세균 인가 명칭 목록 *Approved List of Bacterial Names*를 참고하여 동일 명칭이 국제명명규약의 해당 목록에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동일한 동물 명칭의 출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제2조. 동물명명법에서의 특정 명칭의 허용성.

2.1. 최초에는 동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동물로 분류된 명칭. 이와 같은 명칭들이 동물명명법에 귀속되는 조건들에 대하여 제10조 5를 보라.

2.2. 한때 동물로 취급되었으나 나중에는 비동물로 분류된 명칭. 한때 동물로 분류된 분류군의 적합명칭이 사후에 동물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할지라도 동물명명법상 이물동명 관계를 이루어 계속 경합한다.

제3조. 발효일자. 이 규약에서 임의로 정한 동물명명법의 발효일자는 1758년 1월 1일이다.

3.1. 1758년에 출판된 저작물 및 명칭. 아래의 두 가지 저작물은 1758년 1월 1일에 출판된 것으로 간주한다.

- 린네(Linnaeus)의 자연 계통(*Systema Naturae*) 제10판.
- 클러크(Clerk)의 스웨덴의 거미류(*Aranei Svecici*).

후자의 출판물 내의 명칭들은 전자의 출판물 내의 명칭들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1758년에 출판된 기타의 저작물 내의 명칭들은 자연 계통(*Systema Naturae*) 제10판 이후에 출판한 것으로 취급된다.

3.2. 1758년 이전에 출간된 명칭, 활동 및 자료. 1758년 1월 1일 이전에 출간된 명칭이나 명명활동은 동물명명법에 귀속되지 않으나, 이 일자 이전에 출간된 자료(기재나 삽화 등)는 이용될 수 있다(심의회가 동물명명법적 목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1757년 이후에 출간된 저작물 내의 명칭, 명명활동 및 자료의 지위에 대해서는 제8조 7.1을 보라).

제2장 동물 학명의 단어 수

제4조. 종군 이상의 분류계급의 분류군 명칭.

4.1. 일명식 명칭(一名式 名稱). 종군 이상의 분류계급의 분류군 명칭은 한 단어로 구성되며(일명식, uninominal), 첫 자는 대문자여야 한다(제28조).

4.2. 아속명의 사용. 아속의 학명은 속 분류계급에서 사용되는 명칭이 아닌 한, 이명식 명칭(binomen) 또는 삼명식 명칭(trinomen)의 첫 번째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제6조 1).

제5조. 이명식 명명 원칙.

5.1. **종명.** 다른 분류계급의 한 분류군명이 아닌, 종(species)의 학명은 두 개 명칭의 조합으로서(이명식 명칭), 첫 단어는 속명이고 둘째 단어는 종본명이다. 속명은 첫 자가 대문자여야 하고 종본명의 첫 자는 소문자여야 한다(제28조).

5.1.1. 관련 공칭종(nominal species) 없이 출판된 속군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의 아종본명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명식 명명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11조 4를 보라.

5.1.2. 아속명이나 종 집단 및 아종 집단의 명칭을 사용할 때 이명식 명명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6조를 보라.

5.2. **아종명.** 한 아종(subspecies)의 학명은 세 개 명칭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삼명식 명칭, 즉 이명식 명칭 뒤에 아종본명이 뒤따른다)(제11조 4.2). 아종본명은 첫 자가 소문자여야 한다(제28조).

5.3. **인쇄 기호 및 한정 약자의 제외.** 한 학명의 적용을 한정하기 위해 사용된 "?"와 같은 기호나 aff., prox., cf. 등과 같은 약자는, 한 명칭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삽입되었을 경우에도, 분류군 명칭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6조. 삽입명칭(**插**入名稱).

6.1. **아속명.** 아속의 학명은, 이명식 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으로 사용될 경우, 속명과 종본명 사이에 괄호 안에 넣어 삽입해야 하며, 이는 이명식 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아속명은 첫 자가 대문자여야 한다.

권고 6A. 이명식 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에 부당한 특정 속군명칭 삽입. 유효한 아속명 외의 다른 속군명칭을 속명과 종본명 사이에 삽입하지 않아야 하며, 사각 괄호나 둥근 괄호 안에 넣어 삽입하는 것도 금해야 한다. 과거의 속 조합을 표시하고자 하는 저자는 "*Branchiostoma lanceolatum* [formerly in *Amphioxus*]"와 같은 명시적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6.2. **종 집단 또는 아종 집단의 명칭.** 속군 분류군 내의 종 집단을 나타내기 위하여 종본명을 괄호 안에 넣어 속군명칭 뒤에 오게 하거나 속군명칭과 종본명 사이에 괄호 안에 넣어 삽입할 수 있으며, 아종본명을 괄호 안에 넣어 종본명과 아종본명 사이에 삽입하여 한 종의 아종 집단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칭들은 항상 첫 자가 소문자여야 하고 단어 전체를 적어야 하며, 이명식 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의 한 단어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명칭들에 우선권 원칙이 적용된다(제23조 3.3). 이 명칭들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제11조 9.3.5를 보라.

권고 6B. 삽입명칭의 분류학적 의미. 제6조 2에 명시된 추가적 분류학적 위치에 한 집단을 표시하고자 하는 저자는 해당 집단의 분류학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삽입된 종군명칭이 들어가는 동일 괄호 안의 맨 앞에 기존 저작물에서 사용되는 주석 방식으로 하나의 용어를 넣어야 한다.

예. 나비류 속 *Ornithoptera* Boisduval, 1832에서 *O. priamus* (Linnaeus, 1758)는 *O. lydius* Felder, 1865 및 *O. croesus* Wallace, 1865를 포함하는 격리된 종 집단 내에서 최초로 명명된 구성원이다. 이 *O. priamus*종 집단에 합당한 분류학적 의미를 "*Ornithoptera* (superspecies *priamus*)"로 표기하여 나타낼 수도 있고, 이 집단의 구성원들을 "*O.* (*priamus*) *priamus* (Linnaeus, 1758)", "*O.* (*priamus*) *lydius* Felder, 1865" 및 "*O.* (*priamus*) *croesus* Wallace, 1865"와 같이 표기할 수도 있다.

제3장 출판물의 기준

제7조. 적용. 이 장의 규정들은 신학명의 출판물뿐 아니라 명명법에 영향 줄 수 있는 명명활동이나 자료의 출판물에도 적용된다.

제8조. 출판 저작물의 구성 요건. 동물명명법적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제8조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제9조의 규정들에 의해 배제되지 않을 경우 출판된 것으로 취급된다.

8.1. 기준. 저작물은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8.1.1. 공적, 영구적 과학 기록물로서 간행된 것이어야 한다.

8.1.2. 최초 간행 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8.1.3. 수적 제한 없이 동일하고도 지속적인 복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취득 가능한 복제물을 포함하는 판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8.2. 부적격 출판. 공식적이고도 영구적인 과학적 기록을 위하여 또는 명명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판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성명(聲明)이 들어 있는 저작물은 이 규약의 의미상 출판물이 아니다.

8.3. 부적격 명칭 및 활동. 만약 한 저작물이 그 안의 명칭들이나 명명활동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명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적격성을 초래하는 성명이 들어 있으면 그 명칭이나 명명활동은 부적합한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은 출판된 저작물일 수 있다(즉, 그 안의 분류학적 자료는, 출판된 분류학적 자료와 동일한 명명법상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으나, 무효로 간주되는 저작물이다: 제8조 7.1을 보라).

8.4. **1986년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 1986년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이 출판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전통적인 인쇄 방법(활판 인쇄, 평판 인쇄 등) 또는 젤라틴판 인쇄나 등사판 인쇄로 지면(紙面)에 인쇄된 것이어야 한다.

8.5. **1985년 이후 2000년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 1985년과 2000년 사이에 전통적 인쇄가 아닌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은 다음 조건을 갖출 경우 이 규약의 의미상 출판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8.5.1. 이 조의 다른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제9조의 규정들에 배치되지 않으며

8.5.2. 해당 저작물 안의 신명칭이나 명명활동이 공적이고도 영구적인 기록을 위한 것이라는 저자의 이름이 들어 있고

8.5.3. 해당 저작물 자체 내에 이 저작물이 동시적으로 취득 가능한 복제물을 포함하는 판본으로 제작되었다는 문자 성명이 들어 있을 경우이다.

8.6. **1999년 이후 지면 인쇄 외의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 1999년 이후에 지면 인쇄(紙面印刷)가 아닌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이 이 규약의 의미상 출판된 것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복제물(출판 형태의)이 최소한 5개의 개방된 공공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성명이 들어 있어야 하며, 이 도서관들은 해당 저작물 자체에 적힌 도서관 명칭을 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8.7. **금지 저작물의 지위.** 명명법적 목적을 위하여 심의회의 전권으로(제81조) 금지되었으나 이 조(條)의 규정들을 충족시키는 저작물은, 심의회가 이를 출판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제를 하지 않는 한, 이 규약의 의미상 출판된 것으로 존속된다.

8.7.1. 이와 같은 저작물은 출판된 기재나 삽화의 원 자료로서 적합한 것으로 존속되지만, 그 안의 명칭이나 명명활동(담명모식의 확정이나 제24조 2의 우선 지위의 결정과 같은)까지 적합으로 될 수는 없다.

권고 8A. 광범위 배포. 저자는 신학명, 명명활동, 명명법에 영향 줄 수 있는 자료가 널리 전파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적절한 과학잡지나 잘 알려진 모노그라프 시리즈에 출판을 하고 제안된 신학명이 Zoological Record에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가장 쉽사리 발현된다. BIOSIS U.K.가 출판하는 Zoological Record에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내면 이 일이 가장 쉽게 완수된다.

권고 8B. 지면 저작물의 바람직함. 저자와 출판자는 신학명이나 명명활동의 최초 출판이 지면 인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권고 8C.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공적 접근성. 신학명이나 명명활동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복제본은 공적

으로 개방된 도서관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그러나 1999년 이후에 지면 인쇄 외의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소장에 대해서는 제8조 6을 보라).

권고 8D. 저자, 편집자, 출판자의 책임. 저자, 편집자, 출판자는 신학명, 명명활동, 명명법에 영향 줄 수 있는 자료가 들어 있는 저작물이 이 규약의 의미상 자명한 출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 편집자와 출판자는 저작물에 출판 일자와 입수처를 표시할 책임이 있다.

권고 8E. 부정성명의 포함. 편집자와 출판자는 공적이고도 영구적인 과학적 기록을 위해 출판된 것이 아닌 저작물(심포지움 요약문, 회합에서 배포될 문건의 공지 등)에 신명칭이나 이 명칭을 적합하게 만드는 자료 또는 새로운 명명활동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이러한 문건들에 부정성명(disclaimer)을 확실하게 포함시켜서(제8조 2를 보라), 그곳에 처음 나타난 신명칭이 본의 아니게 동물명명법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저작물에 대한 우선권을 미리 점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출판 저작물이 아닌 발표물. 제8조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 외에, 아래의 각 발표물은 명명규약상 출판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9.1. 공정 방법을 불문하고, 1930년 이후 팩시밀리로 복제된 자필;

9.2. 사진 본체;

9.3. 교정쇄;

9.4. 마이크로필름;

9.5. 모든 음성 녹음;

9.6. 표본 라벨;

9.7. 이전에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일지라도 주문하여 취득한 비출판물(제8조)의 복제물;

9.8. 전자 신호(예. World Wide Web)를 이용하여 배포된 문건이나 삽화;

9.9. 또는 회합, 심포지엄, 콜로퀴움, 학술대회의 참가자를 위해 제작된 논문 요약, 문건, 포스터, 강연 원고, 또는 유사 물품.

권고 9A. 요약문 내 본의 아닌 출판의 회피. 주로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학술대회 문건의 요약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이 문건에 들어 있는 동물명명법에 영향을 주는 명칭과 명명활동이 본의 아니게 출판될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저자는 요약문 내에 적절한 부정성명을 넣어야 한다(제8조 2).

제4장 적합성의 기준

제10조. 적합성과 관련된 규정. 명칭과 명명활동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만 적합한 (available) 것이 된다.

10.1. 일반적 구비조건. 명칭과 명명활동은 이 조의 제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그리고 해당될 경우 제11~20조의 제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적합하며 저작권과 출판 일자가 부여된다(출판 일자와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21조와 제50조를 보라). 이 규정들의 적용이 불완전할 경우 심의회가 명칭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제78~81조).

10.1.1. 만약 새로운 공칭분류군이나 명명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이 정지되었다가 일정 기간 후에 재개된다면 그 명칭과 명명활동은 관련 조항의 필요조건이 적용될 때만 적합한 것이 된다.

권고 10A. 편집자와 출판자의 책임. 편집자는 새로운 공칭분류군과 관련된 기재와 삽화, 특히 해당 명칭의 적합성 부여에 필요한 명명활동이나 자료가 모두 동일 저작물과 동일 일자에 출판되도록 해야 한다.

10.2. 아종하 명칭의 적합성. 아종하 명칭(infrasubspecific name)은, 이것이 1961년 이전에 "변이체(variety)", "종형(form)"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거나 제45조 6.4.1에 의해 적합하다고 간주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제45조 5). 만약 어떤 저자가 전에 아종하 분류계급에서 발표된 한 명칭을 하나의 종이나 아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그 저자는 이로 인하여 하나의 신명칭을 창설하는 것이 되며 저작권은 이 저자에게 귀속된다(제45조 5.1)(또한 제23조 3.4 및 제50조 3.1을 보라).

10.3. 집합군 및 생적분류군(生跡分類群)을 대상으로 제안된 명칭의 적합성. 집합군을 대상으로 제안된 명칭은 속군명칭으로 취급되며(제42조 2.1), 생적분류군(ichnotaxon)을 대상으로 제안된 명칭은 이것이 처음 출간된 방식에 따라 과군명칭이거나 속군명칭, 또는 종군명칭이다(속군 수준에서 사용하기 위해 생적분류군을 대상으로 창설된 명칭들에 대해서는 제42조 2.1을 보라).

10.4. 속의 하위 부류를 대상으로 제안된 명칭의 적합성. 한 속의 속군 부류를 대상으로 제안된 일명식 명칭은, 설사 이차적으로 또는 그보다 더 세분된 집단을 대상으로 제안된 명칭일지라도, 또한 이 부류가 "절(section)" 또는 "부(division)"와 같은 용어로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아속명으로 취급되지만, "상종(superspecies)"과 같은 용어로 분류된 종 집단에 부여된 명칭은 속군명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10.5. **최초에는 동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동물로 분류된 분류군의 명칭의 적합성.** 최초에는 동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동물로 분류된 생물에 대한 저작물에 근거를 둔 분류군을 포함하여, 분류군의 명칭(들)은 이 장의 관련 규정을 만족시키고, 이 규약(제1조 3, 3조)에 의해 배제되지 않으며, 이 분류군에 관련된 타 규약(국제식물명명규약 또는 국제세균명명규약)하에서 잠정적 유효명칭일 경우, 원출판부터 적합한 것이 된다.

10.6. **적합성에 대한 무효성의 영향.** 한때 적합했던 명칭은, 이 명칭이 하위동물이명, 하위이물동명, 부정당수정, 불필요한 치환명칭, 또는 금지명칭이어서 무효한 것인 것과는 상관없이, 심의회가 달리 제정하지 않은 한(제78조 1, 78조 2), 적합명칭으로 존속된다(이 분류군이 더 이상 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명칭의 적합성은 유지된다, 제2조 2).

10.7. **채택된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 범위 안에 수록되지 않은 명칭의 적합성.** 관련된 채택된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Part of the *List of Available Names in Zoology*)의 범주 안에 수록되지 않은 명칭은, 전에 적합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두 적합하지 않다.

제11조. 필요조건. 명칭이, 또는 해당될 경우 명명활동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다음 규정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1.1. **출판.** 제8조의 의미상 1757년 이후의 명칭이나 명명활동은 출판된 것이어야 한다.

11.2. **라틴어 알파벳의 강제적 사용.** 학명은 처음 출판될 때 라틴어 알파벳 26자로만 철자되어야 하며(j, k, w, y 포함), 처음 출판되었을 당시의 명칭 안에 발음부호나 다른 기호, 아포스트로피, 연결선, 하이픈, 복합 종군명 안의 숫자는 해당 명칭을 부적합하게 만들지는 않는다(이들의 수정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2조 5.2를 보라).

11.3. **어원.** 이 장(章)의 필요조건에 합당할 경우 하나의 명칭은 라틴어, 그리스어나 다른 언어의 단어이거나 이들로부터 기원한 단어이거나(알파벳이 없는 언어일지라도) 이러한 단어들로부터 형성된 단어일 수 있다. 이 단어들은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질 경우 문자의 임의적 조합이어도 된다.

예.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Toxostoma*와 *brachyrhynchos*, 알곤키안 인디언 언어에서 기원한 *opossum*, 아라비아어에서 기원한 *Abudefduf*, 러시아어에서 기원한 *korsac*, 티베트어에서 기원한 *nakpo*, 코코이무디 원주민 언어에서 기원한 *canguru*, 임의적 문자 조합인 *Gythemon* 등이 있다. 문자의

임의적 조합인 cbafdg는 단어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을 이루지 않는다.

권고 11A. 토속명칭의 사용. 변형하지 않은 토속 단어는 학명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토속 단어에서 기원한 명칭일 경우 적절한 라틴어화가 요청된다.

11.4. 이명식 명명법의 일관된 적용. 저자는 명칭이나 명명활동이 발표되는 저작물에서 일관되게 이명식 명명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제5조 1); 그러나 이 조항은 과군 이상의 분류계급의 분류군명의 적합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4.1. 관련 공칭종이 없이 과군명칭이나 속군명칭을 포함하는 출판 저작물은 반대적 증거가 없다면 이명식 명명법 원칙에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11.4.2. 아종의 학명, 즉 삼명식 명칭(제5조 2)은, 이명식 명명법 원칙에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11.4.3. 일관되게 이명식이 아닌, 1931년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의 색인은, 이 색인의 학명에 이명식 명명법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을 경우, 이 원칙에 일치하는 저작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색인에 발표된 학명은, 만약 그 명칭이 이 장과 제4조, 5조 및 6조의 제 규정을 충족시키고, 색인의 표제와 본문의 기재, 삽화, 또는 지증 사이의 연관성이 모호하지 않다면, 적합하다.

11.5. 제안 시 유효명칭으로 사용될 명칭. 하나의 명칭이 적합명칭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위동물이명으로 출판되고 나중에 제11조 6.1의 규정들에 의해 적합명칭으로 되지 않은 한, 그 명칭이 제안될 때 한 분류군에 대한 유효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1.5.1. 1961년 이전에 한 분류군에 대하여 조건부로 제안된 명칭은 그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제15조).

11.5.2. 과거의 부적합명칭의 지위는, 비록 그 명칭이 발표되었으나 적합명칭이 되도록 하지는 못한 저작물이 참고문헌으로 동반되었다 할지라도, 이 명칭의 인용만으로(즉, 한 분류군에 대한 적용이 없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예. 1780년에 Chemnitz는 복족류 *Conus moluccensis*를 기재하면서 이 명칭을 유효명칭으로 처리하였으나 저작물에서 일관되게 이명식이 아니었기에 그 명칭은 부적합명칭이다. 1817년에 Dillwyn은 명칭 *Conus moluccensis*를 인용하였으나 이를 한 분류군의 유효명칭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명칭 *Conus moluccensis*는 비록 Dillwyn의 인용에 Chemnitz의 저작물이 참고문헌으로 동반되었지만, Dillwyn의 명명활동으로 유효명칭으로 되지는 않았다. Kűster (1838)는 이 명칭을 한 분류군에 적용하면서 문헌 참고를 통하여 그 분류군이 Chemnitz의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로 인해 *Conus moluccensis* Kűster, 1838이 적합명칭이 된다.

11.6. 동물이명으로 출판된 것. 적합저작물에 최초로 발표될 때 유효명칭으로 사용되던 한 명칭의 하위동물이명으로 처리된 명칭은 이로 인해 적합명칭이 되지 못한다.

11.6.1. 그러나 만약 하위동물이명으로 발표된 이러한 명칭은 1961년 이전에 적합명칭으로 처리되고 한 분류군의 명칭으로 채택되었거나 상위이물동명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로 인해 적합명칭이 되지만 최초로 동물이명으로 발표된 날짜가 출판 일자가 된다(속군명칭일 경우, 모식종에 대해서 제67조 12를 보라; 종군명칭일 경우, 담명모식에 대해서 제72조 4.3을 보라;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50조 7을 보라).

예. Meigen (1818)은 *Ceratopogon flavipes* Meigen (파리목)의 논의에서 그가 Megerle로부터 원고 내의 명칭 *Palpomyia geniculata*라는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물이명으로 발표된 *Palpomyia*는 1961년 이전에 유효명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합명칭이며, Meigen, 1818로 귀속된다. 종본명 *geniculata*는 전혀 채택된 바 없으며 Meigen (1818) 이후 유효명칭이 아니다.

11.6.2. 1758년 이전에 출판되었으나, 1757년 이후 유효명칭으로 사용된 한 명칭의 동물이명으로 인용된 명칭은 제11조 6에 의하여 적합명칭이 될 수 없다.

예. Linnaeus (1758)가 *Echinus exculentus* Linnaeus, 1758의 동물이명관계 정리에서 인용한 명칭 "*Cidaris miliaris* Klein" (즉, Klein, 1734의)는 다른 저자에 의한 한 분류군의 채택을 나타낸 것 뿐이므로 Linnaeus (1758)로 인해 적합명칭이 되지는 못한다.

11.6.3. 1960년 이후, 하위동물이명으로 처리되어 최초로 발표된 명칭은 제11조 6에 의하여 이 명명활동으로 적합명칭이 될 수 없다.

11.7. 과군명칭.

11.7.1. 과군명칭은 최초 출판될 때 아래의 모든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1.7.1.1. 적합한 속명의 어간으로부터 생긴 주격 복수 명사여야 한다(제29조) (속명을 직접 참고하거나 이의 어간을 보면 드러나며, 그러나 1999년 이후에 제안된 과군명칭에 대해서는 제16조 2를 보라); 이때 속명은 새로운 과군 분류군에서 사용되는 유효명칭이어야 한다(제63조, 64조) (한 명칭을 만드는 데 어간만을 사용하는 것은, 상반된 증거가 없다면, 저자가 새로운 과군 분류군에서 속명을 유효명칭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로서 수용된다);

예. 명칭 ERYCIINAE Robineau-Desvoidy, 1830 (원래 ERYCINAE로 철자됨)은 속 *Erycia* Robineau-

Desvoidy, 1830을 포함하는 과군 분류군을 대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유효명칭이다. 명칭 TRICHOCERIDAE Rondani, 1841은 비록 *Trichodera* Meigen, 1803이 명칭의 근간이라는 언급이 없이 제안되었으나, 유럽의 파리목 과들의 분류에서 Meigen이 인용되었고 모든 과명들을 소속된 속명을 토대로 만든 Rondani의 기본 원칙이 뚜렷이 명시되었으므로 적합명칭이다. PINNIDAE Leach, 1819는 *Modiola* Lamarck, 1801이나 *Mytilus* Linnaeus, 1758 외에도, 어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Pinna* Linnaeus, 1758도 포함하는데, 분명히 과명은 후자의 속을 토대로 창설되었으며, 적합명칭이다.

Robineau-Desvoidy (1830)의 명칭 "Macromydae"는 비록 정식의 라틴어화한 집단 명칭이지만 (토속명칭이 아닌), 문맥상 Tachinidae과의 상이하고 거리가 먼 부류에 소속된 속인 *Macromya* Robineau-Desvoidy, 1830을 포함하지 않은 속 집단을 칭한 서술적 용어였으므로, 적합명칭이 아니다.

11.7.1.2. 분명히 속 이상의(suprageneric) 분류군을 칭하는 학명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한 속의 구성원들을 칭하는 복수 명사나 형용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 Osten Sacken (1882)는 "*Graptomyzae* of the Indo-Malayan Archipelago"라는 제목으로 *Graptomyza* 속의 파리목 곤충 11종의 검색표를 출판하였다. 단어 "Graptomyzae"는 단지 "*Graptomyza*속의 종들"을 칭하는 한 가지 복수 명사이며, 한 과군의 적합명칭이 아니다.

11.7.1.3. 제11조 7.2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군명칭 접미사로 끝나야 한다; 과군명칭 접미사(제29조 2)가 부정확한 과군명칭은 원저자와 출판 일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접미사는 수정되어야 한다(제29조, 32조 5.3).

예. Latreille (1802)는 *Tipula* Linnaeus, 1785를 토대로 Tipulariae과를 창설하였다. 접미사 -ariae는 -IDAE로 수정되고, TIPULIDAE는 Latreille로 귀속되며; 철자법을 처음 수정한 사람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11.7.1.4. 화석에만 적용되고 접미사 *-ites*, *-ytes*, 또는 *-ithes*로 끝나는 명칭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제20조);

11.7.1.5. 심의회에 의해 금지된 속군명칭에 토대를 두어서는 안 된다(제78조).

11.7.2. 하나의 과군명칭이 이 조항의 위 규정들에 합치되나 라틴어화한 형태는 아닌 채 1900년 이전에 발표되었을 경우, 그 명칭은 사후의 저자들에 의해 라틴어화되고 해당 동물군의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유효명칭으로 수용되면서 원저의 출판 연도가 인용될 경우에만 원저자와 출판 일자를 가지는 적합명칭이다.

예. 진드기의 과명 TETRANYCHIDAE는 일반적으로 Donnadieu, 1875로 귀속된다. 그는 이 명칭을 "Tétranycidésh"로 발표했으나, 1875년 이후 TETRANYCHIDAE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볼 때, 이 명칭은 처음 라틴어화한 Murray (1877)가 아니라 Donnadieu, 1875로 귀속된다.

11.8. 속군명칭(genus-group names). 속군명칭(제10조 3을 보라)은 하나의 단어 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글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주격 단수 명사이거나 그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11.8.1. 라틴어로 된 문건이지만, 라틴어 문법적 필요조건 때문에 주격 단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안된 속군명칭은, 적합성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을 갖춘다면, 적합명칭이 되지만, 주격 단수로 수정되어야 한다.

예. Loew (1863)는 "*Chlorops versicolor* nov. sp."라는 제목 하에 속명 *Diplotoxa* (파리목)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Chlor. versicolor cum similibus proprium genus… constituit, cui nomen Diplotoxae propono" (*Chlor. versicolor* 및 유사종은 독립된 속을 구성하며, 나는 이들에 대하여 명칭 *Diplotoxa*를 제안한다).

11.9. 종군명칭(species-group names).

11.9.1. 종군명칭은 하나의 단어이거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글자이거나, 복합어이거나(제11조 9.5를 보라), 라틴어이거나 라틴어화한 단어이거나, 다음과 같이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11.9.1.1. 주격 단수의 형용사 또는 분사여야 하며 (*Echinus esculentus*, *Felis marmorata*, *Seioptera vibranus*에서와 같이), 또는

11.9.1.2. 속명과 동격인 주격 단수의 명사이거나 (*Struthio camelus*, *Cercopithecus diana*에서와 같이), 또는

11.9.1.3. 소유격 명사이거나 (예. *rosae*, *sturionis*, *thermopylarum*, *galliae*, *sunctipauli*, *sanctaehelenae*, *cuvieri*, *merianae*, *smithorum*), 또는

11.9.1.4. 소유격의 실명사처럼 사용되고 해당 동물과 연관된 생물의 종본명에서 유래한 형용사여야 한다 (*Trisopterus luscus*에 기생하는 요각류 *Lernaeocera lusci*의 경우와 같이).

11.9.2. 라틴어 문장이지만 라틴어 문법적 필요조건 때문에 주격 단수가 아닌 방식으로 제안된 형용사형 종군명칭은 다른 적합성의 필요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적합명칭이지만, 필요할 경우 주격 단수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예. Illiger (1807)는 *Musca grossa*와 *M. tremula*를 처리할 때, 파리 신종을 기재하면서 "…. species occurrit, *Grossae* et *Tremulae* intermedia…. quam *Pavidam* nuncupamus" (*M. grossa*와 *M. tremula*

의 중간적인 종이 있는데, 여기서 이를 *pavida*라고 칭한다)라고 서술하였다. 직접 목적격으로 발표된 종본명 *pavidam*은 주격인 *pavida*로 수정되었다.

11.9.3. 종군명칭은 속명과 모호하지 않은 조합으로 발표되어야 한다(문맥상 명백하게 또는 함축적으로).

예. 위의 제11조 9.2의 예에서, 조합들은 나란히 표기되거나 언어로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즉, 본문과 구별된 라틴어 명칭의 사용), 문맥상으로는 분명하다. 종본명 *pavida*는 *Musca*와 조합되어 발표된 것으로 간주된다.

11.9.3.1. 속명이 유효명칭이거나 적합명칭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11.9.3.2. 종군명칭이, 실제로는 속명의 부정확한 철자법이나 변경된 것과 조합을 이루어 발표되었을지라도, 속명의 정확한 원철자법과 조합되어 발표된 것으로 간주되며(제33조);

11.9.3.3. 새로운 종군명칭이 발표된 문장에서 모호하지 않다면 속명이 약자로 인용될 수 있고;

11.9.3.4. 속의 조합은 비록 명백해야 하지만 일시적일 수 있으며;

예. 이명식 명칭 *Dysidea*? *papillosa* Johnston, 1842는 임시적 속명 조합으로서, 종본명의 적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9.3.5. 최초에 삽입명칭으로(제6조 2) 발표된 종군명칭은 이 명명활동으로 적합명칭이 되지는 못하고;

11.9.3.6. 이전의 적합 속명과 조합되어 1961년 이전에 처음 발표된 종군명칭은, 그러나 동일 저작물에 신종 또는 신아종을 포함하는 조건부로 제안된(제15조) 신공칭속이 있을 경우, 이전의 적합 속명과 조합하여 적합한 학명으로 취급된다(제15조 1, 51조 3.3을 보라).

예. Lowe (1843)는 어류 신종 *Seriola gracilis*를 창설하면서 동시에 조건부로 이 공칭종을 포함하는 신속 *Cubiceps*를 제안하였다. 이 행위로 그는 공칭종 *Seriola gracilis* Lowe, 1843을 처음 창설했고 조건부로 제안한 *Cubiceps*속에 이 종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의 명칭은 *Cubiceps gracilis* (Lowe, 1843)로 인용된다.

11.9.4. 종군명칭은 접속사로 연결된 단어들로 구성되지 않아야 하며 라틴어 알파벳으로 철자될 수 없는 표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제11조 2를 보라; 하이픈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32조 5.2.4.3을 보라).

예. "rudis planusque" (여기에서 "-que"는 접속사임)나 "?-album"과 같은 표기는 종군명칭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1.9.5. 만약 종군명칭이 하나의 실체(예. 숙주 종, 지리적 지역)를 나타내거나 칭하는 분리된 단어들로서 발표되었으나, 해당 저작물에서 저자가 이명식 명명 원칙(제5조 1)을 일관되게 적용했으면, 구성 단어들은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이픈 없이 연결한다(제32조 5.2.2).

예. *Coluber novaehispaniae*, *Calliphora terraenovae* 및 *Cynips quercusphellos*에서(후자의 종본명은 숙주 식물의 이명식 명칭을 토대로 지어짐) 종본명들은 원래 두 단어로 발표되었으나 이 단어들은 함께 하나의 실체를 칭하므로 허용된다. 그러나 *Aphis aquilegiae flava*(즉, *Aquilegia*의 노랑 진딧물)에서 "*aquilegiae flava*"의 두 단어는 하나의 실체의 명칭에 근거를 두지 않은 서술구이므로 종군명칭으로 허용될 수 없다.

11.10. **오동정의 고의적 이용.** 만약 한 저자가 새로운 공칭 속군 분류군의 모식종에 대하여 종본명이나 아종본명을 사용하면, 그러나 이에 대한 이전의 오동정의 의미로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이 저자의 그 명칭 사용은 신공칭종을 칭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종본명은 마치 이것이 새로운 속군명칭과 함께 조합되어 새로이 제안된 것처럼 저자와 발표일자를 가지는 적합명칭이 된다(명기된 이전의 오동정으로서 원래 포함된 종을 모식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67조 13을, 이러한 종을 이전에 창설된 공칭속이나 공칭아종의 모식종으로 사후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69조 2.4를 보라).

예. Leach (1817)는 공칭속 *Plea* (노린재목)를 창설할 때 *Notonecta minutissima*를 단모식성의 모식종으로 확정하였으나, 그는 명백히 명칭 *N. minutissima*를 Geoffroy in Fourcroy (1785) 및 기타 저자들에 의해 사용된 오동정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이 이명식 명칭의 원저자인 Linnaeus (1758)의 분류학적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 명명활동으로 Leach는 실제로 관련된 그 분류군에 대한 신공칭종 *Plea minutissima* Leach, 1817을 창설했고 이 종을(*Notonecta minutissima* Linnaeus, 1758이 아닌) *Plea*의 모식종으로 확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2조. 1931년 이전에 발표된 명칭.

12.1. **필요조건.** 1931년 이전에 발표된 모든 신명칭이 적합명칭이 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규정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분류군에 대한 기재나 정의 또는 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12.2. **지증(indications).** 이 조항의 목적상 "지증(指證)"이란 단어는 다음 내용만을 뜻한다:

12.2.1. 기재나 정의가 1758년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또는 그것이 일관되게 이명식이 아닐지라도, 또는 심의회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고 할지라도(심의회가 그 저작물을 비출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

정하지 않는 한, 제8조 7), 이전에 발표된 기재 또는 정의의 문헌 참고;

12.2.2. 제11조 4.3의 제 규정이 충족될 경우, 일관되게 이명식은 아닌 저작물의 색인 속에 한 명칭을 포함시킴;

12.2.3. 이 규약의 어느 규정이 요구하는 것이든 아니든, 한 적합명칭에 대한 신대체명칭(nomen novum)의 제안;

12.2.4. 적합 속명으로부터 과군명칭의 형성(제29조);

12.2.5. 새로운 속군명칭의 경우, 종본명(들)을 모호하지 않게 공칭 종군 분류군(들)에 소속시킬 수 있을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합 종본명을 이 속군명칭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속 안에 분명히 포함시키거나, 또는 문헌 참고를 통해 분명히 인용하는 것;

예. 딱정벌레 속군명칭인 *Isarthron*은 8개의 관련 종군명칭과 함께 Dejean (1835)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종군명칭들은 저자명과 함께 인용되었으며(예. "*luridum* Fabr."); 비록 참고문헌들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그 명칭들은 모호하지 않게 공칭종에 할당되었고 따라서 *Isarthron*은 적합명칭이 된다.

12.2.6. 하나의 신공칭속과 단일의 신공칭종에 대한 공동 기재나 정의로서, 이 기재나 정의에서 명칭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진술되었든 아니든 각 명칭에 대한 지증을 제공하는 경우;

12.2.7. 비록 삽화가 1758년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 또는 일관되게 이명식이지 않은 저작물, 또는 심의회에 금지된 저작물에 수록되어 있을지라도(심의회가 이 저작물을 출판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정을 내리지 않은 한, 제8조 7), 한 분류군의 삽화 또는 이 삽화에 대한 참고문헌과 함께 새로운 속군명칭이나 새로운 종군명칭의 제안; 그리고

12.2.8. 한 생물의 활동치성물의 기재(제23조 3.2.3, 72조 5.1).

12.3. **제외.**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설명 자체는 기재, 정의, 또는 지증을 구성하지 않는다: 토속명칭, 지점, 지질층면, 숙주, 라벨, 또는 표본.

제13조. 1930년 이후에 발표된 명칭.

13.1. **필요조건.** 1930년 이후 발표된 신명칭이 적합명칭이 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13.1.1. 분류군을 구별시키는 형질을 글로서 진술한 기재나 정의가 수반되어

야 하며, 또는

13.1.2. 비록 삽화가 1758년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 또는 일관되게 이명식이 아닌 저작물, 또는 심의회에 금지된 저작물에 수록되어 있을지라도(심의회가 이 저작물을 출판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정을 내리지 않은 한, 제8조 7), 이러한 출판된 설명에 대한 문헌 참고가 수반되어야 하며,

13.1.3. 이 규약의 어느 규정이 요구한 것이든 아니든, 적합명칭의 신대체명칭(nomen novum)이라고 명백히 제안되어야 한다.

권고 13A. 식별 의도. 하나의 신공칭분류군을 기재할 때 저자는 식별특징(diagnosis) 즉 신공칭분류군을 유사 분류군들과 구별하는 데 필요한 형질들의 요약을 포함시켜서 한 분류군을 구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권고 13B. 언어. 저자는 신 분류군의 식별특징을 동물학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언어로 출판해야 한다. 식별특징은 또한 해당 분류군과 관련된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13.2. **과군명칭.** 1930년 이후에 발표된 모든 새로운 과군명칭이 적합명칭이 되기 위해서는 제13조 1의 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며, 당시에 저자가 해당 과군 분류군 내에서 유효명칭으로 사용한 적합 속군명칭으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제11조 71.1, 29조).

13.2.1. 1930년 이후, 1961년 이전에 최초로 발표되었으나 제13조 1의 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과군명칭은, 2000년 이전에 유효명칭으로 사용되었고 1960년 이후 2000년 이전에 어떤 저자가 당시의 규약 판의 제13조를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무효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원출판부터 유효명칭이다.

13.3. **속군명칭.** 1930년 이후 발표된 모든 새로운 속군명칭이(집합군이나 생적분류군에 제시된 명칭은 제외) 적합명칭이 되기 위해서는 원출판에 모식종 확정이 수반되거나(제68조) 신대체명칭(nomen novum)으로 명백히 제안되어야 한다(제67조 8).

13.3.1. 1931년 이전에 창설된 속군 분류군의 명칭을 1930년 이후에 신대체명칭(nomen novum)으로 교체할 경우, 이전에 그 분류군의 모식종 지정이 없었다면 이때 지정해야 한다.

13.3.2. 집합군에 대하여 발표된 명칭(제66조)은 모식종 확정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집합군은 모식종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제42조

3.1).

13.3.3. 2000년 이전에 속군 수준의 생적분류군에 대하여 발표된 명칭은 모식종 확정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이 명칭이 1999년 이후에 신대체명칭으로 교체될 경우에는, 이전에 모식종 확정이 없었다면, 이때 모식종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제66조 1).

13.4. **신속군 분류군과 신종의 통합 기재.** 신공칭속이나 신공칭아속과 이에 포함된 단일의 신공칭종의 통합 기재나 정의는, 만약 "gen. nov., sp. nov." 또는 이와 동등한 표기가 있다면, 제13조 1.1에 의거, 각 명칭에 대하여 유효성이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999년 이후에 이와 같이 기재된 종군 분류군은 또한 제16조 4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3.5. **신과군 분류군과 신속의 공동 기재.** 새로운 공칭과군 분류군과 이 과군의 명칭의 토대가 되는(제11조 5) 단일의 신공칭속의 통합 기재나 정의는 제13조 1.1에 의거, 각 명칭에 적합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1930년 이후에는 신공칭속의 모식종 확정 없이 발표된 이와 같은 명칭들에 대하여 적합성이 부여되지 않는다(제13조 2, 13조 3).

권고 13C. 개별적 기재와 정의. 저자들은 기재와 정의의 통합 발표를 피할 것이 촉구된다. 각 신공칭 분류군은 동일 분류계급의 타 분류군과 구별되어야 한다.

13.6. **예외.**

13.6.1. 1930년 이후에 제안된 명칭은 제12조 2.2, 12조 2.4 (그러나 제13조 2.1을 보라), 12조 2.5 및 12조 2.7에 수록된 지증 방법으로 적합명칭이 될 수 없다.

13.6.2. 1930년 이후에 현생 동물의 활동치성물에 대하여 제안된 명칭은 동물명명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조 3.6).

제14조. 저자 불명인 명칭과 명명활동의 저작권. 1950년 이후에 저자 불명으로 발표된 신명칭이나 명명활동은(제50조 1) 그로 인하여 적합성이 부여되지 못하나; 1951년 이전의 이러한 발표는 적합성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심의회가 발표한 명명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1960년 이후에 발표된 명칭 및 명명활동.

15.1. 조건부 제안. 조건부로 제안되고 1960년 이후에 발표된 신명칭이나 명명활동은 이로 인해 적합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조건부 제안으로 1961년 이전에 발표된 신명칭이나 명명활동은 적합하다(모식확정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제67조 2.5 및 67조 5.3을 보라; 조건부로 제안된 속명과 함께 처음 발표된 종군명칭에 대해서는 제11조 9.3.6 및 51조 3.3을 보라, 그리고 임시적 조합으로 발표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11조 9.3.4를 보라).

15.2. 1960년 이후에 "변이체(variety)" 또는 "종형(form)"으로 발표된 명칭의 제외. 1960년 이후에 명백히 "변이체" 또는 "종형"으로 발표된 신명칭은 아종하 명칭으로 간주되며 이 자체는 이 규약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제1조 1.1) 제 규정에서 배제된다(제1조 3.4, 45조 6.3).

15.2.1. 1961년 이전에 "변이체" 또는 "종형"으로 발표된 명칭들에 대해서는 제45조 6.4를 보라.

제16조. 1999년 이후에 발표된 명칭.

16.1. 모든 명칭: 신공칭분류군 창설 시 명백해야 할 저자의 의도. 신대체명칭을 포함하여 1999년 이후에 발표되는 모든 신명칭은 신명칭임이 의도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

권고 16A. 의도적으로 신명칭이라고 명백히 표현하는 방법. 저자의 불확실한 의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대체명칭을 포함하여 신명칭들(nomina nova)을 제안하는 저자는 제목에, 또는 신명칭을 처음 적는 부분에 "fam. nov.", "g. nov.", "sp. nov.", "ssp. nov."와 같은 적절한 라틴어 약자를 이용하여, 또는 엄격한 표현으로 "new family", "new genus", "new species", "new subspecies", "n. fam.", "n. g.", "n. sp.", "n. ssp.", "nomen novum"과 같이 표기하여 저자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낼 것을 권고한다.

"stat. nov."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용어가 아종하 실체에 대한 과거의 명칭이 한 종이나 아종에 적용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 저자는 이것이 아종하 실체의 과거 명칭을 신명칭으로 창설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명백히 나타낸다고 받아들여야 한다(제45조 5,1).

16.2. 과군명칭: 모식속의 인용이 필요함. 1999년 이후의 새로운 과군명칭 발표는 제13~15조의 규정들을 충족시키는 것과 외에도 모식속명(즉, 과군명칭이 유래한 명칭)의 인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권고 16B. 잠재적 이물동명들과 유사 명칭들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하여 저자는 모식속명을 인용할 때 이의 저자와 발표 연도, 명칭이 창설된 저작물의 참고문헌을 인용할 것을 권장한다.

16.3. **속군명칭: 생적분류군 및 집합군.** 생적분류군을 위해 제안된 명칭에 대해서는 제13조 3.3을 보라; 집합군에 대해 제안된 명칭에 대해서는 제13조 3.2를 보라.

16.4. **종군명칭: 명확한 담명모식확정.** 신대체명칭(nomen novum)을 제외한,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제72조 7), 1999년 이후에 발표되는 모든 신종본명이나 신아종본명은 원출판물에 다음 사항이 수반되어야 한다.

16.4.1. 공칭모식에 대한 정모식 또는 총모식의 명확한 확정(제72조 2, 72조 3, 73조 1.1, 73조 2 및 권고 73A 및 73C).

16.4.2. 정모식 또는 총모식이 현생 표본인 경우, 이 표본(들)이 들어 있거나 있게 될 수장품 및 이 수장품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설명(권고 16C를 보라).

권고 16C. 모식표본의 보존 및 기탁. 담명모식은 국제적 참고 기준임을 인식하여(제72조 10) 명명자는 연구 수장품을 관리하고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연구를 위해 접근을 허용하는 연구기관에 모식표본을 기탁해야 한다(즉, 권고 72F의 기준에 맞는 기관).

권고 16D. 모식표본 구별 자료의 출판. 모식표본을 다른 표본들로부터 구별하는 자료를 제시할 때(제16조 4.1) 저자는 표본 번호, 라벨 기재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권장되는 자료에 대하여 권고 73C 및 73D를 보라).

권고 16E. 총모식보다는 정모식의 선호. 저자는 가능한 한 총모식보다는 정모식을 선정해야 한다.

권고 16F. 모식표본의 삽화. 가능한 한 신공칭분류군을 창설하는 저작물에 해당 분류군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모식이나 총모식의 삽화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17조. 하나 이상의 분류군이나 잡종 기원의 분류군에 붙여진 것으로 밝혀진 명칭이나 동물의 생활사 단계 또는 비정상 표본을 근거로 붙여진 명칭. 명칭의 적합성은 다음과 같을지라도 영향받지 않는다.

17.1. 원기재나 담명모식 표본이 하나 이상의 분류군과 관련되거나 하나 이상의 분류군에 속한 동물체 부분들과 관련된 명칭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또는

17.2. 잡종 기원인 것으로 알려지거나 사후에 그렇다고 밝혀진 분류군에 적용된 명칭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17.3. 동물체의 일부분, 한 쪽 성, 생활사의 한 단계, 여러 세대 중의 한 세대, 다형적인 종의 한 형이나 계급, 단위생식형, 또는 한 분류군의 비일반적인 표본에 근거한 명칭이라 할지라도(예외에 대해서는 제1조 3 및 45조 6을 보라).

제18조. 부적당한 명칭 및 반복명칭. 부적당함이나 반복명칭은 명칭의 적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23조 3.7).

예. *Polyodon*, *Apus*, *albus*, 또는 *sinensis*와 같은 명칭은 해당 분류군이 그러한 형질이나 분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Bison bison*에서의 *bison*이나 *Troglodytes troglodytes*에서의 *troglodytes*는 반복명칭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제19조. 수정, 부정확한 철자법 및 강제적 변경의 지위.

19.1. 부정당수정 및 부정확한 철자법. 한 적합명칭의 부정당수정은 적합성에 필요한 다른 필요조건에 합당하면 적합명칭이지만(제33조 2.3),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의 명칭은 적합명칭이 아니다(제33조 3).

19.2. 정당수정. 부정확한 원철자법을 교체하는 정당수정은 수정된 정확한 원철자법으로서 원래 명칭의 저작권과 발표일자를 가진다(제32조 2.2, 33조 2.2, 50조 4).

19.3. 다수 원철자법. 최초 교정자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추가적인 원철자법은(제24조 2) 부정확한 원철자법으로 간주되고 개별적인 적합명칭이 아니다(제32조 4).

19.4. 강제적 변경. 명칭의 적합성은 제34조의 제 규정에 의한 강제적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0조. 화석에 대해 붙여진 *-ites*, *-ytes* 또는 *-ithes*로 끝나는 속군명칭. 속군 분류군의 적합명칭의 전체 또는 어간에 접미사 *-ites*, *-ytes* 또는 *-ithes*를 붙여서 형성되고 하나의 새로운 속군 분류군을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지 않은 채 해당 분류군의 현생 구성원과 구별하기 위해 화석에 적용된 명칭은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적합명칭이다. 이러한 명칭은 동물군의 유효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제23조 1) 과군명칭의 토대로 사용하지도 않아야 한다(제11조 7.1.4).

예. 현생 속 *Pecten*, Müller, 1776 및 *Tellina*, Linnaeus, 1758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화석 패류를 칭하는 데 사용된 속명 *Pectinites* 및 *Tellinites* Schlotheim, 1831은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목적상으로만 적합명칭이다. 그러나 화석의 속군 분류군(*Pentacrinites* Blumenbach, 1804와 같은)을 위해 제안되고 현생 동물의 속의 화석 구성원만을 칭하는 것이 아닌 명칭은 이 규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적합명칭이 될 수 있다.

제5장 출판 일자

제21조. 출판 일자의 결정.

21.1. **채택되는 출판 일자.** 제3조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한 저작물이나 이에 포함된 명칭이나 명명활동의 출판 일자로 채택되어야 하는 일자는 다음 규정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1.2. **명기된 출판 일자.** 저작물에 명기된 출판 일자는, 이와 상반된 증거가 없는 한, 정확한 출판 일자로 채택되어야 한다.

21.3. **불완전하게 명기된 출판 일자.** 만약 저작물에 출판 일자가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판 저작물로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최초의 날짜를 출판 일자로 채택해야 하나, 이러한 증거가 없을 때 채택되어야 하는 출판 일자는

21.3.1. 연도와 월은 명기되거나 입증될 수 있으나 날짜는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그달의 마지막 일자, 또는

21.3.2. 연도만 명기되거나 입증될 경우, 그 연도의 마지막 일자.

21.4. **부정확한 출판 일자.** 만약 저작물에 명기된 출판 일자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출판 저작물로서의 존재를 입증하는 최초의 일자를 채택해야 한다. 출판 일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는 제21조 3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21.5. **분할되어 발행된 저작물의 출판 일자.** 만약 한 저작물의 부분들이 서로 다른 일자에 출판되었다면, 각 부분의 출판 일자를 채택해야 한다.

21.6. **여러 출판 일자.** 만약 저작물에 명기된 출판 일자가 여러 일자라면 그중 마지막 일자를 출판 일자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된 일자가 부정확하거나 그 저작물이 부분으로 나뉘어져 발행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출판 일자(들)은 제21조 3~5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1.7. **불명 출판 일자.** 만약 저작물에 출판 일자가 명기되지 않았으면 그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가 출판 저작물로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최초의 일자를 그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의 출판 일자로 채택되어야 한다. 출판 일자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제21조 3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21.8. **발췌 인쇄물이나 복제 인쇄본 조기 배포.** 2000년 이전에 저작물의 명기된 출판 일자에 앞서 발췌 인쇄물을 배포한 저자는 이로 인해 앞당겨진 출판 일자를 가진다. 1999년 이후 발췌 인쇄물의 조기 발행은 그렇지 않은 반면, 자체적인 출판 일자가 각인된 견본 인쇄물은 자체의 발행 일자를 가지는 출판 저작물이

될 수 있다(용어 해설을 보라: “separate 발췌 인쇄물”, “preprint 견본 인쇄물”).

권고 21A. 명기된 출판 일자 외의 일자의 출판. 저자, 편집자, 출판자는 명기된 출판 일자가 아닌 일자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으로 출판하거나 출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명기된 출판 일자에 앞서 발췌 인쇄물을 접수한 저자는 그 저작물의 출판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배포하지 않아야 한다.

권고 21B. 관련 자료의 동시 출판. 편집자와 출판자는 모식확정을 포함하여 신학명의 적합성에 영향을 끼치는 저자의 모든 투고 내용물이 동일 저작물과 동일 일자에 출판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권고 10A).

권고 21C. 출판 일자의 명기. 편집자나 출판자는 저작물, 연속 간행물의 각 부분, 부분적으로 간행되는 저작물의 출판 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나누어지게 될 여러 부분으로 묶여진 한 권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출판 일자, 정확한 페이지 수, 도판의 수, 지도의 수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권고 21D. 출판 일자에 대한 자료의 보존. 도서관원은 제본에 의하여 출판 일자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부분이나 표지, 저작물의 내용이나 그 일부분, 도서관의 수령 일자를 제거하거나 제거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권고 21E. 발췌 인쇄물과 견본 인쇄물의 문헌 정보. 저자, 편집자, 출판자는 발췌 인쇄물이 원저작물의 완전한 문헌 인용을 포함하고(이의 출판 일자를 포함하여) 원저작물과 동일한 페이지 번호를 가질 것을 보장해야 한다. 견본 인쇄물은 이의 출판 일자를 포함하여 그 자체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

권고 21F. 출판 일자의 수정. 만약 신학명이나 새로운 명명활동의 저자가 저작물에 명기된 출판 일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적당한 방법으로 수정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제22조. 출판 연도의 인용.

명칭의 출판 연도는 인용될 경우 명명자 이름 뒤에 따라와야 한다(제51조를 보라).

권고 22A. 인용.

22A.1. **출판 연도의 인용.** 한 명칭의 출판 연도(및 저자명; 제50조를 보라)는 한 저작물에서 적어도 한 번은 인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는 특히 이물동명이나 원래의 조합을 가지지 않는 종군명칭에 대해서 중요하다.

22A.2. **인용 방법.** 한 명칭의 출판 연도를 인용할 때 저자는

22A.2.1. 명명자 이름과 출판 연도 사이에 쉼표 외의 것을 넣어서는 안 되며;

22A.2.2. 저작물에 명기된 출판 연도(각인 연도)가 실제 출판 연도와 다를 경우 실제 출판 연도를 인용해야 하는데, 다음은 예외이다.

22A.2.3. 만약 실제 출판 연도와 각인 연도를 모두 인용하고자 할 때는 실제 출판 연도를 먼저 인용하고 각인 연도를 둥근 괄호 안에 넣어, 또는 다른 괄호와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뒤따르게 해야 한다; 제40조 2.1에 의해 존속되는 과군의 대체명칭의 발표 연도를 위해 괄호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권고 40A를 보라.

예. *Ctenodus alacer* Storr, 1970 ("1969"), 또는 *Ctenodus alacer* Storr, 1970 ["1969"], 또는 *Ctenodus alacer* Storr, 1970 (imprint, 1969), 또는 *Ctenodus alacer* Storr, 1970 (not 1969)은 1970년에 출판되었으나 1969년 각인 연도를 가지는 저작물에서 창설되었다; *Anomalopus truncates* (Peters, 1876 ["1877"])는 *Anomalopus*가 아닌 다른 속에서 창설되었는데, 이 저작물은 1876년에 출판되었으나 각인 연도는 1877이다.

22A.3. **변경된 조합의 출판 연도.** 종군명칭의 원출판 연도가 변경된 조합의 명칭과 함께 인용될 때, 출판 연도는 원저자의 이름과 함께 동일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제51조 3).

예. *Limax ater* Linnaeus, 1758이 *Arion*속에 포함될 때 *Arion ater* (Linnaeus, 1758)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6장 명칭 및 명명활동의 유효성

제23조. 우선권 원칙(principle of priority).

23.1. 우선권 원칙의 설명. 분류군의 유효명칭(valid name)은, 이 명칭이 이 규약의 규정들이나 심의회의 결정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다른 명칭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적용된 가장 오래된 적합명칭(available name)이다. 이 때문에 우선권은 동물이명의 유효성(제23조 3), 이물동명의 상대적 우선순위(제53조~60조), 철자법의 정확성 여부(제24조, 32조), 명명활동(최초 교정자 원칙[제24조 2]하에서 주어진 명명활동이나 담명모식의 확정[제68조, 69조, 74조 1.3, 75조 4]과 같은)의 유효성에 적용된다.

23.1.1. 일부 과군명칭에 대한 예외에 대하여 제35조 5 및 40조를 보라.

23.1.2. 이물동명인 사용되지 않는 과군명칭의 예에 대하여 제55조 3.1.1을 보라.

23.1.3. 일부 속군명칭이 우선권 원칙의 적용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제20조 및 23조 7을 보라.

23.1.4. 일부 종군명칭이 우선권 원칙의 적용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제23조 7.3 및 23조 8을 보라.

23.2. **목적.** 이 규약의 목적(머리말을 보라)에 상응하여, 우선권 원칙은 안정성 증진에 이용되어야 하며, 상위동물이명이나 상위이물동명의 명칭을 도입하거나 (일부 이와 같은 예에 대하여 제23조 9를 보라)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과거 명명활동의 발굴(예전의 모식확정과 같은)에 이은 행위를 통해서, 장기간 익숙하게 통용되던 명칭을 혼란시키는 데 이용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이러한 예에 대하여 제70조 2 및 75조 6을 보라).

23.3. **동물이명관계에의 적용.** 우선권 원칙은 과군, 속군, 종군 내에서 과거에 창설된 둘 또는 그 이상의 공칭분류군들이 한 분류계급의 단일 분류군으로 이전되어 형성된 분류군은 우선권 원칙(제23조 1)과 이의 목적(제23조 2)에 따라 결정된 명칭을 유효명칭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과군명칭의 경우 필요하면 접미사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제34조).

예. 속 *Aus* 1850, 속 *Cus* 1870 및 아속 *Bus* 1800 (속 *Xus* 1768에서 옮겨 옴)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한 속의 유효명칭은 *Bus* 1800이다.

23.3.1. 과군, 속군, 또는 종군 내에서 공칭분류군 명칭의 우선권은 그 분류군의 분류계급의 상승이나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제36조, 43조, 46조), 분류계급 변경에 따른 과군명칭의 접미사의 강제적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다(제34조).

23.3.2. 다음의 경우에도 우선권 원칙이 적용된다.

23.3.2.1. 동물체 전부가 알려지기 전에 동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명칭이 붙여졌을지라도, 또는

23.3.2.2. 한 종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세대, 종형, 생활사 단계, 성에 대하여 각기 다른 공칭분류군으로 명명되었을지라도, 또는

23.3.2.3. 1931년 이전에 현생 동물의 동물 본체에 대해 창설된 명칭보다 먼저 활동치성물에 대하여 창설된 명칭일지라도(생적분류군에 대해서는 제23조 7을 보라).

23.3.3. 종 집단을 칭하기 위하여 속군명칭 뒤에 괄호 안에 삽입된 종본명이나, 아종 집단을 칭하기 위하여 종본명과 아종본명 사이에 괄호 안에 삽입된 아종본명에도 우선권 원칙은 적용된다(제6조 2). 이와 같은 삽입명칭의 우선순위는 종군에서 이 명칭이 가지는 우선순위와 같다(제11조 9.3.5).

23.3.4. 우선권 원칙은 아종하 실체에 적용된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아종하 실체가 동물명명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제1조 3.4). 만약

이러한 실체에 대하여 발표된 명칭이 나중에 한 종이나 아종의 명칭으로 창설되면(제10조 2, 45조 5, 45조 6을 보라), 이 창설의 결과로 그 명칭이 적합명칭으로 된 일자부터 우선권 원칙이 적용된다.

23.3.5. 우선권 원칙은 만약 한 분류군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한 명칭이 비적합명칭이거나 무효명칭인 것으로 밝혀지면, 포함된 동일 집단의 분류군들(예. 속 내의 아속들)의 명칭을 포함한(이 명칭들이 무효명칭이 아닌 한) 동물이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적합명칭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폐기명칭이 잠재적으로 유효한 동물이명을 가지지 않으면 신대체명칭이 창설되어야 한다(제60조 3).

예. 속 *Aus* 1850은 *Aus* 1850, *Bus* 1900 및 *Cus* 1860의 유효명칭을 가지는 아속들을 포함한다고 판단되었다. 만약 *Aus*가 비적합명칭이거나 무효명칭인 것으로 밝혀지면 이 속과 공칭모식 아속의 명칭은 *Cus* 1860이 된다; 그러나 만약 전자의 아속 *Aus* (*Aus*)가 동물이명 *Dus* 1855를 가진다면(즉 *Dus*의 모식종을 가진다면) 이 속의 명칭은 *Dus* 1855가 된다.

23.3.6. 우선권 원칙은 하위동물이명으로 취급될 때의 적합명칭에도 적용된다; 이 명칭은, 한 저자가 동물이명관계가 틀렸다고 판단할 때 또는 만약 상위동물이명이 비적합명칭이나 무효명칭인 것으로 밝혀질 때, 한 분류군의 유효명칭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하위동물이명으로 처음 발표된 명칭들에 대해서는 제11조 6을 보라).

23.3.7. 우선권 원칙에 따라 유효명칭인 적합명칭은 부적절하다거나 반복명칭(그 예를 제18조에서 보라)이라거나 또는 부정확한 철자법이라는 이유로(이러한 명칭은 유효명칭으로 존속되지만, 수정된 형태여야 한다: 제19조를 보라), 이의 명명자마저도, 폐기하지 않아야 한다.

23.4. 이물동명관계에의 적용. 우선권 원칙은 종군의 후이물동명을 포함하여 이물동명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우선권 원칙(제23조 1, 23조 2)과 이물동명관계 원칙(제52조)에 의거하여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출판된 이물동명들에 대한 이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4조를 보라.

23.4.1. 과군명칭 자체가 또는 이 과의 모식속명이 하위이물동명인 것으로 밝혀지면 과군명칭에도 우선권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제55조 및 39조를 보라.

23.5. 철자법에 대한 적용. 우선권 원칙은 부정확한 철자법이 제33조 3.1에 따라, 과군명칭의 경우에는 제29조 4나 20조 5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한, 적합명칭의 철자법에 적용된다(부정당수정의 보호에 대해서는 제33조 2.3.1을 보라).

23.6. **명명활동에 대한 적용.**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명칭이나 공칭 분류군에 대하여 취한 최초의 명명활동은 우선권 원칙에 따라 유일한 유효 명명활동이 된다: 즉, 최초 교정자 원칙(제24조 2)하에서 취한 명명활동, 모식종 확정(제68조, 69조), 속군 분류군에 공칭종을 최초로 포함시킴(제67조 2), 후모식과(제74조 1.3) 신모식의 지정(제75조 5)(과군에서의 모식은 자동적으로 확정되며 사후확정의 대상이 아니다–제63조; 그러나 1999년 이후에 출판된 명칭에 대해서는 제16조 2를 보라).

23.7. **집합군과 생적분류군에 대한 적용.** 이물동명 원칙의 적용을 제외하고(제55조 56조, 57조),

23.7.1. 명백히 집합군을 위해 창설된 명칭은 다른 속군명칭과 우선권 경합을 하지 않으며;

23.7.2. 공칭 속군 분류군을 대상으로 창설되었으나 사후에 집합군을 대상으로 사용된 명칭은, 그와 같이 사용되는 한, 다른 속군명칭과 우선권 경합을 하지 않고(제67조 14를 보라);

23.7.3. 생적분류군을 대상으로 창설된 명칭은 동물을 대상으로 창설된 명칭과 우선권 경합을 하지 않는다(흔적화석을 만들었거나 만들 수 있는 동물을 포함하여).

예. Krebs (1966)는 Kaup (1835)가 *Chirotherium*라고 명명한 족적화석을 트라이아스기 화석 파충류 *Ticinosuchus* Krebs, 1965와 결합시켰다. 이런 이유로 *Ticinosuchus*가 *Chirotherium*의 하위동물이명으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23.8. **잡종에 대하여 창설된 종군명칭에 대한 적용.** 나중에 잡종인 것으로 밝혀진 동물에 대하여 창설된 종군명칭(제17조)은 부모 종 어느 한 쪽에 대해서, 이 명칭이 부모 종의 다른 모든 적합명칭보다도 오래된 것일지라도, 유효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명칭은 이물동명관계에 가입될 수 있다. 잡종 기원의 분류군에 토대를 둔 명칭에 대해서는 제17조 2를 보라.

23.9. **우선 지위의 역전.** 우선권 원칙의 목적에 합당하도록(제23조 2), 이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23.9.1.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면 성행용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23.9.1.1. 1899년 이후 상위동물이명이나 상위이물동명이 유효명칭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23.9.1.2. 특정 분류군에 대하여 하위동물이명 또는 하위이물동명이 직전

50년 동안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최소 10명의 저자들이 출판한 최소 25개의 저작물에서 유효명칭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을 경우.

23.9.2. 제23조 9.1의 두 가지 조건들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발견한 저자는 두 명칭을 인용하고 최근의 명칭이 유효하며 이런 발표 행위가 이 규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기해야 한다; 동시에 저자는 제23조 9.1.2의 조건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제23조 9.1.1의 조건이 적용되는 바를 아는 대로 진술해야 한다. 이러한 명명활동의 출판 일자부터 신참 명칭은 고참 명칭보다 우선 지위를 가진다. 인용될 때 신참 유효명칭은 보호명칭(nomen protectum)의 자격을 갖추게 되며 고참 무효명칭은 망각명칭(momen oblitum)이 된다(용어 해설을 보라).

예. 공칭분류군 *Aus xus* Schmidt, 1940과 *Aus wus* Jones, 1800을 하나의 분류학적 종에 포함된다면 이 종의 유효명칭은 *Aus wus* Jones, 1800이다. 그러나 만약 제23조 9.1.1 및 23조 9.1.2가 적용되면 *Aus xus* Schmidt, 1940이 그 종의 유효명칭이 된다(심의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러나 만약 이 공칭분류군들이 상이한 분류학적 종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들의 명칭은 *Aus xus* Schmidt, 1940 및 *Aus wus* Jones, 1800이다. 반면, 만약 두 분류군들이 한 종의 아종으로 취급되면, 이들의 명칭은 *Aus xus xus* Schmidt, 1940과 *Aus xus wus* Jones, 1800이 되고, *Aus wus xus* Schmidt, 1940과 *Aus wus wus* Jones, 1800이 되지는 않는다.

권고 23A. 금지(suppression)가 요망될 때. 저자의 견해로서, 관련된 두 가지 명칭의 상대적 우선순위의 변경보다는 오래된 명칭의 금지가 요망되면, 제23조 9.2에 합당한 행위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 저자는 이 사례를 적절한 권고 사항을 첨부하여 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23.9.3. 만약 제23조 9.1의 조건들이 성립되지는 않으나 저자가 볼 때 고참 동물이명이나 고참 이물동명의 사용이 안정성이나 보편성을 위협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므로 신참 동물이명이나 신참 이물동명의 사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면, 이 저자는 이 사안을 심의회에 통보하여 전권으로 제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제81조). 이 사안이 심의되는 도중에는 하위 명칭의 사용이 유지되어야 한다(제82조).

23.9.4. 만약 이 사례가 모식속명들의 동일함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유사성으로 인한 과군명칭의 한 가지 이물동명관계라면 제55조 3을 보라.

23.9.5. 만약 어떤 저자가, 사용되고 있는 종군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종군명칭의 하나의 하위원이물동명(junior primary homonym)이지만, 이 명칭들이 1899년 이후 동일 속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분류군들에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 저자는 하위이물동명을 자동적으로 교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안을 심의회에 통보하여 전권으로 제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하

며, 제정하기 이전에는 두 명칭의 성행용법이 유지되어야 한다(제82조).

23.9.6. 제23조 9.1에 역행하여 의도적으로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물이명관계에서 명칭을 언급하거나, 또는 출판물 요약문에 명칭을 포함시키거나, 용어집이나 색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23조 9.1.1 및 23조 9.1.2의 명칭 사용법 결정에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23.10. **우선 지위의 잘못된 역전.** 만약 제23조 9.2에 맞추어 취해진 행위가 나중에 제23조 9.1.1 및 23조 9.1.2에 맞지 않는, 실수인 것으로 판명되면 이 사례는 심의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심의회가 제정하기 전에는 성행용법이 유지되어야 한다(제82조)(즉, 이러한 착오적 행위를 발견한 저자는 고참 동물이명이나 고참 이물동명을 자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3.11. **요망되는 엄격한 우선권의 적용.** 만약 저자가 제23조 9.1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 성행용법 중인 명칭을 이의 고참 동물이명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이 저자는 심의회가 전권으로 제정하도록 신청해야 한다(제81조).

23.12. **이전 판본의 제23b조 하에서 폐기된 명칭.** 1961년 11월 6일부터 1973년 1월 1일 사이에 당시의 규약 판본 제23b조를 명백히 적용한 저자에 의하여 망각명칭(용어 해설을 보라)이라는 이유로 폐기된(rejected) 명칭은, 심의회가 고참이지만 폐기된 명칭에게 우선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정이 없는 한, 성행용법의 하위동물이명보다 앞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23.12.1. 이 조에서 "폐기(rejected)"라는 용어는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한 명칭에 대한 무시를 폐기로 해석하면 안 된다(당시의 23b조가 언급되었을지라도). 폐기명칭은 인용되어야 하며 이 명칭 대신에 사용되는 하위동물이명을 유효명칭으로 해야 한다.

23.12.2. 이전의 규약 판본 제23b조 하에서 폐기된 명칭은, 무효성인 이유가 없고, 만약 다른 명칭의 동물이명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거나 이의 동물이명들이 이 규약의 제 규정상 무효명칭이라면, 유효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4조. 동시에 출판된 명칭들, 철자법 또는 명명활동 사이의 우선순위.

24.1. **명칭의 우선순위의 자동적 결정.** 이물동명들이나 동물이명들이 동시에 창설되었으나 과군, 속군 또는 종군에서 상이한 분류계급이라면, 상위 분류계급의 명칭이 우선순위를 가진다(제55조 5, 56조 3, 57조 7). 분류군이 동시에 확정되었으나 모식확정이 다를 때의 우선순위와 이들의 공칭모식 하위 분류군에 대해

서는 61조 2.1을 보라.

예. 동시에 창설된 종군명칭 *vulgaris* Schmidt 및 *sinensis* Chang은 동물이명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sinensis*는 종을 대상으로 제안된 명칭이고 *vulgaris*는 아종을 대상으로 제안 명칭이므로 전자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24.2. 최초 교정자의 결정.

24.2.1. 최초 교정자 원칙에 대한 설명. 명칭들이나 명명활동들 사이의 우선순위가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없을 때는 저작물을 통해 이 명칭들이나 명명활동들을 인용하는 최초 저자의 선택 행위에 의해 우선순위가 확정된다; 이 저자를 "최초 교정자(First Reviser)"라고 한다.

24.2.2. 최초 교정자에 의한 명칭 및 명명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만약, 서로 다르든 동일하든, 동일한 모식에 토대를 두었든 상이한 모식에 토대를 두었든, 둘 이상의 명칭들 또는 명명활동들이 동일한 또는 상이한 저작물에 동일 일자에 출판되면, 이 명칭들이나 명명활동들의 우선순위는 제24조 1이 적용되지 않는 한 최초 교정자에 의해 확정된다.

예. 명칭 *Strix scandiaca* 및 *S. nyctea* (조류)는 모두 Linnaeus (1758)가 발표했는데, 주관동물이명으로 판단된다. Lönnberg (1931)는 최초 교정자로서 *Strix scandiaca*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그러므로 이 종(눈올빼미)의 유효명칭은 *Nyctea nycten* (Linnaeus, 1758)이 아니라 *N. scandiaca* (Linnaeus, 1758)이다.

24.2.3. 정확한 원철자법의 선택. 만약 원저작물에서 하나의 명칭이 한 가지보다 많은 방식으로 철자되어 있으면, 이 둘을 함께 인용하면서 그중 한 가지 철자법을 정확한 것으로 선택하는 최초의 저자가 최초 교정자가 된다. 선택된 철자법은(제32조 4 또는 32조 5 하에서 부정확하지 않다면) 이로부터 정확한 원철자법으로 확정된다; 그 외의 다른 철자법은 부정확한 철자법이다(그러므로 부적합명칭이다, 제32조 4).

24.2.4. 원저자가 철자법의 최초 교정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 동일 명칭의 두 가지 상이한 원철자법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들 중의 한 사람이 사후에 저작물에서(저자나 출판자의 교정표를 포함하여) 두 철자법 중 하나를 유효명칭으로 사용하고, 이에 앞서 최초 교정자에 의하여 그중 어느 것도 정확한 철자법으로 선택된 적이 없다면, 그 저자는, 두 가지 철자법을 인용하든 안 하든, 최초 교정자로 간주된다(유효명칭으로 사용된 것이 정확한 원철자법이 된다).

24.2.5. 최초 교정자의 불필요한 행위. 명칭, 철자법, 또는 명명활동의 우선순위

가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경우에는 최초 교정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권고 24A. 최초 교정자의 행위. 이 규약의 의미상 최초 교정자로서의 활동에서 저자는 명명법상 최상의 안정성과 보편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명칭, 철자법, 명명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권고 24B. 동일한 명칭들 중에서 선택하는 최초 교정자들은 최근의 저작권 속성을 따라야 한다. 동일하거나 상이한 저작물에 동일 일자에 출판된 동일한 명칭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최초 교정자로 작용하는 동물학자는 관련 저자들의 속성이 알려졌을 경우 이 속성을 따를 것을 충고한다 (제50조 6).

제7장 명칭의 형성과 처리

제25조. 명칭의 형성과 처리. 학명은 제11조 및 제26조~34조의 관련 규정들에 맞추어 형성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또한 부록 B, 일반 권고를 보라).

권고 25A. 약자. 출판 저작물에 학명을 최초로 기록할 때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활자화되어야 한다. 만약, 이후에 이명식 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의 한 부분을 약자로 표기할 경우, 그 약자는 모호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의 완전한 단어로 생각하지 않도록 점을 찍어야 한다.

예. 모기 일종 *Aedes aegypti*를 처음 표기할 때 그와 같이 활자화되어야 하며, 이후 *A. aegypti* (*Aedes aegypti aegypti* 대신 *A. a. aegypti*)와 같이 적을 수 있으나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예. *Anopheles*와 함께 적을 때) *Aedes aegypti*를 *Ae. aegypti*로 적을 수 있다(*Anopheles* 속의 일종은 *An. maculipennis*로 적어 모호함을 피한다).

권고 25B. 어원. 신학명을 출판할 때 명명자는 그 어원을 기술해야 한다.

권고 25C. 신명칭 만들 때 명명자의 책임. 명명자는 적절한 주의와 숙고를 기울여서 사후의 사용자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적절하고, 간결하고, 듣기 좋고, 기억하기 쉬우며, 악의적이지 않게 신학명을 만들어야 한다.

제26조. 학명에서의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전제 조건. 만약 학명이나 복합 명칭의 마지막 요소의 철자가(제31조 1) 그리스어나 라틴어 단어와 동일하다면 그 명칭을 유효명칭으로 만들 때 저자가 달리 언급하지 않은 한 그 명칭이나 요소는 해당 언어의 단어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27조. 발음부호와 기타 기호. 발음부호나 기타 기호(아포스트로피 등), 글자 a와 e의 연자(æ), o와 e의 연자(œ)는 학명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이픈은 제

32조 5.2.4.3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제28조. 첫 글자. 원래 출판될 때의 표기 방법에 관계없이, 과군 또는 속군의 명칭, 또는 과군 이상의 분류군의 명칭은, 항상 첫 자가 대문자여야 하며, 종군명칭은 항상 첫 글자가 소문자여야 한다.

권고 28A. 첫 단어.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종군명칭은 문장에서 첫 단어로 쓰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과군명칭.

29.1. **과군명칭의 형성.** 과군명칭은 모식속명의 어간(제29조 3) 또는 모식속명 전체에다(제29조 6) 제29조 2에 규정된 접미사를 붙여서 만든다.

29.2. **과군명칭의 접미사.** 접미사 -OIDEA는 상과명에 사용되고, -IDAE는 과명에, -INAE는 아과명에, -INI는 족명에, -INA는 아족명에 사용된다. 이 접미사들은 기타의 과군 분류계급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과군 내 기타 분류계급의 분류군의 접미사는 이 규약에서 다루지 않는다.

29.2.1. 과군명칭의 접미사와 동일한 어미를 가진 속군 및 종군 내 명칭은 이 규약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예. 과군 이하 분류계급의 다음 분류군들의 명칭은 과군명칭들의 어미와 동일하지만, 이 때문에 이 규약의 통제를 받지는 않는다: 속 Ranoidea (양서강), *Collocalia terraereginae* (조류), *Concinnia martini* (파충류) 및 *Hyla mystacina* (양서류).

29.3. **모식속명의 어간 결정.** 과군명칭의 어간은 이의 모식속명에 근거를 두며(제63조)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9.3.1. 만약 속명이 그리스어나 라틴어이거나, 이들 언어로 끝나거나, 이들 언어의 접미사로 끝나면, 이 규약의 목적상 어간은 소유격 단수에 해당하는 격 어미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이다.

예. *Ciccinella* (소유격 Ciccinellae, 어간 Ciccinell-)은 과명 CICCINELLIDAE의 토대이다. 이와 유사하게, *Culex* (소유격 Culicis, 어간 Culic-)는 과명 CULICIDAE의 토대이며, Reduvius (소유격 Reduvii, 어간 Reduvi-)는 과명 REDUVIIDAE의 토대이고, Archaeopteryx (소유격 Archaeopterygis, 어간 Archaeopteryg-)는 과명 ARCHAEOPTERYGIDAE의 토대이다.

29.3.1.1. 만약 이와 같이 형성된 어간이 -id로 끝나면 이 문자들은 과군 접미사를 붙이기 전에 생략해도 된다. 그러나 만약 생략하지 않은 형태

가 성행용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원철자법이든 아니든 그 철자는 유지되어야 한다.

예. *Haliotis*의 어간이 Haliotid-이지만, 과군명칭 HALIOTIDAE 및 HALIOTOIDEA는 HALIOTIDIDAE 및 HALIOTIDOIDEA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는 후자의 철자법들이 성행용법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29.3.2. 만약 속명이 그리스어 단어이거나 어미 변화로 라틴어화한 그리스어 단어로 끝나면 제29조 3.1에서 결정되는 것과 같이 라틴어화된 형태에 맞춘 것이 어미이다.

예. 속명 *Leptocerus*에서, 이의 뒷부분이 그리스어 단어 keras가 라틴어화된 것인 바, 과군명칭을 만들기 위한 어간은 Leptocer-이며, 라틴어화되기 전의 어간 Leptocerat-는 아니다.

29.3.3. 만약 속명이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 단어이거나 이들 언어의 단어로 끝난다면, 또는 문자의 임의 조합이라면, 이 규약의 목적상 어간은 신과군 분류군을 창설한 저자가 채택한 것이 어간으로서, 속명 전체이거나(제29조 6), 어미가 생략된 속명 전체이거나, 또는 어감이 좋은 과군명칭을 만들기 위해 속명 전체에 적절한 문자를 추가한 것이다.

29.4. **원래 형성된 어간의 용인.** 만약 1999년 이후 새로운 과군명칭이 그리스어나 라틴어 단어이거나, 이들 언어의 단어로 끝나거나, 또는 이들 언어의 접미사로 끝나는 속명에 토대를 둔 것이라면, 그러나 이의 기원이 제29조 3.1이나 29조 3.2의 문법적 처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의 원철자법은 정확한 원철자법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9.4.1. 정확하게 형성된 접미사를 가져야 하고(제29조 2),

29.4.2. 이의 어간이 마치 임의적 문자 조합인 것처럼 모식속명으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제29조 3.3).

예. 만약 1999년 이후에 한 저자가 속명 *Prorex* (소유격: Proregis)를 토대로 과명 PROREXIDAE를 제안한다면, 제29조 3.1에 의거 비록 철자 PROREGIDAE가 적절하지만, 그 제안된 철자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29.5. **현행 철자법의 유지.** 만약 과군명칭의 철자가 제29조 3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성행용법의 것이라면, 이것이 원철자법이든 아니든, 이의 모식속명에 둔 토대가 제29조 3.1과 29조 3.2의 문법적 처리에 합당하든 아니든, 이 철자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29.6. **과군명칭에서의 이물동명관계의 회피.** 새로운 과군명칭을 창설하고자 하는 저

자는 모식속명에서 적절한 어간을 취하여 이전에 창설된 명칭과의 이물동명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기존 과군명칭들과의 이물동명관계의 배제에 대해서는 제55조 3.1을 보라).

권고 29A. 과군명칭들 사이의 이물동명관계를 피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속명 전체를 어간으로 사용하기. 모식속의 어간의 동일함 때문에 신과군명칭과 전에 창설된 과군명칭 사이에 이물동명관계가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서(제29조 3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모식속명 전체를 신과군 분류군의 어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 모식속 *Mirum*을 근거로 신과명을 제안하는 저자는 Mirum-을 어간으로 취하여 과명 MIRUMIDAE를 만들어서 MIRIDAE Hahn, 1833 (노린재목, 모식속 *Miris* Fabricius, 1794)과의 이물동명관계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심의회는 전문 의견 898 (1970)에 있는 유사한 과정을 따랐는데, 이때 Mira Schellenberg, 1803 (벌목)의 어간을 Mira-로 결정함으로써 과군명칭의 철자법 MIRINI Ashmead, 1900을 MIRAINI로 개정하고 MIRIDAE Hahn과의 이물동명관계를 제거했다).

제30조. 속군명칭의 성. 속군명칭의 성은 이 조의 규정들에 의해 결정된다.

30.1. 라틴어나 그리스 단어로부터 형성된 명칭의 성. 제30조 1.4에 적시한 예외들을 조건으로,

30.1.1. 라틴어이거나 라틴어 단어로 끝나는 속군명칭은 표준 라틴어 사전에서 그 단어에 부여된 성을 취한다; 만약 이 단어가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들로부터 형성된 복합어일 경우, 성은 마지막 구성요소에 의해 주어진다(명사의 경우, 그 명사의 성; 라틴어 접미사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인 경우, 성은 그 구성요소에 맞춘다).

예. *Felis* 및 *Tuba*는 여성; *Salmo*, *Passer*, *Ursus* 및 *Turdus*는 남성; *Argonauta*는 뒤쪽의 남성 명사 *nauta* (a sailor)를 따라서 남성; *Lithodomus*는 뒤쪽의 여성 명사 *domus* (a home)를 따라서 여성; *Anser* (a goose)는 어미가 그와 같으므로 남성; *Anseranas*는 두 개의 단어로 된 복합 명칭으로서 *Anser*가 남성이지만 마지막 명사 *anas* (a duck)가 여성이므로 여성; *Anserina* (*Anser*에 접미사 -ina가 붙음)는 여성; *Oculina*는 여성(라틴어 남성 명사 oculus와 여성형 접미사 -ina로부터 형성됨); *Orca* (orca에서 나옴, = a large-bellied pot)는 여성; 여기에 접미사를 붙여 만들어진 명칭들 중 *Orcaella*는 여성, 그리고 *Orcinus*는 남성.

30.1.2. 다른 변화 없이 라틴어로 자역된 그리스어 단어이거나 그리스어 단어로 끝나는 속군명칭은 표준 그리스어 사전에서 그 단어에 주어진 성을 취한다;

예. 명칭 전체 또는 일부가 그리스어 명사에서 변화 없이 라틴어로 자역된 경우: 어미가 *-ornis*

(ornis)인 *Ichthyornis*는 남성; *Lepas* (lepas)는 여성; *Diadema* (diadema)는 중성; *-caris* (caris), *-gaster* (gaster), *-lepis* (lepis), 또는 *-opsis* (opsis)로 끝나는 명칭은 여성; *-ceras* (keras), *-nema* (nama), *-soma* (soma), *-stigma* (stigma), 또는 *-stoma* (stoma)로 끝나는 명칭은 중성이다.

30.1.3. 어미 변화를 거쳐 라틴어화되었거나, 라틴어를 가지거나 또는 라틴어화한 접미사를 가지는 속군명칭은 정상적으로 변화된 어미 또는 라틴어 접미사에 맞는 성을 취한다.

예. 그리스어 어미 -os (남성 또는 여성), -e (여성), -a (중성), 또는 -on (중성)으로부터 라틴어화되어 라틴어 성의 어미 *-us*를 가지는 속군명칭은 남성이다: 예. *-cephalus* (kephale), *-cheilus* 및 *-chilus* (cheilos), *-crinus* (krinon), *-echinus* (echinos), *-gnathus* (gnathos), *-rhamphus* (rhamphos), *-rhynchus* (rhynchos), *-somus* (soma), *-stethus* (stethos), *-stomus* (stoma). 그리스어 어미 -on으로부터 라틴어화하여 라틴어 성의 어미 *-a*로 끝나는 명칭은 여성, 예. *-metopa* (metopon). 그리스어 -keras (중성)에서 생긴 명칭은 어미가 *-cerus* (남성) 또는 *-cera* (여성), 그러나 단순한 그리스어의 자역으로 어미가 그대로 *-ceras*인 명칭은 중성; *Phorella* (여성)는 그리스어 단어 phor (강도, 남성)와 라틴어 지소접미사 *-ella* (여성)에서 유래; *Scatella* (여성)은 skatos (중성)와 라틴어 접미사 *-ella* (여성)에서 기원; *Doridunculus* (남성)은 그리스어 Doris (바다의 여신 도리스, 여성)와 라틴어 접미사 *-unculus* (남성)에서 기원.

30.1.4. 아래의 예외가 적용된다:

30.1.4.1. 만약 저자가 명칭을 창설할 때 그 명칭이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기원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고 기술하면 (제26조), 그 명칭은 임의적 문자 조합인 것으로 간주되어 성이 결정된다 (제30조 2.2).

30.1.4.2. 통성 또는 가변성 (남성 또는 여성)이거나 그와 같은 단어로 끝나는 속군명칭은, 저자가 그 명칭을 창설할 때 여성이라고 적시하거나 형용사형 종군명칭과 조합하여 여성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남성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31조 2).

예. *Bos*는 통성 (황소 또는 암소를 뜻함); bos와 bos로 끝나는 복합 명칭 (*Ovibos*와 같은)은 남성으로 취급된다. *-cola* (라틴어에서 남성이거나 통성)로 끝나는 라틴어 복합명사: *Agricola* ("야외 경작자", 라틴어 남성)는 남성, *Sylvicola* ("숲 속 거주자") 및 *Monticola* ("고지대 거주자")는 남성으로 취급됨. *Petricola* ("암석지대 거주자", 라틴어 통성)는 원래 종본명 *costata*, *striata*, *sulcata*와 조합되어 여성 취급을 받았으므로 여성이다.

30.1.4.3. *-ops*로 끝나는 복합 속군명칭은 이의 기원이나 저자의 언급을 불문하고 남성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0.1.4.4. 접미사 *-ites*, *-oides*, *-ides*, *-odes*, *-istes*로 끝나는 복합 속군명칭은,

저자가 명칭을 창설할 때 다른 성이라거나 그렇게 취급한다고 기술하거나 다른 성의 형용사형 종군명칭과 조합하여 다른 성으로 취급하지 않은 한, 남성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예. *Hoplitoides* 및 *Harpides*는 남성이지만 *Aleptinoides* ("*Aleptina*와 같은"의 뜻)는 원저자가 여성이라고 적시했으므로 여성으로 취급된다.

30.1.4.5. 어미가 변경된 라틴어 단어이거나 라틴어 단어로 끝나는 속군명칭은 새로운 어미에 맞는 성을 취한다; 만약 이 어미가 특정 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명칭은 남성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예. *Dendrocygna*는 복합 명칭으로서 비록 이의 둘째 단어가 남성형인 cygnus (백조)에서 형성되었지만 여성이다.

30.2. 라틴어나 그리스어 외의 단어에서 기원한 명칭의 성.

30.2.1. 만약 명칭이 현대 유럽 언어의 성을 가진 명사를 정확히 복제한 것이라면 (비 라틴어 알파벳에서 라틴어 알파벳으로의 자역할 필요 없이), 이 명칭은 그 명사의 성을 취한다.

예. *Pfrille*은 독일어 여성 명사 Pfrille (어류 일종)에서 온 것으로서, 여성이다.

30.2.2. 제30조 2.1이 적용되지 않으면, 라틴어나 그리스어 단어에서 기원하지 않은 명칭은 저자가 명확히 지시한 성을 따른다.

30.2.3. 만약 성이 지시되지 않았으면, 원래 포함된 공칭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용사형 종군명칭의 조합에서 나타난 성을 취한다(제67조 2).

30.2.4. 만약 성이 지시되거나 표시되지도 않았다면 그 명칭은 남성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만약 명칭이 *-a*로 끝나면 여성이고, *-ium*, *-on*, 또는 *-u*로 끝나면 중성이다.

예. *Jackmahoneya* (Jack Mahoney에서 기원)는 저자가 남성이라고 지시했으므로 남성이다. *Oldfieldthomasia* (Oldfield Thomas에서 기원) 및 *Dacelo* (*Alcedo*의 전자)는 저자들이 여성 취급했으므로 여성이다. *Abudefduf* (아랍어에서 기원), *Gekko* (말레이어에서 기원) 및 *Milax* (*Limax*의 전자)는 저자들이 성을 특정화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남성으로 취급된다. *Buchia* (von Buch에서 기원), *Cummingella* (Cumming에서 기원), *Zyzza* (임의적 문자 조합임) 및 *Solubea* (전자임)는 모두 여성으로 취급되며, 전자 *Daption*은 중성으로 취급된다.

권고 30A. 성과 기원은 명료히 밝혀야 한다. 저자는 새로운 속군명칭을 창설할 때 이의 성과 기원을 명백히 기록해야 한다.

권고 30B. 성은 자명해야 한다. 새로운 속군명칭의 성은 자명해야 하므로, 저자는 라틴어나 그리스어

가 아닌 단어에 근거하여 신명칭을 만들 때 이의 어미에 합당한 성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제31조. 종군명칭.

31.1. 인명에서 유래한 종군명칭. 한 개인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형성된 종군명칭은 소유격 명사이거나 동격 명사이거나(주격의), 형용사 또는 분사일 수 있다(제11조 9.1).

31.1.1. 종군명칭은, 만약 라틴어로 된 인명에서 유래했거나 현대인의 라틴어화된 인명에서 유래했으면, 라틴어 문법 규칙과 일치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예. Margaret가 Margarita 또는 Margaretha로 라틴어화된다면 소유격은 *margaritae* 또는 *margarethae*가 된다. 이와 유사하게 Nicolaus Poda는, 남자의 이름이지만, 만약 라틴어 이름으로 된다면 소유격은 *podae*가 된다; Victor 및 Hercules의 라틴어식 소유격은 *victoris* 및 *herculis*이다. 로마인 이름 Plinius는 영어화되면 Pliny이지만 라틴어식 소유격은 *plinii*이다. Fabricius 및 Sartorius의 라틴어식 소유격은 각각 *fabricii* 및 *sartorii*로 되지만 현대인 명칭으로 처리되면 소유격이 *fabriciusi* 및 *sartoriusi*로 된다; Cuvier가 라틴어화되면 Cuvierius이고 소유격은 *cuvierii*이다.

31.1.2. 종군명칭은, 현대인 이름에서 직접 유래한 소유격 명사라면(제11조 9.1.3을 보라), 이름의 어간에 한 남자일 경우 *-i*를, 여러 남자들이거나 또는 남자(들)와 여자(들)일 경우 *-orum*을, 한 여자일 경우 *-ae*를, 여러 여자들일 경우 *-arum*을 붙여서 형성되어야 한다.

예. 이 규정하에서 종군명칭으로서 Poda에서 온 *podai*, Victor에서 온 *victori*, Cuvier에서 온 *cuvieri*는 용인된다. 명칭 *puckridgei* 및 *puckridgi*는 Puckridge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31.1.3. 제31조 1.1 및 31조 1.2 하에서 형성된 명칭의 원철자법은 그 철자법이 부정확하지 않다면(제32조 3, 32조 4) 보존되어야 한다(이러한 종군명칭의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33조 3 및 33조 4를 보라).

예. 종군명칭 *cuvierii* 및 *cuvieri*는 각각 제31조 1.1 및 31조 1.2 하에서 허용되며, 만약 적합명칭이라면 명확하고 정확한 원철자법으로서 보존된다(동일한 속명과 조합될 때 이러한 명칭들 사이의 이물동명관계에 대해서는 제58조 14를 보라).

권고 31A. 동격 명사인 인명의 회피. 인명을 토대로 새로운 종군명칭을 창설하는 명명자는 종군명칭이 속명의 명명자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동격 명사가 아니라 소유격으로 명칭을 만드는 것이 좋다.

예. Gould (1841)는 속 *Dasyurus* Geoffroy, 1796 안에 종본명 *geoffroii*를 창설하였다. 동격 명사로서 *geoffroy*를 제안했기 때문에, *Dasyurus geoffroy*의 조합은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종본명이 인명과 동일한 *Picumnus castelnau*나 *Acestrura mulsant*와 같은 명칭 역시 혼란스

럽다(종본명의 첫 자가 대문자로 잘못 기록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다–제28조).

31.2. 성의 일치. 종군명칭은, 만약 주격 단수의 라틴어나 라틴어화한 형용사 또는 분사이거나 그와 같이 끝난다면, 항상 이와 조합되는 속명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

31.2.1. 동격의 단순명사 또는 복합명사(또는 명사구)인 종군명칭은 이와 조합되는 속명과 성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성의 어미 변화 없이, 원철자법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34조 2.1을 보라).

예. *Simia diana* (*Simia* 및 *diana*는 모두 여성임)에서 종본명 *diana*는 *Cercopithecus diana* (*Cercopithecus*는 남성임)에서 변하지 않음; *Melanoplus femurrubrum* (*Melanoplus*는 남성; *rubrum*은 *femur*와 함께 중성임)와 *Desmomotopa m-nigrum* (*Desmomotopa*는 여성; *nigrum*은 *m*과 일치하여 이 알파벳의 글자들이 중성이므로 중성).

31.2.2. 한 종군명칭의 저자가 명칭을 명사나 형용사로 취급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을 때 또 두 가지 모두로 취급될 수 있거나 용법에 대한 근거가 없을 때는 이의 속명과 동격인 명사로 취급되어야 한다(원철자법은 성의 어미 변화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34조 2.1을 보라).

예. *-fer* 및 *-ger*로 끝나는 종군명칭은 동격 명사이거나 남성 형용사일 수 있다. *Cephenemyia phobifer* (Clark)는 흔히 *C. phobifera*로 사용되나 원래의 이명식 명칭은 *Oestrus phobifer*이다; *Oestrus*는 남성이므로, 이 이명식 명칭에서 *phobifer*는 남성 형용사이거나 동격 명사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명칭은 동격 명사로 취급되어야 하고, 여성 속명인 *Cephenemyia*와 조합될 때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31.2.3. 만약 한 종군명칭(또는 복합 종군명칭의 경우 이의 마지막 요소)이 라틴어도 아니고 라틴어화한 단어도 아니면(제11조 2, 26조), 이 명칭은 이 규약의 목적상 불변화사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와 조합되는 속명과 성이 일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어미 변화 없이 원래의 철자법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34조 2.1을 보라).

예. *melas*, *melaina*, *melan*; *polychloros*, *polychloron*; *celebrachys*; *nakpo* (검정을 뜻하는 티베트어에서 기원) 등의 종군명칭은 한 성의 속명과의 조합에서 다른 성의 속으로 이전될 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melaena*는 라틴어화된 형용사로서(그리스어 melaina에서 유래), 다른 성의 속으로 이전되면 적절한 라틴어 성의 어미를 가지도록 변화되어야 한다(*-us*는 남성, *-um*은 중성).

제32조. 원철자법.

32.1. 정의. "원철자법(original spelling)"은 명칭이 창설된 저작물에서 사용된 철자

법이다.

32.2. **정확한 원철자법.** 한 명칭의 원철자법은 제32조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명백히 부정확한 것이 아닌 한 "정확한 원래의 철자법"이다.

32.2.1. 만약 명칭이 창설된 저작물에서 그 철자법이 한 가지 이상이라면, 이 규약에서 달리 제시한 바를 제외하면, 정확한 원철자법은 최초 교정자(또는 해당될 경우, 최초 교정자 역할을 하는 원저자–제24조 2.4)가 선택한 철자법이다(제24조 2.3).

32.2.2. 정당수정(제33조 2.2)은 정확한 원철자법으로 취급된다(그러므로 원출판의 저작권과 출판 일자를 취한다–제19조 2).

32.3. **정확한 원철자법의 유지.** 한 명칭의 정확한 원철자법은 제34조 하에서 접미사나 성의 어미의 강제적 변경을 제외하고는 변경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수정과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32조 5, 33조 2, 33조 3, 33조 4를 보라).

32.4. **부정확한 원철자법의 지위.** 원철자법은 제32조 5에서 요구한 것처럼 수정되어야 한다면 "부정확한 원철자법"이다. 부정확한 원철자법은 별도의 적합성은 없으며, 이물동명관계에 가입하거나 대체명칭으로 사용되지도 못한다.

32.5. **수정되어야 하는 철자법(부정확한 원철자법).**

32.5.1. 외적 요인 없이 원출판 자체에 오기나 식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부주의성 착오가 있으면 이는 수정되어야 한다. 부정확한 자역이나 라틴어화 또는 부적절한 연결모음의 사용은 부주의성 착오로 취급되지 않는다.

32.5.1.1. 원저작물과 동시에 간행된, 출판자 또는 저자의 정오표에 있거나 저작물에 삽입되어 배포되는 오류 사항으로서의(또는 학술지 안에, 또는 부분으로서 간행된 저작물에서 동일 책의 부분들 중 하나로서) 명칭의 철자법 수정은 부주의한 오류의 명백한 증거로 수용되어야 한다.

예. 새로운 종군명칭을 제안할 때 만약 저자가 Linnaeus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다고 언급하면서 *ninnaei*라고 발표했다면, 이는 *linnaei*로 수정되어야 할 부정확한 원철자법이다. *Enygmophyllum*은(*Enigmatophyllum*이어야 하는데) 부정확하게 자역되거나 라틴어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확한 원철자법이 되지는 않는다.

32.5.2. 발음부호나 기타 기호, 연결선, 아포스트로피, 하이픈을 가진 채 출판된 명칭이나 격리된 단어들이면서 그중 하나가 약자인 채 출판된 종군명칭은 수정되어야 한다.

32.5.2.1. 발음부호나 다른 기호의 경우 관련된 기호는 삭제되는데, 예외적으로 1985년 이전에 독일어 단어를 근간으로 출판된 명칭에서 모음에서 움라우트를 제거하는 대신 그 모음 뒤에 e를 삽입해야 한다(명칭이 독일어 단어에 토대를 두었다는 의심이 들면 그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예. *nuñezi*는 *nunezi*로, *mjøbergi*는 *mjobergi*, *Mülleri* (1985년 이전에 출판된)는 *muelleri*로 수정된다.

32.5.2.2.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만 분리된 단어들로 출판된 복합 종군명칭에서(제11조 9.5) 각 구성 단어들은 하이픈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예. *bonae spei*는 *bonaespei*로 되고 *terrae novae*는 *terraenovae*로 된다.

32.5.2.3. 아포스트로피나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들로서 출판된 복합 종군명칭에서 기호를 제거하고 단어들이 연결되어야 한다(그러나 제32조 5.2.4.3을 보라).

예. *d'urvillei*는 *durvillei*로, *striato-radiatus*는 *striatoradiatus*로 된다.

32.5.2.4. 복합 종군명칭에서 첫 부분이 라틴어 글자의 약자로 되어 있거나, 둘째 부분을 한정하는 라틴어 글자(들)이라면, 구두점이나 하이픈으로 분리되어 있든 아니든,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

32.5.2.4.1. 만약 분리된 부분들 중 하나가 지명이나 saint (성자) 이름의 약자라면, 이는 완전히 표기되고 기호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예. *s. johannis*, *s-johannis*, *st. johannis*, 및 *sti johannis*는 *sanctijohannis*로 되고; *s. catharinae* 및 이의 변형은 *sanctaecatharinae*로 되며; *n. hollandiae*는 *novaehollandiae*로 수정된다.

32.5.2.4.2. 만약 약자가 종군명칭에서 명명된 사람의 직함, 직위, 계급 또는 서훈을 나타내면, 이 약자는 제거되어야 한다.

예. Roverendissimus Pater (최고로 존경스러운 신부) Poda에게 헌정된 종본명은 *podae*가 된다.

32.5.2.4.3. 만약 첫째 요소가 분류군의 한 가지 형질을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된 라틴어 글자(들)라면, 이 글자(들)는 유지되고 그 명칭의 나머지 부분과 하이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 *Polygonia c-album*에서 *c-album*은 나비의 날개에 C자와 비슷한 무늬가 있어서 그와 같이 명명되었다.

32.5.2.4.4. 만약 첫째 요소가 위의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없는 라

틴어 글자(들)라면, 구두점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고 구성요소들을 연결해야 한다.

예. *j-beameri*는 Jack Beamer에게 헌정된 종본명인데, *jbeameri*로 된다.

32.5.2.5. 첫 자가 대문자인 채 최초로 출판된 종군명칭에서 첫 자는 소문자로 교체되어야 한다; 첫 자가 소문자인 채 최초로 출판된 과군이나 속군의 명칭 또는 과군 이상의 분류군 명칭에서 첫 자는 대문자로 교체되어야 한다.

32.5.2.6. 복합 종군명칭에서 첫째 부분이 숫자를 나타내는 것(숫자, 수형용사 또는 수부사)이라면, 수는 라틴어 단어로서 완전하게 표기되고 기호 없이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어야 한다.

예. *10-linenta*는 *decemlineata*로 된다.

32.5.2.7. 라틴어 원문으로 처음 발표되고 라틴어 원문의 문법적 요구 때문에 주격 단수가 아닌 방식으로 표기된 속군명칭이나 종군명칭의 경우, 속군명칭은 주격 단수로 수정되어야 하며 종군명칭은 필요할 경우 수정되어야 한다.

예. 제11조 8.1 및 11조 9.2에서 각각 제시된, "*Diplotaxae*"가 *Diplotaxa*로, "*Pavidam*"이 *pavida* (*Musca pavida*)로 수정된 예를 보라.

32.5.3. 과군명칭이 부정확한 원철자법으로 되어 있을 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되어야 한다.

32.5.3.1. 부정확하게 형성된 접미사를 가질 때(제29조 2), 또는

32.5.3.2. 속명의 부정당수정으로부터 형성되었을 때(부정당수정이 치환명칭이 되지 않았다면), 또는

32.5.3.3. 속명의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으로부터 형성되었을 때(제35조 4.1), 또는

32.5.3.4. 속군명칭에서 최초 교정자가 선택하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원철자법 중 하나로부터 형성되었을 때(제24조 2.3).

제33조. 사후철자법(subsequent spellings).

33.1. **사후철자법의 종류.** 사후철자법이 원철자법(제32조 1)과 다르다면 수정이거

나(제33조 2),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이거나(제33조 3), 강제적 변경(mandatory change, 제34조)이다.

33.2. 수정(emendation). 한 명칭의 강제적 변경이 아닌 원철자법의 명백한 의도적 변경은, 제33조 4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면, "수정"이다.

33.2.1. 한 명칭의 원철자법의 변경은 저작물 자체나 저자의(또는 출판자의) 교정표에서 그 의도가 명시되어 있거나, 원철자법과 변경된 철자법이 모두 인용되면서 원철자법 대신 변경된 철자법이 채택되었거나, 동일 저작물에서 두 개 이상의 명칭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때로서, "명백히 의도적인" 것만으로 국한해야 한다.

33.2.2. 제32조 5에 합당한 부정확한 원철자법의 수정은 "정당수정"(justified emendation)이며, 이와 같이 수정된 명칭은 원철자법의 저작권과 출판 일자가 유지된다(제19조 2).

33.2.3. 그 외의 다른 수정은 "부정당수정"이다; 이와 같이 수정된 명칭은 적합명칭이며, 자체의 명명자와 출판 일자를 가지며 이의 원철자법 상태에서 하위객관동물이명이다; 이는 이물동명관계로 가입되며 대체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33.2.3.1. 부정당수정이 성행용법의 것이고 원저자와 원출판 일자로 귀속될 경우 정당수정으로 간주된다.

예. Illiger (1801)에 의한 *Elophorus* Fabricius, 1775의 부정당수정인 *Helophorus*는 딱정벌레목에서 성행용법의 것이고 Fabricius에 귀속되기 때문에 정당수정으로 간주된다; 명칭 *Helophorus* Fabricius, 1775는 정확한 철자법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33.3. 부정확한 사후철자법. 강제적 변경이나 수정이 아닌, 정확한 원철자법과 다른 사후철자법은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이다; 이는 부정확한 원철자법과 마찬가지로 적합명칭이 아니며(제32조 4), 이물동명관계에 귀속되지 못하고 대체명칭으로도 사용될 수 없으나,

33.3.1.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이 성행용법의 것이고 원철자법의 출판으로 귀속되면 사후철자법과 그 귀속은 보존되어야 하고 이 철자법은 정확한 원철자법으로 간주된다.

예. *Trypanosoma brucii* Plummer & Bradford, 1899의 종본명은 성행용법의 것이지만 *brucei*로 철자되고 있다; *brucei*는 정확하고 이 용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33.4. 종군명칭의 사후철자법에서 *–ii* 대신 *–i*, 또는 그 반대나 다른 양자택일 철자법의 사

용. 인명을 토대로 명명되고 소유격이며 정확한 원철자법이 *-ii*로 끝나는 종군명칭의 사후철자법에서 소유격 어미 *-i*의 사용, 또는 그 반대의 사용은, 이 철자법 변경이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으로 간주된다; 이와 동일한 규칙이 *-ae*와 *-iae*, *-orum*과 *-iorum*, *-arum*과 *-iarum*에도 적용된다.

예. Waterhouse가 *Macropus bennetti* Waterhouse, 1837을 창설한 뒤 그가 사후에는 *benettii*라는 철자를 사용한 것은 이것이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이 사후철자법은 적합명칭이 되지 않는다.

33.5. 의심스러운 경우. 상이한 사후철자법이 수정인지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인지 의심스러울 경우 이는 수정이 아니라 부정확한 사후철자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따라서 부적합한 철자법이다).

제34조. 분류계급 또는 조합의 변경에 대한 사후철자법의 강제적 변경.

34.1. 과군명칭. 명칭이 부여된 분류군의 분류계급이 상승 또는 하락할 때 과군명칭의 접미사는 변경되어야 한다; 그 명칭의 저자와 출판 일자는 변경없이 존속된다(제23조 3.1, 29조 2, 50조 3.1).

34.2. 종군명칭. 라틴어로 되어 있거나 라틴어화한 형용사적 또는 분사적 종군명칭은 이것이 속명과 결합될 때 항상 속명과 성이 일치해야 한다(제31조 2); 만약 성의 어미가 부정확하면 맞도록 변경되어야 한다(저자와 출판 일자는 변경되지 않는다–제50조 3.2).

34.2.1. 만약 종군명칭이 동격 명사이면 이의 어미는 속명과 성이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속명과 성이 일치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제31조 2.1).

제8장 과군 공칭분류군 및 이들의 명칭

제35조. 과군.

35.1. 정의. 과군은 상과, 과, 아과, 족, 아족의 모든 공칭분류군과 상과 아래부터 속 위까지 모든 분류계급을 포함한다(집합군과 생적분류군에 대해서는 제10조 3을 보라).

35.2. 과군 공칭분류군들과 이들의 명칭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들. 과군 공칭분류군과 이들의 명칭들은 이들의 분류계급이 무엇이든 접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규정들의 지배를 받는다(제29조 2)(과군명칭에 대한 동등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36조를 보라).

35.3. **과군명칭의 적용.** 각 과군명칭의 적용은 공칭분류군의 모식속을 참고하여 결정된다(제61조~65조).

35.4. **과군명칭의 형성과 처리.** 과군명칭은 제11조 7 및 제25조~34조의 관련 규정들에 맞게 형성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35.4.1. 모식속명의 부정당수정(그러나 제35조 4.2를 보라)이나 부정확한 철자법에 근거한 과군명칭은, 이것이 제29조 5에 의해 보전되거나 과군명칭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 속군명칭의 철자법이 제33조 2.3.1 또는 제33조 3.1에 의해 보전되지 않으면, 변경되어야 한다.

예. Goldfuss (1820)는 *Phascolomis* Geoffroy, 1803 (포유강) 대신 부정확한 철자법인 *Phascolomys* (Duméril, 1806이 도입함)에 토대를 두고 과군명칭 Phascolomyda를 발표하였다. 수정된 명칭은 PHASCOLOMIDAE Goldfuss, 1820이다.

35.4.2. 만약 모식속명의 부정당수정이 이의 치환명칭이 되면, 과군명칭은 치환명칭의 어간에서 형성된 철자법으로 고친 모식속명 또는 치환명칭 전체로 형성된 모식속명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제29조 1); 과군명칭의 저자와 출판 일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35.5. **상위 분규계급에서 사용되는 명칭의 우선성.** 만약 1999년 이후 과군 분류군(예. 아과)에 대해 사용되는 명칭이 동일한 과군 분류군의 상위 분류계급에 대한 성행용법의 명칭보다 고참인 것이 밝혀지면(예. 고참인 명칭이 아과명인 과에서), 고참 명칭은 신참 명칭을 대치하지 않아야 한다.

예. 비록 우선권만으로 볼 때 과명은 ROPHITIDAE이지만, 아과 ROPHITINAE Schenck, 1866 (벌목)은 보편적으로 과 HALICTIDAE Thomson, 1869 안에 들어 있다. ROPHITIDAE에 대한 HALICTIDAE의 우선적 지위는 이들이 주관동물이명(과 분류계급에서)으로 처리되는 한 보전되어야 하며 HALICTINAE 및 ROPHITINAE는 HALICTIDAE 안에서 상이한 아과들에 대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36조. 동등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

36.1. **과군명칭에 적용되는 동등 원칙에 대한 설명.** 과군의 어느 분류계급의 분류군에 대해 창설된 명칭은 과군의 모든 다른 분류계급의 공칭분류군들에 대해 동시에 창설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모든 분류군들은 동일한 모식속을 가지며, 이들의 명칭은 모식속명의 어간으로부터 적절한 접미사 변경을 거쳐(제34조 1)

형성된다(제29조 3). 이 명칭은 모든 분류계급에서 동일한 저자와 출판 일자를 가진다.

예. *Hesperia* Fabricius, 1793에 토대를 둔 과명 HESPERI1DAE (나비목)는 1809년에 Latreille에 의해 창설되었다(*Hesperides*라는 명칭으로). Latreille은 동등 상과명 HESPERIOIDRA와 동등 아과명 HESPERIINAE도 동시에 창설한 것으로 간주된다(비록 HESPERIOIDEA는 Comstock & Comstock (1904)가 최초로 사용했고 HESPERIINAE는 Watson (1893)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지만). 이 세 가지 명칭의 저자와 출판 연도는 Latreille, 1809이다.

36.2. **모식속.** 과군 내에서 공칭분류군의 분류계급이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이의 모식속은 동일하게 유지된다(제61조 2.2).

제37조. 공칭모식 분류군(nominotypical taxa).

37.1. **정의.** 과군 분류군이 분할될 때 상위 분류군의 모식속을 포함하는 부속 분류군은 모식속명과 동일한 명칭이 부여되며(접미사는 제외), 동일한 저자와 출판 일자를 가진다(제36조 1); 이 부속 분류군을 "공칭모식 분류군"이라고 한다.

예. TIPULIDAE Latreille, 1802 (모식속 *Tipula* Linnaeus, 1758)는 여러 아과로 나뉘어졌으며 각각은 자체의 모식속의 명칭을 따랐다. *Tipula*를 포함하는 아과는 TIPULINAE Latreille, 1802이자 공칭모식 아과이다.

37.2. **공칭모식 분류군에 대한 명칭 변경의 효과.** 만약 과군 분류군에 대해 사용되는 명칭이 부적합하거나 무효이면, 이 명칭은 제23조 3.5에 의거하여 유효명칭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치환 공칭분류군의 모식속을 포함하는 부속 분류군들은 (그래서 적절한 접미사를 갖추어 유효 과군명칭이 부여된) 공칭모식 분류군이 된다.

제38조. 과군명칭들 사이의 이물동명관계. 과군명칭들 사이의 이물동명관계에 대해서는 제39조 및 제55조를 보라.

제39조. 모식속명의 이물동명관계 또는 금지로 인한 무효성. 과군 분류군의 명칭은 만약 이의 모식속의 명칭이 하위이물동명이거나 심의회에 의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되었다면 무효명칭이다. 만약 이 과군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면 부속 과군 분류군의 명칭을 포함한 이의 동물이명들 중에서 다음으로 가장 고참인 적합명칭으로, 또는 이와 같은 동물이명이 없을 경우 이전 모식속

의 유효명칭에 토대를 둔 신명칭으로 교체되어야 한다(제23조 3.5) (하위동물이명 또는 신대체명칭(nomen novum)으로 교체).

예. 톡토기목에서 과명 DEGEERIIDAE Lubbock, 1873은 파리목의 *Degeeria* Meigen, 1838의 하위이물동명인 *Degeeria* Nicolet, 1842에 토대를 두었다. DEGEERIIDAE는 동물이명을 가지지 않았으며, *Degeeria* Nicolet 대신 신대체명칭(nomen novum) *Entomobrya* Rondani, 1861에 토대를 둔 새로운 명칭(nom. nov.)인 ENTOMOBRYIDAE Tömöváry, 1882가 만들어졌다.

제40조. 모식속의 동물이명관계.

40.1. 영향 받지 않는 과군명칭의 유효성. 공칭 과군 분류군의 모식속의 명칭이 다른 공칭속 명칭의 하위동물이명인 것으로 고려될 때 과군명칭은 이 이유만으로 교체되지 않아야 한다.

예. 모식속명 *Neositta* Hellmayr, 1901이 *Daphoenositta* De Vis, 1897의 하위동물이명이라 할지라도 DAPHOENOSITTINAE Rand, 1936이 아닌 NEOSITTINAE Ridgeway, 1904 (조류)가 유효명칭이다.

40.2. 1961년 이전에 교체된 명칭. 그러나 만약 모식속의 동물이명관계 때문에 1961년 이전에 과군명칭이 교체되었다면, 교체 명칭이 성행용법의 것이라면 유지되어야 한다.

40.2.1. 이 조항 덕택에 유지되는 명칭은 그 저작권은 유지되지만 상위동물이명으로 간주되는 교체 명칭의 우선권을 취한다.

권고 40A. 저자 및 출판 연도의 인용. 저자와 출판 연도가 인용될 때, 제40조 2.1의 규정들에 의해 유지되는 과군명칭은 원저자 및 원출판 연도와 함께 인용되어야 하며(권고 22A 2.2를 보라), 이 조항이 결정한 바에 따라 이의 우선권적 연도를 뒤에 적어야 한다; 우선권적 연도는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

예. 파리목에서 Bezzi (1913)가 *Orphnephila* Haliday, 1832를 *Thaumalea* Ruthe, 1831의 동물이명으로 처리하고, 상위동물이명인 *Thaumalea*를 토대로 THAUMALEIDAE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Orphnephila*에 토대를 둔 과명인 ORPHNEPHILIDAE Rondani, 1847이 사용되었다. 그 후 THAUMALEIDAE는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또 유지되어야 한다. THAUMALEIDAE가 성행용법의 것이 아니었다면 *Orphnephila*가 하위동물이명임에도 불구하고 ORPHNEPHILIDAE가 계속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THAUMALEIDAE는 이의 저자와 출판 연도와 함께 인용되고 뒤이어 괄호 안에 대체명칭의 출판 연도가 따라온다: THAUMALEIDAE Bezzi, 1913 (1847). 이는 ORPHNEPHILIDAE Rondani, 1847이나 이후에 출판된 다른 동물이명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

제41조. 모식속의 오동정 및 모식확정 결여. 만약 한 분류군의 모식속이 오동정(즉, 이의 모식종으로 정의된 것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됨)되었거나, 모식속이 오동정된 모식종에 토대를 두었거나, 모식속에 대한 모식종의 유효 확정이 결여되었음이 밝혀져서 과군명칭의 의미상 안정성과 연속성이 위협을 받는다면 제65조 2를 보라.

제9장 속군 공칭분류군 및 이들의 명칭

제42조. 속군.

42.1. 정의. 분류 단계에서 과군 바로 아래이고 종군 바로 위인 속군은 속 및 아속의 분류계급에 있는 모든 공칭분류군을 포함한다(또한 제10조 3 및 10조 4를 보라).

42.2. 모든 속군 공칭분류군과 이들의 명칭에 적용되는 규정들. 속군 공칭분류군과 이들의 명칭은, 어느 한 분류계급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류계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규정들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42.2.1. 분류학적 편의상 명백히 "집합군"으로 알려진 집단에 대해 창설된 명칭이나 속군 수준에서 흔적화석(정적 분류군)에 대해 창설된 명칭은 특정 조항(제13조 3.2, 13조 3.3, 23조 7, 42조 3.1, 66조, 67조 14와 같은)과 같이 상반되는 언급이 없으면 이 규약의 의미상(제10조 3) 속군명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각각은 이들의 원저자와 출판 일자를 취한다.

예. (a) 집합군 명칭 중에서: *Agamofilaria* Stiles, 1907 (선형동물). (b) 흔적화석에 대한 명칭 중에서: *Helicalithus* Azpeitia Moros, 1933 및 *Stelloglyphus* Vyalov, 1964.

42.3. 속군명칭의 적용. 각 속군명칭의 적용은 공칭분류군의 모식속을 참고하여 결정된다(제61조, 66~70조).

42.3.1. 집합군은 모식종을 가지지 않는다(제13조 3.2 및 67조 14를 보라).

42.3.2. 1931년 이전에 창설된(생적분류군의 경우는 2000년 이전-제13조 3.3) 속군 공칭분류군은 확정된 모식 종군 분류군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69조가 적용된다.

42.4. 속군명칭의 형성과 처리. 속군명칭은 제10조 3, 10조 4 및 11조 8, 그리고 제25조~33조의 관련 규정들에 맞게 형성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제43조. 동등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

43.1. 속군명칭에 적용되는 동등 원칙에 대한 설명. 속군 분류계급의 분류군에 대해 창설된 명칭은 이 속군 내 다른 분류계급의 공칭분류군에 대해서도 동일 저자가 동시에 창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두 가지 공칭분류군은, 원확정이든 사후확정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모식종을 가진다.

43.2. 담명모식(name-bearing types). 속군의 공칭분류군의 분류계급이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이의 모식종은, 원확정이든 사후확정이든 관계없이, 동일하다(제61조 2.2).

제44조. 공칭모식 분류군(nominotypical taxa).

44.1. 정의. 한 속이 아속들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모식종을 포함하는 아속은 속과 동일한 명칭이 부여되며 동일한 저자와 출판 일자를 가진다(제43조 1); 이 아속을 공칭모식 아속(nominotypical subgenus)이라고 한다.

44.2. 공칭모식 아속의 변경. 만약 한 속에 대하여 사용되는, 그래서 이의 공칭모식 아속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명칭이 부적합명칭이나 무효명칭이면, 이 명칭은 제23조 3.5에 의거하여 유효명칭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유효 공칭속의 모식종을 포함하며 그 속의 유효명칭이 부여된 아속이 공칭모식 아속이 된다.

제10장 종군 공칭분류군 및 이들의 명칭

제45조. 종군.

45.1. 정의. 종군은 종 및 아종 분류계급에 있는 모든 공칭분류군을 포함한다(또한 제10조 2를 보라).

45.2. 모든 종군 공칭분류군과 이들의 명칭에 적용되는 규정들. 종군 공칭분류군과 이들의 명칭들은 명백히 한 가지 분류계급의 명칭에만 해당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군 내의 분류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정들의 지배를 받는다(종이나 아종의 집합체에 부여되는 삽입명칭에 대해서는 제6조 2를 보라).

45.3. 종군명칭의 적용. 각 종군명칭의 적용은 종군명칭이 창설될 때의 조합으로 부여된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을 참고하여 결정된다(제61조, 71조~75조).

45.4. 종군명칭의 형성과 처리. 종군명칭은 제11조 및 제19조, 제20조, 제23~34조의

관련 규정들에 맞게 형성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45.5. 아종하 명칭. 명백히 아종하 실체(용어 해설을 보라)에 대하여 제안된 명칭은 제45조 6의 규정들이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적합명칭이 아니다; 이러한 명칭은 종군에서 제외되며 이 규약에서 다루지 않는다(제1조 3.4). 삼명식 명칭에 추가적으로 발표된 제4의 명칭은 자동적으로 아종하 실체에 대하여 부여된다(그러나 삽입 종군명칭(제6조 2)은 삼명식 명칭에 추가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45.5.1. 이 조항의 규정들하에서 아종하 분류계급을 가지는 명칭은 심의회의 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사후의 행위(가령, 분류계급의 승격)에 의해서 원출판부터 유효명칭으로 될 수는 없다. 사후의 저자가 종이나 아종에 대하여 이를 적합명칭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제11~18조) 동일한 단어를 적용할 때, 이 사후 저자가 그 명칭의 저작권을 아종하 명칭을 출판한 저자에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후 저자는 이로써 그 자신의 저작권과 출판 일자를 가진 신명칭을 창설하는 것이 된다.

예. *Vulpes vulpes karagan* natio *ferganensis* (Ognev, 1927이 발표함)에서의 *ferganensis*는 삼명식 명칭에 추가된 것이므로 아종하 명칭이다; Flerov (1935)는 처음으로 이를 아종명 *Vulpes vulpes ferganensis*와 같이 사용했는데, 후자의 명칭이 유효하고 저작권은 Flerov (1935)에게 귀속된다.

45.6. 이명식 명칭에 이은 명칭의 아종 또는 아종하 분류계급의 결정. 이명식 명칭 다음에 오는 종군명칭이 부여된 분류계급은 아종이며, 다음은 예외이다.

45.6.1. 만약 이의 명명자가 명백히 아종하 분류계급에 부여했거나 저작물의 내용에서 모호하지 않게 그 명칭이 아종하 실체에 대해 제안되었다면 이는 아종하 분류계급이며(또한 제45조 6.4를 보라);

45.6.2. 만약 저자가 “aberration”, “ab.” 또는 “morph”라는 용어 중 한 가지를 사용했다면 이는 아종하 분류계급으로 간주되고;

예. Ognev (1913)가 발표한 *Arvicola amphibius* ab. *pallasii*에서 *pallasii*는 아종하 명칭이다; 이는 Ognev (1950)가 처음으로 아종명 *Arvicola terrestris pallasii*로 사용하면서 유효 종군명칭이 되었고 저작권은 Ognev (1950)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45.6.3. 만약 1960년 이후에 처음 발표되었고 저자가 명백히 “variety” 또는 “form” (“var.”, “forma”, “v.”, “f.” 포함)이라는 용어 중 한 가지로 사용했다면, 아종하 분류계급으로 간주되며;

45.6.4. 만약 1961년 이전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의 저자가 명백히 “variety” 또

는 “form”(“var.”, “forma”, “v.”, “f.” 포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나, 명백히 아종하 분류계급에 부여했거나, 저작물의 내용이 모호하지 않게 그 명칭이 아종하 실체를 대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아종 분류계급인데, 다음은 예외이다.

45.6.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5조 6.4 하의 아종하 분류계급의 명칭은 만약 1985년 이전에 한 종이나 아종의 유효명칭으로 채택되었거나 상위이물동명으로 처리되었다면 원출판 때부터 아종 분류계급으로 간주된다.

예. Spencer (1896)는 육식성 소형 유대류 *Smithopsis murina* 및 *S. crassicaudata*의 형태적 중간형인 표본을 토대로 *Smithopsis murina* var. *constricta*를 명명하고 기재하였다; 그의 저작물은 그 명칭이 아종하 실체에 대해 명백하지 않게 제안되었으므로 *constricta*는 원출판을 기점으로 아종 분류계급을 가진다.

노린재목에서 Westhoff (1884)는 명백히 macropterous form 그 자체에 *Pyrrhocornis apterus* var. *pennata*라는 명칭을 부여했고 Wagner (1947)는 명백히 freshly emerged adults 그 자체에 *Stenodema trispinosum* f. *pallescens*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따라서 *pennata*와 *pallescens*는 아종하 분류계급의 명칭으로서 1985년 이전에 종이나 아종에 대해 채택된 것이 아니므로 둘 다 부적합명칭이다.

Polinski (1929)는 육상 복족류 *Fruticicola unidentata subtecta*를 “variété (natio) n.”으로 기재하면서 이 종류가 아종 분류군 수준까지는 나타내지 않는 단지 “une forme”이라고 명백히 기술하였다. 그러나 Klemm (1954)는 *Trichia* (*Petasina*) *unidentata subtecta* (Polinski)를 한 아종의 유효명칭으로 채택했으므로 아종본명 *subtecta*는 Polinski, 1929를 기점으로 유효명칭이 된다.

제46조. 동등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

46.1. **종군명칭에 적용되는 동등 원칙에 대한 설명.** 종군 분류계급에 있는 분류군에 대해 창설된 명칭은 동일 종군의 다른 분류계급의 분류군의 동일 저자에 의해 동시에 창설된 것으로 간주된다; 두 공칭분류군은, 원확정이든 사후확정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담명모식을 가진다.

46.2. **담명모식.** 종군에서 한 공칭분류군의 분류계급이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이의 담명모식(제72조 1.2)은, 원확정이든 사후확정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속된다(제61조 2.2).

제47조. 공칭모식 분류군(nominotypical taxa).

47.1. **정의.** 하나의 종이 아종들을 포함한다고 판단될 때 담명모식을 포함하는 아

종은 종과 동일한 종군명칭이 부여되며 동일 명명자와 동일 출판 일자를 가진다(제46조 1); 이 아종을 공칭모식 아종이라고 한다.

47.2. 공칭모식 아종의 변경. 만약 한 종에 대하여 사용되는 종군명칭이, 이로 인하여 이의 공칭모식 아종이, 부적합명칭이나 무효명칭이면, 제23조 3.5에 의거하여 유효명칭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때 유효 공칭종의 담명모식을 포함하는 아종은 공칭모식 아종이 된다.

예. Hemming (1964)는 나비 명칭 *Papilio coenobita* Fabricius, 1793이 *Papilio coenobita* Cramer, 1780의 하위원이물동명 (junior primary homonym)이라고 적으면서 *Pseudoneptis ianthe* Hemming, 1964를 *Pseudoneptis coenobita* (Fabricius)의 신대체명칭 (nom. nov.)으로 창설했다. 그러나 Stoneham (1938)은 아종 *Pseudoneptis coenobita bugandensis*를 창설했으므로, 그 종의 유효명칭은 *Pseudoneptis bugandensis* Stoneham, 1938이다. 공칭모식 아종은 *Ps. bugandensis bugandensis*이다. 명칭 *ianthe*는 다른 아종 *Ps. bugandensis ianthe* Hemming, 1964에 부여된다.

제48조. 속의 할당 변경. 유효 종군명칭은 다른 속명과 조합될 때마다 필요할 경우 성적 어미의 변경을 거쳐서 다른 조합의 부분이 된다.

제49조. 오동정으로 잘못 적용된 종군명칭의 사용. 과거의 오동정이 신공칭속이나 신공칭아속의 모식종을 확정하는 데 의도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10, 67조 13), 오동정으로 인하여 종군 분류군에 잘못 적용된, 과거에 창설된 종본명이나 아종본명은 해당 분류군에 대한 적합명칭으로 사용될 수 없다(분류군이나 종본명이나 아종본명이 정확히 적용되는 분류군이 상이한 속에 속하거나 나중에 상이한 속으로 할당된다 할지라도).

예. L.C. Koch (1847)는 명칭 *Polydesmus scaber* Perty 하에 Percy가 1933년에 실제로 그와 같이 명명한 것과는 다른 다지류 한 종을 기록하였다. 제11조 10에 제시된 바를 제외하고, 종군명칭 *scaber*는 Koch의 종을 칭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이를 모식종으로 확정하지 않고 그의 신속 *Platyrhacus* 안에 포함시켰을 지라도).

제11장 저작권

제50조. 명칭 및 명명활동의 저자.

50.1. 저자의 신원. 명칭이나 명명활동의 저자는 적합성의 기준에 맞게(제10조~20조) 최초로 그것을 출판한 사람이다(제8조, 11조) (그러나 동물이명으로 발표

한 명칭에 대해서는 제50조 7을 보라). 만약 한 저작물의 저자가 한 명보다 많고 내용상 이 저자들 중에서 명백히 한 명만 그 명칭이나 명명활동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저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저작물의 저자가 그 명칭이나 명명활동의 저자로 간주된다. 만약 출판물의 내용을 보고 저자나 출판자가 결정될 수 없으면 그 명칭이나 명명활동은 저자 불명으로 간주된다(저자 불명인 명칭이나 명명활동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제14조를 보라).

50.1.1. 그러나 만약 내용상 저작물의 저자가 아닌 제3자 혼자서 명칭이나 명명활동 및 적합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책임자(실제적 출판 외의)라면 이 제3자가 명칭이나 명명활동의 저자가 된다. 만약 저작물 자체에서 이 제3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저작물을 출판한 사람이 저자로 간주된다.

50.1.2. 이전의 오동정의 의미로 한 종군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모식종을 원확정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오동정을 사용한 사람은 신학명의 저자로 간주된다(제11조 10, 67조 13, 70조 4).

50.1.3. 이 장의 규정들은 공동 저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예. 이명식 명칭 *Dasyurus laniarius* (포유강)는 Mitchell (1838)이 저자인 한 탐사보고서에 발표되었다. 이 이명식 명칭 안의 종본명 *laniarius*와 그 분류군의 기재는 Owen이 Mitchell에게 보낸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Mitchell은 그 내용을 그대로 출판하였다(Owen 단독으로 명칭과 명칭을 유효명칭으로 만드는 기재의 책임자임을 저작물에서 명백히 밝힘). 저자는 Mitchell이 아니라 Owen이다.

권고 50A. 복수 저자. 복수 저자이지만 그중 한 명 또는 일부가 명칭과 그 명칭을 유효명칭으로 만드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적 책임자일 때, 그 직접적 책임자(들)의 신원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명칭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저작물 전체의 공동 저자들이 자동적으로 그 명칭의 명명자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저자들의 이름의 인용을 위해서는 권고 51E를 보라.

50.2. 회의 보고서 속 명칭의 저작권. 만약 한 분류군의 명칭이 회의 보고서나 의사록에 발표되어 유효명칭이 되면 서기나 기록자가 아니라 그 명칭의 책임자가 저자가 된다.

권고 50B. 회의록 속의 자료. 회의의 서기나 다른 기록자는 이들이 출판한 보고서에 신학명이나 명명활동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50.3. 분류계급이나 조합의 변경에 영향 받지 않는 저작권.

50.3.1. 과군, 속군 또는 종군 안의 공칭분류군 명칭의 저작권은 분류계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종이나 아종의 적합명칭이 되도록 적합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종하 명칭이 사용되면 처음으로 이와 같이 사용

하는 사람이 저자이다(제10조 2, 45조 5.1).

50.3.2. 종군명칭의 속 조합의 변경은 저작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조합의 변경을 나타내는 괄호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51조 3을 보라).

50.4. **정당수정의 저작권.** 정당수정은 해당 명칭의 부정확한 원철자법의 저자에게 귀속되며 수정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다(제19조 2, 33조 2.2).

50.5. **부정당수정의 저작권.** 부정당수정은 이를 처음 출판한 저자에게 귀속된다(제33조 2.3).

50.6. **상이한 저자들에 의해 동시에 출판된 명칭의 저작권.** 동일한 분류학적 분류군에 대하여 둘 이상의 동일한 명칭이 동일 일자에 동일한 또는 상이한 저작물에서 출판되면, 이들의 우선순위는(이에 다른 명칭의 저작권은) 제24조의 적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명칭 *Zygomaturus keani* (포유강)는 동일 출판물(1967년) 안의 두 개의 상이한 논문에서 각각 Stirton 및 Plane에 의해 처음 출판되었다. 이 두 논문에서 상이한 표본들이 기재되었다. 비록 Plane은 해당 명칭을 Stirton의 것으로 귀속시켰지만, Plane의 논문에 있는 재료는 Stirton의 논문에 있는 재료와 다르므로 Plane은 그의 논문에서 그 명칭의 유일한 명명자이다. 최초 교정자(제24조 2.2)로서 Mahoney & Ride (1975)는 Stirton의 논문과 명칭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Plane의 의도를 따랐음–권고 24B를 보라), 따라서 그 명칭의 저자는 Stirton이고, 모식표본들 역시 그가 확정한 것들이다.

50.7. **하위동물이명으로 처음 출판된 명칭의 저작권.** 만약 하나의 학명이(예. 라벨이나 원고에서) 1961년 이전에 한 적합명칭의 동물이명으로 처음 발표되고 제11조 6의 규정들에 의해 적합명칭이 되었으면, 다른 창안자가 인용되었을지라도, 이의 저자는 사후에 이를 유효명칭으로 채택한 사람이 아니라, 이를 동물이명으로 발표한 사람이다.

권고 50C. 배제명칭 또는 무효명칭의 저작권. 서지학적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배제명칭(excluded name)이나 부적합명칭을 언급하고자 할 때, 저자가 다른 사람을 창안자로 인용하지 않은 한, 저작권은 그 명칭을 그 상태로 발표한 사람에게 귀속된다(인용과 예를 보기 위해서는 권고 51F를 보라).

제51조. 명명자 이름의 인용.

51.1. **명명자 이름의 선택적 사용.** 명명자 이름은 분류군 명칭의 한 부분이 되지 않으며, 이의 인용은 관례적이고 권장되지만 대개는 선택 사항이다.

권고 51A. 명명자 및 출판 연도의 인용. 한 명칭으로 부여된 분류군은 다른 저작물에서 명명자와 출판

연도는 적어도 한 번은 인용되어야 한다. 이는 이물동명을 구분하고 원래의 조합에서 벗어난 종군명칭을 인지할 때 특히 중요하다. 만약 한 저자의 성과 이름(들)이 혼동되면 이들은 과학 참고문헌들에서와 같이 구별되어야 한다.

권고 51B. 명명자 이름의 자역. 만약 명명자의 이름이 라틴어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관습적 언어로 적혀 있으면 이는 발음부호와 함께 또는 발음부호 없이 라틴어 글자로 변환해야 한다.

51.2. **저작권의 인용 형식.** 명명자의 이름은, 제51조 3에 제시된 바와 같은 조합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어떤 종류의 구두점이 없이 분류군 명칭에 이어 적어야 한다.

권고 51C. 복수 저자의 인용. 한 명칭에 대하여 세 명 이상의 공동 명명자가 해당될 때 저자 이름의 인용은, 동일 저작물의 본문이나 참고문헌에서 모든 저자들의 이름이 완전히 표기된 적이 있다면, 첫째 명명자 이름 다음에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51.2.1. 만약 학명의 사후 사용자 이름을 인용할 경우, 다른 설명이 없는 한, 괄호가 아닌(비교. 제51조 3) 다른 명료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분류군명과 분리해서 적어야 한다.

예. Latreille가 *Cancer pagurus* Linnaeus를 사용한 바를 인용할 때 "*Cancer pagurus* Linnaeus sensu Latreille" 또는 "*Cancer pagurus* Linnaeus (as interpreted by Latreille)" 또는 기타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용할 수 있으나, "*Cancer pagurus* Latreille" 또는 "*Cancer pagurus* Linnaeus (Latreille)"와 같이 적으면 안 된다.

권고 51D. 저자 불명, 또는 저자 불명이지만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저자. 만약 한 분류군의 명칭이 저자 불명이거나 저자 불명으로 간주된 상태로 창설되면 용어 "Anom."이 마치 저자명인 것처럼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외적 증거로 인해 저자 신원이 알려지거나 추정되면 저자의 이름은 인용될 때 원래 저자 불명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각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 저자 불명 상태로 제안된 명칭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제14조를 보라.

권고 51E. 책임 저자의 인용. 만약 학명과 이 학명을 유효명칭으로 만드는 출판 외의 조건들(제10조~20조)이 그 저작물의 저자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이거나 다른 공동 저자들보다 책임이 적을 때, 그 명칭의 저작권을 인용할 경우 "B in A" "B in A & B"와 같이 또는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하도록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정상적으로는 출판 연도 역시 인용되어야 한다).

권고 51F. 부적합명칭 또는 배제명칭 저자의 인용. 부적합명칭이나 배제명칭의 저작권 인용(권고 50C)이 필요하거나 요망되면 그 명칭의 명명법적 지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예. *Halmaturus rutilis* Lichtenstein, 1818 (nomen nudum); *Yerboa gigantea* Zimmermann, 1777 (published in a work rejected by the Commision in Opinion 257); "Pseudosquille" (a vernacular name published by Eydoux & Souleyet (1842).

51.3. 변경된 조합에서 저자 이름(및 출판 연도)을 괄호 안에 넣기. 종군명칭이 원래의 것이 아닌 속명과 조합되면 종군명칭의 저자 이름은 인용할 때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출판 연도를 인용할 때도 이를 동일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

예. *Taenia diminuta* Rudolphi가 *Hymenolepis*속으로 이전하면 *Hymenolepis diminuta* (Rudolphi) 또는 *Hymenolepis diminuta* (Rudolphi, 1819)와 같이 인용된다.

51.3.1. 종군명칭이 원래 속명의 부정확한 철자법이나 수정과 조합되면 괄호는 사용되지 않는다(이는 부정당수정이 자체의 저작권과 출판 일자를 가지는 적합명칭일지라도 적용된다–제33조 2.3).

예. 종군명칭 *subantiqua* d'Orbigny, 1850은 *Fenestella* Lonsdale, 1839에 대한 d'Orbigny의 부정확한 철자법 *Fenestrella*과 조합되어 창설되었다. 이 종은 *Fenestella subantiqua* (d'Orbigny, 1850)가 아니라 *Fenestella subantiqua* d'Orbigny, 1850으로 인용된다.

51.3.2. 명명자 이름과 출판 연도를 감싸는 괄호의 사용은 아종명의 존재나, 동일 속의 다른 아종으로의 이전이나, 종군 내에서의 분류계급의 변경이나, 또는 동일 속 내에서 한 아종의 다른 종으로의 이전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예. *Goniocidaris florigera* Agassiz가 *Petalocidaris*속으로 이전하면 *Petalocidaris florigera* (Agassiz)로 인용된다. *Petalocidaris*가 *Goniocidaris*속의 아속으로 취급되면 괄호가 제거되는데 이때는 *Goniocidaris* (*Petalocidaris*) *florigera* Agassiz로 인용된다.

51.3.3. 만약 1961년 이전에 새로운 종군명칭이 과거의 유효 속군명칭과 조합되어 창설되고, 동시에 명명자가 이를 위해 조건부로 신공칭속을 제안하였다면, 종군명칭이 과거에 창설된 속명과 조합될 때 저자 이름은 괄호 안에 넣지 않으나, 종군명칭이 조건부로 제안된 속명과 조합될 때는 괄호 안에 넣는다(제11조 9.3.6).

예. Lowe (1843)는 어류 신종 *Seriola gracilis*를 창설하면서 동시에 이 공칭종을 포함하기 위해 신속 *Cubiceps*를 조건부로 제안하였다. 이 종을 *Cubiceps*속에 포함시킬 때 이 종의 학명은 *Cubiceps gracilis* (Lowe, 1843)로 인용된다.

권고 51G. 새로운 조합을 만든 사람의 인용. 만약 종군 공칭분류군의 저자와 이를 처음으로 다른 속으로 이전한 사람을 모두 인용하고자 할 때, 종군명칭의 명명자 이름을 괄호 안에 넣고 그 뒤에 새로운 조합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오게 한다.

예. *Limnatis nilotica* (Savigny) Moquin-Tandon; *Methiolopsis geniculata* (Stäl, 1878) Rehn, 1957.

제12장 이물동명관계(homonymy)

제52조. 이물동명관계 원칙.

52.1.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설명.** 둘 이상의 분류군들이 서로 구별되면 이들은 동일한 명칭이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

52.2.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운용.** 둘 이상의 명칭들이 이물동명들이면 우선권 원칙(제52조 3을 보라)에 의해 결정된 상위이물동명 하나만이 유효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의 예외에 대해서는 제23조 2 및 23조 9(사용되지 않는 상위이물동명) 및 제59조(종군에서의 후이물동명)를 보라.

52.3. **우선권 원칙의 적용.** 이물동명들(종군명칭의 경우 원이물동명 및 후이물동명 포함)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우선권 원칙과 최초 교정자 원칙(제23조, 24조)의 적용에 의해 결정된다.

52.4. **하위이물동명의 교체.** 제23조 3.5, 23조 9.5, 39조, 55조 및 60조를 보라.

52.5. **상위이물동명의 금지.** 제54조 4, 81조 2.1을 보라.

52.6. **부정확한 원철자법과 수정된 철자법.** 부정확한 원철자법을 수정한 철자법은 이물동명관계에 가입할 수 있으나 부정확한 원철자법은 그러지 못한다(제32조 4).

52.7. **동물이 아닌 분류군 명칭의 이물동명관계.** 동물로 취급된 적이 없는 분류군 명칭과 동일한 동물 분류군의 명칭은 동물명명법의 목적상 이물동명관계가 아니다.

제53조. 과군, 속군 및 종군의 이물동명관계의 정의.

53.1. **과군의 이물동명.** 과군에서 동일한 철자법을 가지거나 접미사(제29조 2)만 다르면서 상이한 공칭분류군을 칭하는 둘 이상의 적합명칭들은 이물동명들이다.

예. 과군명칭 METOPIINAE Foerster, [1869](벌목; 모식속 *Metopius* Panzer, 1806), METOPIINI Raffray, 1904(딱정벌레목; 모식속 *Metopias* Gory, 1832) 및 METOPIINI Townsend, 1908(파리목; 모식속 *Metopia* Meigen, 1803)은 이물동명들이다(이들의 이물동명관계는 심의회가 후자의 두 과군명칭을 각각 METOPIASINI 및 METOPIAINI로 개정하여 해소시켰다(전문 의견 1772, 1994)).

53.2. **속군의 이물동명.** 속군 내에서 동일 철자법으로 창설된 둘 이상의 적합명칭들

은 이물동명들이다.

예. 속명 *Noctua* Linnaeus, 1758 (나비목) 및 *Noctua* Gmelin, 1771 (조강)은 이물동명들이다.

53.3. **종군의 이물동명.** 동일 철자법을 가지는 둘 이상의 종군명칭들은, 만약 원래 동일 속명과 조합되어 창설되거나(원이물동명관계) 사후에 동일한 속명과 조합되어 발표되었다면(후이물동명관계) 이물동명들이다.

예. *Cancer strigosus* Linnaeus, 1761 및 *Cancer strigosus* Herbst, 1799는 공칭속 *Cancer* Linnaeus, 1758의 상이한 공칭종을 대상으로 창설되었으며, 따라서 두 종본명은 원이물동명들이다. 후이물동명관계의 예를 위하여 제57조 3.1을 보라.

53.3.1. 제58조에 수록된 종군명칭들의 변형철자법들은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목적상 동일한 철자법으로 간주된다.

제54조. 이물동명관계에 가입하지 못하는 명칭들. 다음은 이물동명관계에 가입하지 못한다.

54.1. 이 규약의 규정들로부터 배제되는 명칭(제1조 3, 8조 3)(또한 제1조 4 및 52조 7을 보라);

54.2. 제20조에 제시된 것을 제외한, 부적합명칭(제10조 1),

54.3. 원철자법(제32조 4, 32조 5)이든 사후철자법이든 부정확한 철자법. 이는 수정되지 않은 상태의 부정확한 철자법은 적합 철자법이 아니기 때문임(제32조 4, 33조 3);

54.4. 심의회의 규제로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목적상 금지된 명칭(제81조 2.1).

제55조. 과군명칭.

55.1.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적용.** 이물동명관계 원칙은 과군 수준의 생적분류군의 명칭을 포함하여 모든 과군명칭에 적용된다.

55.2. **동일한 속명들에 기인한 이물동명관계.** 제39조를 보라.

55.3. **유사한 속명들에 기인한 이물동명관계.** 과군명칭들 사이의 이물동명관계는 이들의 모식속명의 동일성이 아닌 유사성 때문에 생길 수 있다.

55.3.1. 과군명칭들이 관련된 이러한 경우는, 상위이물동명이 망각명칭(*nomen oblitum*)이 아닌 한, 심의회에 통보되어 이물동명관계의 해소를 위

한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5.3.1.1. 상위이물동명이 제23조 9.2의 조건하에서 망각명칭임이 판명될 때 동일한 모식속을 토대로 새로운 과군명칭(*nomen novum*)이 제안될 수 있으며, 이물동명관계를 피하도록 모식속명의 새로운 어간을 취한다(제29조 1, 29조 4 및 29조 6).

55.4. **한 글자 차이.** 두 과군명칭들 사이의 차이가 단 한 글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이물동명들이 아니다.

예. *Larus* Linnaeus, 1758에 토대를 둔 과명 LARIDAE(조강)와 *Larra* Fabricius, 1793에 토대를 둔 과명 LARRIDAE(벌목)는 한 글자만 다르지만 이물동명들은 아니다.

55.5. **상위 분류계급에서의 명칭들의 우선순위.** 동일 출판 일자에 상이한 분류계급에서 창설된 두 이물동명성 과군명칭들 중에서는 상위 분류계급에서 창설된 것이 상위이물동명으로 간주된다(제24조 1).

제56조. 속군명칭.

56.1.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적용.** 이물동명관계 원칙은 집합군이나 속군 수준에서의 생적분류군의 명칭을 포함하여 모든 속군명칭에 적용된다(제1조 2, 23조 7, 42조 2).

56.2. **한 글자 차이.** 두 속군명칭들 사이의 차이가 단 한 글자일지라도 이들은 이물동명들이 아니다.

예. 파리목의 두 속명 *Microchaetina* van der Wulp, 1891과 *Microchaetona* Townsend, 1919는 이물동명들이 아니다.

56.3. **아속에 대한 속의 우선 지위.** 동일 출판 일자의 두 이물동명성 속군명칭들 중에서 하나는 속에 대하여 다른 하나는 아속에 대하여 창설되었다면, 속에 대하여 창설된 명칭이 우선순위를 가진다(제24조 1).

제57조. 종군명칭.

57.1. **종명 및 아종명에 대한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적용.** 이물동명관계 원칙은 동일한 철자법이거나 동일한 철자법인 것으로 간주되고(제58조) 원래 또는 사후에 동일 속명과 조합되어(제53조 3) 발표된 종군명칭들에게 적용되며, 속군 수준의 집합군이나 생적분류군의 명칭들도 해당된다(제10조 3 및 42조 2.1).

57.2. 원이물동명(primary homonyms). 원래 동일한 속명과 조합된 상이한 공칭분류군에 대해 창설된 동일한 종군명칭들(또는 제11조 9.3.2 및 57조 8.1을 보라)은 원이물동명들이며(제53조 3), 하위 명칭은 영구적으로 무효이나(그러나 제23조 9.5를 보라),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57.2.1. 제23조 9에서 규정된 조건하에서 그 명칭이 유효명칭으로 유지될 때(보호명칭, nomen protectum), 또는

57.2.2. 제81조 하에서 심의회에 의해 보전될 때, 또는

57.2.3. 그 명칭의 상위이물동명이 아니라, 그 명칭 자체가 채택된 관련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Part of the *List of Available Names in Zoology*)에 포함될 때(제79조 4.3을 보라).

예. 다음은 원이물동명들이다: *Culex affinis* Stephens, 1825 및 *Culex affinis* Adams, 1903; *Lycaena argus nevadensis* Oberthür, 1910 및 *Lycaena nevadensis* Zullich, 1928; *Aporia hippia transiens* Alpheraky, 1897 및 *Aporia crataegi transiens* Lempke, 1953.

57.3. 후이물동명(secondary homonyms).

57.3.1. 상이한 공칭분류군에 대하여 동일한 종군명칭이 창설된 뒤에 동일 속명과 조합된 것들이 후이물동명들이며(제53조 3), 이 중 하위인 것은 무효명칭이지만(그러나 제57조 8.1을 보라) 특정 조건에서는 복위될 수 있다(제569조 2~4).

예. 두 명칭 *Frontina acroglossoides* Townsend, 1891 및 *Eophrissopolia acroglossoides* Townsend, 1926의 종본명들은 두 종이 *Chaetogaedia*속으로 이전되면 후이물동명들이 된다.

57.3.2. 상이한 공칭분류군에 대하여 창설된 동일한 종군명칭들 중에서 하나는 원래 하위 속 이물동명과 조합되고 다른 하나는 원래 그 속 이물동명의 신대체명칭(nomen novum)(제60조 1)과 조합될 때 후이물동명들이 될 것이다.

예. *Xus*를 대체하기 위하여 *Xoides* Dupont, 1909가 창설되었을 때, *Xus albus* Smith, 1900(여기에서 *Xus*는 하위이물동명임)은 *Xoides albus* (Smith, 1900)로 된다. 만약 신종 *Xoides albus* Jones, 1910이 제안되면 두 종본명들은 후이물동명들이 된다.

57.4. 아속명은 무관함. 동일한 속명과 동일한 종군명칭 사이의 괄호 안에 놓인 상이한 아속명의 존재는 두 명칭들 사이의 이물동명관계와 관련이 없다.

예. *Aus* (*Bus*) *intermedius* Pavlov 및 *Aus* (*Cus*) *intermedius* Dupont의 두 종본명들은 둘 다 원래 *Aus* 속 내에서 창설되었으므로 원이물동명들이다. *Aus* (*Dus*) *intermedius* (Nomura)의 종본명은 원래

*Xus*속 안에서 창설되었으므로 두 종명 *Aus* (*Bus*) *intermedius* 및 *Aus* (*Cus*) *intermedius*의 후이물동명이다.

57.5. **속명들의 철자법 차이.** 상이한 공칭분류군에 대하여 창설된 동일한 종군명칭들(또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종군명칭들–제58조)은 동일한 속명과 조합될 때(그러나 제57조 8.1을 보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군명칭이 결합되는 속명의 철자법이 부정확한 철자법 또는 수정(제11조 9.3.2.)이라 할지라도, 이물동명들이다.

57.6. **한 글자 차이.** 제5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동일 속명과 조합되는 종군명칭들 사이의 한 글자 차이도 이물동명관계를 피하는 데 충분하다.

57.7. **아종명에 대한 종명의 우선 지위.** 동일 출판 일자를 가진 이물동명인 두 종군명칭 중에서 종에 대하여 창설된 명칭은 아종에 대하여(제24조 1) 또는 아종 분류계급으로 간주되는(제45조 6) 것에 대하여 창설된 명칭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진다.

57.8. **예외.**

57.8.1. 동일한 철자법을 가지지만 상이한 공칭속(제53조 2)에 대하여 창설된 이물동명인 속명들과 결합된(원래 또는 사후에) 동일한 종군명칭들 사이의 이물동명관계는 무시되어야 한다.

예. *Noctua* Linnaeus, 1758 (곤충강) 및 *Noctua* Gmelin, 1771 (조강)은 이물동명들이지만 *Noctua* (곤충강)속의 *variegata* Jung, 1792와 *Noctua* (조강)속의 *variegata* Quoy & Gaimard, 1830 사이의 이물동명관계는 무시된다.

57.8.2. 특정 경우의 하위후이물동명의 복위에 대해서는 제59조 2~59조 4를 보라.

제58조. 종군명칭의 변형철자법들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이한 공칭분류군에 대하여 창설되었고 다음 중 한 가지의 철자법만 다르고 유래가 동일한 종군명칭들은 이들이 칭하는 공칭분류군들이 동일한 속이나 집합군에 포함될 때 이물동명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58.1. *ae*, *oe*, *e*의 사용(예. *caeruleus*, *coeruleus*, *ceruleus*);

58.2. *ei*, *i*, *y*의 사용(예. *cheiropus*, *chiropus*, *chyropus*);

58.3. 동일 라틴어 글자 *i* 또는 *j*의 사용(예. *iavanus*, *javanus*; *maior*, *major*);

58.4. 동일 라틴어 글자 *u* 또는 *v*의 사용(예. *neura*, *nevra*; *miluina*, *milvina*);

58.5. 동일 글자 *c* 또는 *k*의 사용(예. *microdon*, *mikrodon*);

58.6. 한 자음의 기음 또는 비기음(예. *oxyrhynchus*, *oxyrynchus*);

58.7. 단자음 또는 쌍자음의 사용(예. *litoralis*, *littoralis*);

58.8. *t* 앞에 *c*의 존재 여부(예. *auctumnalis*, *autumnalis*);

58.9. *f* 또는 *ph*의 사용(예. *sulfureus*, *sulphureus*);

58.10. *ch* 또는 *c*의 사용(예. *chloropterus*, *cloropterus*);

58.11. *th* 또는 *t*의 사용(예. *thiara*, *tiara*; *clathratus*, *clatratus*);

58.12. 복합어에서 상이한 연결모음의 사용(예. *nigricinctus*, *nigrocinctus*);

58.13. 반모음 *i*를 *y*, *ei*, *ej* 또는 *ij*로 전사(예. *guianensis*, *guyanensis*);

58.14. 인명, 장소, 숙주 또는 해당 분류군과 관련된 실체를 토대로 한 소유격 어미로서, 또는 복합 종군명칭의 요소들 사이에 *i* 또는 *ii*, *-ae* 또는 *-iae*, *-orum* 또는 *-iorum*, *-arum* 또는 *-iarum*의 사용(예. *smithi*, *smithii*; *patchae*, *patchiae*; *fasciventris*, *fasciiventris*);

58.15. 접미사나 종결 앞에 *-i*의 존재 여부(예. *timorensis*, *timoriensis comstockana*, *comstockiana*).

예. *Chrysops calidus* (따뜻하다는 뜻)와 *Chrysops callidus* (총명하다는 뜻)의 종소명들은 기원과 의미가 다른 단어들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비록 위의 예들 중 한 가지에 해당하지만, 이들은 이물동명들이 아니다(제58조 7).

권고 58A. 인명 또는 지명에 토대를 둔 종군명칭. 만약 동일한 단어나 동일 의미의 단어들로부터 유래한(단어 형태가 다를지라도) 상이한 명칭이 동일 속, 유사 속, 또는 연관된 속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명명자는 새로운 종군명칭을 인명이나 지명에 토대를 두지 않아야 한다(예. *hispanus*, *hispanicus*; *moluccensis*, *moluccanus*; *sinensis*, *sinicus*, *chinensis*; *ceylonicus*, *zeylanicus*).

제59조. 후이물동명의 유효성.

59.1. **동일 속으로 판단되는 분류군들.** 두 종군 분류군들이 동일 속의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위후이물동명인 종군명칭을 무효명칭으로 처리해야 한다.

59.2. **동일 속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교체되지 않는 후이물동명.** 후이물동명관계의 경우에서 만약 하위 종군명칭이 교체되지 않았고(제60조) 관련 분류군들이 동일

속의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하나의 종군명칭이 원래 다른 종군명칭이 소속된 현존 속 내에서 제안되었을지라도 하위 명칭은 폐기되지 않아야 한다.

예. Zetterstedt (1855)는 신종 *Platyura nigriventris*를 창설하였는데, 이 종은 현재 *Orfelia*속에 위치하고 있다. 1910년에 Johannsen은 신종 *Apemon nigriventris*을 창설하였는데, 이 종은 현재 *Platyura*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종은 현재 동일 속의 종들로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nigriventris* (Johannsen)은 *Platyura*속에 들어가서 개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체명칭이 필요 없다.

59.3. **1961년 이전에 교체되었으나 동일 속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후이물동명.** 1961년 이전에 교체된 하위후이물동명은, 치환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 관련 분류군들이 동일 속의 것들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무효명칭이며, 이 경우 하위이물동명은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예. Deignan (1947)은 분류학적 근거로 조류의 속 *Muscicapa* Brisson, 1760, *Ficedula* Brisson, 1760 및 *Niltava* Hodgson, 1837을 합병하면서 *Muscicapa*를 유효명칭으로 선정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생긴 7개의 하위후이물동명들을 교체했으나, 그의 분류와 치환명칭들은 현재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되었던 종군명칭들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폐기되지 않아야 한다.

59.3.1. 만약 하나의 하위후이물동명에 대한 대체명칭의 사용이 혼란을 일으킨다면 이 사례를 심의회에 통보하여 최상의 안정성과 보편성에 기여할 유효명칭을 결정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필요하면 전권을 사용함. 제81조를 보라).

59.4. **1960년 이후에 폐기된 하위후이물동명의 복위.** 문제의 두 종이 동일 속의 것들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저자는, 다른 무효명칭일 이유가 없는 한, 1960년 이후에 후이물동명관계 때문에 폐기된 종군명칭을 유효명칭으로 복위해야 한다.

예. 1960년 이후에 *Aus niger* Smith, 1950이 *Bus*속으로 이전되어 *Bus niger* Dupont, 1940의 하위후이물동명이 되었기에 *Bus ater* Jones, 1970으로 개명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두 종이 동일 속의 것들이 아니라고 보는 저자는 *niger* Smith를 유효 종본명으로 복위시키고 *ater* Jones를 하위동물이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60조. 하위이물동명의 교체.

60.1. **치환명칭(substitute names).** 하위이물동명(제53조)은 폐기되고 적합명칭이자 잠재적 유효 동물이명(제23조 3.5)으로 교체되거나 이러한 잠재적 유효명칭이 없을 때는 새로운 치환명칭으로(제60조 3) 교체되어야 한다. 사용되지 않는 상위이물동명에 대해서는 제23조 9를 보라; 이물동명성인 과군명칭의 교체에 대

해서는 제39조 및 55조 3을 보라; 종군에서 후이물동명의 교체에 대해서는 제59조를 보라.

60.2. **동물이명을 가지는 하위이물동명.** 만약 폐기된 하위이물동명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합명칭이자 잠재적으로 유효한 동물이명들을 가지면, 이 중에서 가장 고참인 것이 그 분류군의 유효명칭이 되며(제23조 3.5), 그 자체의 저작권과 출판 일자를 가진다.

60.2.1. 이러한 명칭은 하위이물동명의 동물이명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위이물동명 대신에 유효명칭으로 보전될 수 있다.

60.3. **동물이명을 가지지 않는 하위이물동명.** 만약 폐기된 하위이물동명이 알려진 적합명칭이나 잠재적으로 유효한 동물이명을 가지지 않으면 신대체명칭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자체의 저자와 출판 일자를 가진다; 이렇게 될 때 이 명칭은 사후에 알려진 동물이명과 우선권 경합을 벌이게 될 소지가 있다.

권고 60A. 객관적 대체가 요망됨. 폐기된 하위이물동명이 부여된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이 분류학적으로 부적절(예. 제75조 5에 기술된 바와 같거나 또는 속군 이물동명의 경우 모식종이 부실하게 정의된 경우)하지 않는 한, 저자들은 신대체명칭(nomen novum)을 창설할 때 한 가지 객관적 대체(제67조 8, 72조 7)로서 그 동일한 모식을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제13장 명명법의 모식 개념

제61조. 모식화 원칙(principle of typification).

61.1. **모식화 원칙의 설명.** 과군, 속군, 종군에서 각 공칭분류군은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담명모식을 가진다. 한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의 확정은 명칭의 적용을 위한 객관적 참고 기준을 제공한다.

61.1.1. 동물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분류학적 분류군의 경계의 다양성이 어떻든, 분류군의 유효명칭은 이 경계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 담명모식으로부터 결정된다(제23조 3).

61.1.2. 모식화에 의해 제공되는 객관성은 각 분류계급의 명칭들에게 이어진다. 이 객관성은 종군에서 과군으로의 상향적 순서로 이어진다. 공칭 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은 하나의 표본 또는 일련의 표본들(정모식, 후모식, 신모식, 또는 총모식(제72조 1.2))이며, 공칭 속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은 이의 모식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의된 하나의 공칭종이고; 공칭 과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은 과군명칭이 토대를 둔 공칭속이다.

61.1.3. 한 번 확정된 담명모식은 안정적이며 명칭의 적용에 객관적 지속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한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은 이 규약의 제 규정에 맞추어 한 번 확정되면 제70조 3.2에 제시된 공칭 속군 분류군의 경우, 제74조 및 75조에 제시된 공칭 종군 분류군의 경우, 그리고 심의회가 전권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1.2. **공칭모식 분류군의 담명모식.**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은 또한 공칭모식 분류군의 담명모식이기도 하며(제37조 1, 44조 1, 47조 1), 이들 중 하나를 위한 담명모식의 확정은 또한 다른 것의 담명모식을 확정하는 것이 된다.

61.2.1. 만약 하나의 공칭분류군과 이의 공칭모식 분류군에 대하여 상이한 담명모식들이 동시에 확정되면, 상위 분류계급의 분류군에 대한 담명모식확정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61.2.2. 과군, 속군, 또는 종군에서 하나의 공칭분류군의 분류계급이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이의 명칭이 하나 이상의 분류계급에서 동시에 사용될 때, 담명모식은 변함없이 존속된다(제36조 2, 43조 1, 46조 2).

61.3. **담명모식과 동물이명관계.**

61.3.1. 만약 상이한 담명모식을 가지는 공칭분류군들이 단일의 분류학적 분류군에 해당된다면 이들의 명칭들은 그 분류군의 분류계급에서 주관동물이명들이다(그러나 반드시 부속 분류계급에서도 동물이명들이지는 않다).

예. *Psittacus elegans* Gmelin, 1788 및 *Platycercus flaveolus* Gould, 1837의 상이한 담명모식들은 단일의 분류학적 종인 호주산 앵무새에 해당된다고 간주되며, 이 중 *Platycercus elegans* (Gmelin, 1788)가 유효명칭이다. 비록 이 명칭들은 종 분류계급에서 주관동물이명들이지만 이들은 *Platycercus elegans*의 아종 분류계급에서는 동물이명들이 아니며, 각각의 유효명칭은 *Pl. e. elegans* (Gmelin, 1788)와 *Pl. e. flaveolus* Gould, 1837이다.

61.3.2. 만약 둘 이상의 객관적으로 동물이명성인 속명들이 과군명칭의 토대로 사용되었다면 이 과군명칭들은 객관동물이명들이다.

61.3.3. 만약 둘 이상의 공칭 속군 분류군들이 동일한 모식종을 가지거나, 또는 동일한 담명모식에 토대를 둔 상이한 명칭을 가진 모식종을 가진다면, 이들의 명칭들은 객관동물이명들이다.

61.3.4. 만약 둘 이상의 공칭 종군 분류군들이 동일한 담명모식을 가진다면 이들의 명칭들은 객관동물이명들이다.

61.4. 아속 또는 아종을 담명모식으로 지정하기. 만약 하나의 공칭아속이 공칭 과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으로 지정되면 이 아속은 최초로 속 분류계급으로 승격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하나의 공칭아종이 공칭 속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으로 확정되면 이 아종은 최초로 종 분류계급으로 승격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 *Planigale* Troughton, 1928 (포유강)은 *P. subtilissima* (Lönberg, 1913), *P. tenuirostris* Troughton, 1928, *P. ingrami* (Thomas, 1906) 및 아종 *P. ingrami brunnea* Troughton, 1928을 토대로 창설되었다. 원기재에서 후자 "subspecies of *ingrami*"는 "Genotype"이라는 용어로 *Planigale*속의 모식으로 지정되었다. *P. ingrami* (Thomas, 1906)가 아니라 *P. brunnea* Troughton, 1928이 원지정의 모식종이다.

제14장 과군의 모식

제62조. 적용. 이 장의 규정들은 모든 분류계급(상과, 과, 아과, 족, 아족 및 기타 상과 아래부터 속 이상의 모든 분류계급)에 동등하게 적용된다(제35조 1).

제63조. 담명모식. 공칭 과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은 "모식속"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공칭속이다; 과군명칭은 모식속의 명칭에 토대를 둔다(제29조) (또한 제11조 7, 35조, 39조 및 40조를 보라).

63.1. 동등 공칭분류군. 과군의 동등 공칭분류군들은 동일한 모식속을 가진다(제36조, 37조, 61조 2).

제64조. 모식속의 선정. 새로운 공칭 과군 분류군을 창설하고자 하는 저자는 명칭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공칭속 중의 하나를 모식속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제11조 7.1), 가장 고참인 명칭을 가지는 속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모식속의 선정은 공칭 과군 분류군 명칭의 어간을 결정한다(제29조 1).

권고 64A. 모식속은 저명해야 한다. 공칭 과군 분류군을 창설하고자 하는 저자는 가급적 해당 공칭 과군 분류군에서 저명하고 대표격인 속을 모식속으로 선정해야 한다.

제65조. 모식속의 동정.

65.1. 정확한 동정의 가정. 공칭 과군 분류군을 창설하는 저자는, 상반되는 증거가 없다면, 정확히 동정된 모식속을 가진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65.2. 오동정 또는 개념 변경. 안정성과 보편성을 위협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처리 방법이 있다.

65.2.1. 과군명칭을 창설할 때 모식속이 오동정되었음이 발견될 때(즉, 이의 모식종에 의해 정의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어서); 이 경우는 심의회에 통보되어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5.2.2. 모식속의 모식종(또는 그 모식종의 담명모식)의 확정이 결여되었음이 발견될 때; 이 경우는 심의회에 통보되어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제70조 2);

65.2.3. 모식속이 창설될 때 오동정된 모식종에 토대를 두었음이 발견된 경우, 저자는 제70조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공칭종을 모식종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만약 제70조 3의 규정들에 따른 모식종의 확정으로도 그 위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심의회에 통보하여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5장 속군의 모식

제66조. 적용. 이 장의 규정들과 권고들은 공칭속과 공칭아속(아속에 해당되는 속군의 부 divisions를 포함; 제10조 4를 보라)에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모식종을 가지지 않는 속군 수준의 집합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조 3.2, 42조 3.1, 67조 14).

66.1. 1999년 이후에 제안된 속군 수준의 생적분류군은 그 명칭이 적합명칭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모식종을 가져야 한다. 만약 생적분류군이 2000년 이전에 창설되었다면 모식종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제69조(또한 13조 3.3을 보라)에 맞도록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다.

제67조. 일반 규정.

67.1. 담명모식. 하나의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담명모식은 “모식종”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공칭종이다(제42조 3).

67.1.1. 공칭속과 이의 공칭모식 아속(제44조 1)은 동일한 모식종을 가진다(제61조 2).

67.1.2. 모식종의 명칭은, 이 명칭이 하위동물이명이거나, 하위이물동명이거나

또는 금지명칭일 때에도 변하지 않고 존속한다(제81조 2.1을 보라).

권고 67A. 용어.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담명모식을 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서 "모식종"(type species)이라는 용어 또는 다른 언어의 이와 정확히 동일한 뜻의 용어만 사용되어야 한다. 유전학에서 다른 의미로 널리 상용되는 용어 "genotype"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type species" 대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권고 67B. 모식종의 인용. 모식종의 명칭은 원래의 이명식 표기로 인용되어야 한다. 만약 모식종의 명칭이 무효명칭이거나 무효명칭인 것으로 위협받고 있으면 저자는 이의 유효 동물이명을 인용해도 된다.

예. *Astacus marinus* Fabricius, 1775는 원래 갑각류의 십각류 *Homarus* Weber, 1795속에 포함되었던 공칭종으로서, 사후에 Fowler (1912)에 의하여 *Homarus*속의 모식종으로 지정되었다. 모식종은 *Astacus marinus* Fabricius, 1775이며, 그와 같이 인용해야 한다. *Astacus marinus* Fabricius는 현재 *Cancer gammarus* Linnaeus, 1758의 동물이명이 되어 있으나, 후자는 *Homarus*속의 모식종이 아니며 그와 같이 인용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모식종의 언급이 필요할 경우 "Type species *Astacus marinus* Fabricius, 1775, a junior synonym of *Cancer gammarus* Linnaeus, 1758" 또는 "Type species *Astacus marinus* Fabricius, 1775, now regarded as a synonym of *Homarus gammarus* (Linnaeus, 1758)"와 같은 방식으로 적어야 한다.

67.2. **모식확정의 자격을 가진 종(원래 포함된 공칭종).** 하나의 공칭종은 하나의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에 원래 포함된 공칭종이라면 그 속이나 아속의 모식종으로 확정될 자격이 있다.

67.2.1. 이 규약의 의미상 "원래 포함된 공칭종"에는 원출판에 한 종이나 아종의(제45조 6 및 68조 2를 보라) 적합명칭으로 인용되어 왔거나(부정확한 철자법으로 인용된 것 포함, 제67조 6), 원출판에 과거의 오동정의 의도적 적용으로 인용되어 온(제11조 10, 67조 13 및 69조 2.4를 보라), 새로이 창설된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에 들어 있던 것들만을 포함한다.

67.2.2. 만약 소속 공칭종(제12조)이 없이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이 1931년 이전에 창설되었다면(생적분류군의 경우는 2000년 이전, 제66조 1), 최초로 사후에 명백하게 그 속에 포함된 공칭종이 유일한 원래 포함된 공칭종으로 간주된다.

67.2.3. 원출판에서 한 종의 명칭이 들어 있는 출판물을 단순히 참고한 것만으로는 한 공칭속에 대한 한 공칭종의 명백한 참고가 되지 못한다.

67.2.4. 다른 적합 종군명칭의 동물이명으로서 한 적합 종군명칭을 단순히 인용한 것은 후자 속에 전자의 공칭종을 소속시키는 것이 되지 못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7.2.5. 하나의 공칭종이 만약 의심스럽게 또는 조건부로 포함되었거나, 모호종(*species inquirenda*)으로 인용되었거나, 지위미정종(*species incertae sedis*)으로 인용되었다면 원래 포함된 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7.3. **확정과 관련된 행위의 허용.**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이 창설될 때 저자의 유일한 명명활동이나 기타 발표된 설명은,

67.3.1. 모식종이 제67조 8 및 68조에 맞게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67.3.2. 어떤 것이 제67조 2의 의미상 원래 포함된 공칭종인지(종이 없이 창설된 속군 공칭분류군의 원래 포함된 종에 대해서는 제67조 2.2를 보라)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67.4. **모식확정**(type fixation).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이 만약 원출판물에서 확정되었다면 원확정(제68조)이고, 만약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이 창설된 후에 확정되면 사후확정이다(제69조).

67.4.1. 1930년 이후(또는, 생적분류군의 경우 1999년 이후, 제66조 1)에 창설된 공칭 속군 분류군은 원출판물에서 확정된 모식종을 가져야 한다(제13조 3).

67.5. **지정**(designation). 모식종의 확정과 비교되는 용어 "지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규약에 의하면 다음은 지정이 아니다.

67.5.1. 한 속이나 아속의 예로서 한 종의 언급;

67.5.2. 한 속이나 아속의 "type" 또는 "typical"로서 특정 형질이나 구조의 언급;

67.5.3. 모호하거나 조건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정.

예.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은 설명은 이 규약의 의미상 모식지정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Aus xus* is a typical example of the genus *Aus*"; "the venation of the anterior wings of *Aus xus* is typical of the genus *Aus*; "*Aus xus* may possibly be the type of *Aus*".

67.6. **부정확한 철자법이나 부정당수정을 사용한 확정.** 만약 모식종이 확정될 때 그 명칭이 부정확한 철자법이나 부정당수정의 형태로 인용되면 이의 정확한 원철자법으로 인용된 것으로 간주된다(제69조 2.1).

67.7. **부정확한 인용의 지위.** 만약 공칭속 또는 공칭아속의 모식종을 확정하는 저자가 모식종, 모식속, 또는 모식아속의 명칭을 원래 창설될 때와 다른 명명자나 출판 일자로 잘못 인용하거나 공칭종을 최초로 명백히 그 속이나 아속에 포함

시킨 것을 잘못 인용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만약 그 공칭종이 다른 무자격 조건이 없으면, 모식종을 유효하게 확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식종을 확정할 때 의도적으로 적용된 과거의 오동정에 대해서는 제11조 10 및 67조 13을 보라.

예. 모식종 없이 창설된 *Aus* Dupont, 1790은 후세의 저자 Smith (1810)의 저작물을 통해 가장 잘 알려졌다. 만약 사후에 *Bus xus*가 "*Aus* Smith, 1810"의 모식종으로 지정되면, *Bus xus*가 모식종 지정 대상이 되는 데 하자가 없다면, 이 지정은 *Aus* Dupont, 1790의 모식종 지정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Bus xus*의 저작권과 출판 일자에 대한 오류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67.8. **신대체명칭(nomina nova)이 부여된 공칭 속군 분류군의 모식종.** 만약 한 저자가 과거에 창설된 명칭의 신대체명칭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속군명칭을 발표하거나 과거에 창설된 속군명칭을 부정당수정으로(제33조 2.3) 교체하면, 과거의 공칭분류군이나 이의 교체된 명칭이 모두 동일한 모식종을 가지며,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의 모식확정은 역시 다른 쪽에도 적용된다(제13조 3).

67.8.1. 모식종은 공칭 속군 분류군의 모식종으로 확정될 자격이 있는 공칭종이어야 한다(제67조 2).

예. *Bus* Schmidt, 1890은 하위이물동명인 *Aus* Medina, 1880 (Dupont, 1860이 아님)을 교체하기 위한 신대체명칭(nomen novum)으로서 명백히 제안되었다. 만약 *Cus xus*가 *Aus* Medina의 모식종으로 유효하게 확정되면 이는 자동적으로 *Bus*의 모식종이 된다. 이와는 달리 만약 *Aus* Medina에 대한 모식종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Cus yus*가 *Bus*의 모식종으로 유효하게 확정되면 이는 역시 *Aus* Medina의 모식종이 된다.

67.9. **오동정된 모식종.** 만약 유효하게 확정된 모식종이 오동정된 것임이 나중에 발견되면 제70조 3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67.10. **공칭 속군 분류군들의 합병.** 만약 둘 이상의 공칭 속군 분류군들이 속군 수준에서 단일의 분류학적 분류군 안에 포함되면, 이들 각각의 모식종은 변경 없이 존속된다(제23조의 지배를 받아, 이와 같이 형성된 분류학적 분류군의 유효명칭은 가장 고참인 잠재적 유효명칭을 가진 공칭분류군의 명칭이다).

67.11. **이미 모식종인 공칭종.** 하나의 공칭종이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이라는 사실이 다른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 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속군명칭들은 서로의 객관동물이명들이 된다(제61조 3.3).

67.12. **최초에 동물이명이 부여된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 만약 한 속군명칭이 유효 저작물에서 유효명칭으로 사용된 다른 명칭의 한 동물이명으로 처음 출

판되었고, 1961년 이전에 제11조 6.1의 규정들에 의해 사후에 적합명칭이 되었다면, 동물이명으로 처음 발표된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은 이 공칭속이나 공칭아속과 처음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공칭종(적합명칭으로 인용된 것)이다.

67.12.1. 만약 한 종보다 많은 공칭종이 처음 한 속군명칭과 직접 조합되어 동물이명으로 처음 발표되고 제11조 6.1에 의해 적합명칭이 되면, 이 공칭종들은 제68조 및 69조의 목적상 원래 포함된 공칭종이다.

예. Meigen (1818)은 *Ceratopogon* Meigen, 1803 (파리목)의 종들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상의 속명 *Palpomyia* 및 *Forcipomyia*를 언급함으로써, 후자의 두 속을 전자의 동물이명들로 처리했다. 이 두 속은 제11조 6.1의 규정들에 의하면 유효명칭들이다. *Ceratopogon flavipes* Meigen은 *Palpomyia*와 연관된 유일한 종으로서 단모식성(monotypy)에 의해 이 속의 자동적인 모식종이다. *Ceratopogon bipunctatus* (Linnaeus) 및 *C. albipennis* Meigen은 *Forcipomyia*와 연관된 단 두 종으로서, *Forcipomyia*의 모식종으로 사후확정될 자격이 있는 원래 포함된 종들이다. *Ceratopogon*의 모식종은 *Palpomyia*나 *Forcipomyia*의 자동적인 모식종이 아니다.

67.13. 이전에 창설된 명칭의 고의적으로 사용된 오적용이나 오동정으로 인용된 모식종.

67.13.1. 만약 한 저자가 새로운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으로서 과거에 창설된 명칭의 과거 명명자의 오동정이나 오적용의 의미로 의도적으로 원래 포함된 종을 지정하면(제67조 2.1), 이 행위로 지정된 모식종은 신공칭종으로 간주된다(제11조 10, 50조 1.2 및 70조 4); 이 종의 담명모식에 대해서는 제72조 4.2를 보라).

67.13.2. 명백히 언급된 오동정으로서 원래 포함된 종을 과거에 창설된 속군 분류군의 모식종으로 사후지정하는 것을 위해서는 제69조 2.4를 보라.

67.14. 집합군에서 무시되는 모식종. 만약 공칭 속군 분류군의 명칭이 사후에 집합군에 적용되면, 이 명칭이 집합군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이 분류군의 모식종은 무시된다(또한 제23조 7을 보라).

예. *Cercaria* O.F. Müller, 1773은 흡충강 이생목의 한 속명으로 창설되어 19세기의 여러 저자들에 의해 하나의 공칭속의 명칭으로, *C. lemna* O.F. Müller, 1773은 마치 이의 모식종인 것처럼 취급되었는데, 지금은 기지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하나의 흡충류 유생의 집합군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물이명관계상 분류학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든 관계없이 *Cercaria*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다.

제68조. 원출판물에서 확정된 모식속.

68.1. **확정 방식의 우선 순서.** 만약 제68조 2~68조 5에 제시된 방식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모식종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의(또는 하나 이상의) 종에게 자격을 부여할 경우, 유효 확정은 다음의 우선 순서를 참고하여 결정된 것이다: 첫째 원지정(original designation, 제68조 2), 둘째 단모식성(monotypy, 제68조 3), 그 다음 절대반복명칭관계(absolute tautonymy), 마지막으로 린네반복명칭관계(Linnean tautonymy, 제68조 5)이다.

권고 68A. 모식확정의 인용. 만약 이 규약에서 제시된 방식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한 종이 모식종으로 확정될 자격이 부여되면, 유효 확정만 인용될 것이 요구된다.

68.2. **원지정에 의한 모식종.** 만약 한 공칭 속군 분류군이 창설될 때 한 공칭종이 모식종으로 명백히 지정되면(제67조 5), 제70조 3의 규정들의 저촉을 받지 않으면, 이 공칭종이 모식종이다(원지정에 의한 모식).

68.2.1. 1931년 이전에 신공칭속이나 신공칭아속에 원래 포함된 둘 이상의 신공칭종들 중 하나에만 적용된 “gen. n., sp. n.”, “new genus and species”, 또는 이와 동등한 표현은, 만약 다른 모식종이 명백히 지정되지 않았다면, 원지정으로 간주된다.

68.2.2. 만약 모식종의 명백한 지정 없이 공칭 속군 분류군이 창설될 때 하나의 원래 포함된 신공칭종(제67조 2)에게 종군명칭 *typicus*, *-a*, *-um* 또는 *typus*가 부여되면, 이 공칭종이 원지정에 의한 모식종으로 간주된다.

68.3. **단모식성 모식종.** 한 명명자가 단일의 분류학적 종을 소속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공칭 속군 분류군을 창설하고 이 종에 적합명칭을 부여하면, 이와 같이 명명된 공칭종은 모식종이다. 이러한 방식의 확정은, 동물이명이나 아종 또는 부적합명칭이 인용되었든 아니든, 저자가 그 공칭 속군 분류군이 인용하지 않은 다른 종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공칭 종군 분류군이 의심스럽게 포함되었거나 동정되었든 아니든, 단모식성 확정으로 간주된다.

68.3.1. 만약 하나의 신속명의 창설과 동시에 그 속이 아속들로 구분되고, 만약 공칭모식 아속이 단일 종만 포함하면, 이 공칭종은 신공칭속의 단모식성 모식종으로 간주된다.

68.4. **절대반복명칭관계(absolute tautonymy)에 의한 모식종.** 만약 공칭 속군 분류군에 원래 포함된(제67조 2) 유효 종군명칭이나 이의 인용된 동물이명이 그 분류군의 명칭과 동일하면, 그 종본명(적합명칭일 경우)이 부여된 공칭종이 모식종이다(절대반복명칭관계에 의한 모식종).

예. 공칭속 *Aus* Smith 안에 포함된 공칭종 중에는 *Aus xus* (Brown)이 있다; *Aus xus*의 인용된 동물이명 중에는 적합명칭인 *Bus xus aus* Robinson이 있다. *Aus*의 모식종은 *Bus xus* Brown이 아니라 *Bus aus* Robinson이다.

68.5. **"린네반복명칭관계(Linnaean tautonymy)"에 의한 모식종.** 만약 1931년 이전에 창설된 공칭 속군 분류군 내에 원래 포함된 공칭종(제67조 2) 중 단 한 종의 동물이명관계에 새로운 속군명칭과 동일한 한 단어로 된 1758년 이전의 명칭이 인용되어 있다면, 이 공칭종이 모식종이다("린네반복명칭관계에 의한 모식종").

예. *Castor* Linnaeus, 1758 (비버)은 두 종을 토대로 창설되었다. 이 두 종 중에서 한 종(*Castor fiber*)의 동물이명관계에 한 단어로 된 명칭 "*Castor* Gesner pisc, 185"가 인용되었다. 그러므로 *Castor fiber* Linnaeus, 1758이 린네반복명칭관계에 의한 *Castor*속의 모식종이다.

68.6. **과거 저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오적용이나 오동정이라고 인용된 명칭을 모식종으로 확정하기.** 제11조 10 및 67조 13을 보라.

제69조. 원출판물에서 확정되지 않는 모식종. 만약 하나의 공칭 속군 분류군이 1931년 이전에 창설되었고(생적분류군의 경우에는 2000년 이전) 원출판물에 모식종 확정이 없으면(제68조), 이 조항의 규정들은 타당할 경우 제70조 및 70조 3의 규정들의 지배를 받아 적용된다.

69.1.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에 의한 모식종.** 만약 명명자가 모식종을 확정하지 않은 채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을 창설할 경우, 원래 포함된 공칭종(제67조 2) 중 하나를 사후에 지정하는 최초 저자가 그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을 유효하게 지정(사후지정에 의한 모식)하는 사람이 되며, 그 후의 지정은 모두 무효이다.

69.1.1.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확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저자가 만약 원래 포함된 공칭종 중 하나를 모식 또는 모식종이라고 언급하거나(이유가 무엇이든, 또는 옳든 그르든) 그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이 저자가 그 종을 모식종으로 인정한 것이 분명하면, 그는 이 종을 모식종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69.1.2. 문헌 기록성 출판물에 처음 이루어진 사후지정은 만약 다른 모든 사항들이 유효하다면 승인되어야 한다.

69.2. **모식확정 대상 종의 자격.** 원래 포함된 공칭종은, 이 종이 다른 속군 분류군의 모식종이거나(제67조 11) 다른 속군 분류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에도, 모식

종으로서 사후지정될 수 있다.

69.2.1. 만약 한 저자가 원래 포함된 종 중 하나의 명칭의 부정당수정이나 부정확한 철자법을 사용하여 모식종을 사후지정할 경우, 이 저자는 이 종의 정확하게 철자된 명칭으로 모식종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제67조 6).

69.2.2. 만약 한 저자가 원래 포함되지 않은 공칭종을 모식종으로 지정할 경우(또는 다른 사람의 이와 같은 지정을 용인할 경우), 그리고 동시에 이 저자가 이 공칭종을 원래 포함된 종 중 하나와만 동물이명관계로 위치시키면(제67조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행위는 후자의 종을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으로서 확정하는 것이 된다.

69.2.3. 만약 한 저자가 원래 포함된 종의 명칭 대신 신대체명칭(nomen novum)이 부여된 모식종을 지정할 경우, 이 행위는 이 원래 포함된 공칭종을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으로서 확정하는 것이 된다.

69.2.4. 만약 한 저자가 과거에 창설된 공칭종의 명백히 진술된 오동정이나 오적용으로서 원래 포함된 종을 모식종으로 사후지정할 경우, 이와 같이 지정된 종은 실제로 관련된 분류학적 종의 명칭이 부여된 공칭종이다(인용된 공칭종이 아니라).

69.3. **사후단모식성(subsequnet monotypy)에 의한 모식종.** 만약 포함된 종이 없이 창설된 한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에 단일 공칭종이 최초로 사후에 포함되면, 이 공칭종은 사후단모식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모식종으로 확정된다.

69.4. **"제외확정법(fixation by elimination)"의 배제.** 하나의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에서 원래 포함된 종들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외시키는 것 자체는 모식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권고 69A. 선정의 기준.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을 지정할 때 저자는 기재나 삽화가 충분하거나, 모식표본이 존재하거나, 모식표본에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종을 선정해야 한다. 한 종보다 많은 종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저자는 다음의 우선 순서로 선정 기준을 삼아야 한다.

69A.1. 가장 흔한 종, 의학적 또는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종, 또는 종본명이 *communis*, *vulgaris*, *medicinalis*, 또는 *officinalis*인 종을 선정해야 한다.

69A.2. 만약 유효명칭이나 원래 포함된 종 중 하나의 동물이명이 속군 분류군의 명칭과 실제로 동일한 종군명칭을 포함하거나 동일한 유래나 의미의 것이라면, 다른 뚜렷한 부당한 지적사항이 없는 한, 이 종이 모식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실질반복명칭관계"로 인한 선정).

예. *Bos taurus*, *Equus caballus*, *Ovis aries*, *Scomber scombrus*, *Sphaerostoma globiporum*, *Spinicapitichthys spiniceps*.

69A.3. 만약 원래 포함된 종 중 일부가 다른 공칭 속군 분류군으로 이전되었을 때는, 잔류하는 적당한 종이 있을 경우 이 잔류하는 종이 선정되어야 한다(“배제에 따른 선정”).

69A.4. 유생이나 미성숙 표본에 토대를 둔 종보다는 성적으로 성숙한 표본에 토대를 둔 공칭종이 모식종으로 선정되는 것이 좋다.

69A.5. 하나의 속군 분류군에 하나 이상의 종 집단이 있을 경우 가급적 큰 집단에 속하는 공칭종을 선정해야 한다.

69A.6. 기생동물 속군 분류군에서 사람이나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숙주 또는 흔하고 분포가 넓은 숙주에 기생하는 공칭종을 선정해야 한다.

69A.7.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저자가 공칭 속군 분류군을 창설할 당시에 저자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공칭종을 선정해야 한다.

69A.8. 만약 저자가 습관적으로 “전형적인”(즉 대표적인) 종을 기재하고 이와 비교하면서 다른 종들을 기재하는 것이 알려지면, 이 사실이 모식종 지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69A.9. 만약 저자가 모식종을 정해진 위치에 놓는 것이 알려지면, 이 저자가 처음 인용한 공칭종이 모식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first species rule”).

69A.10. 모든 다른 요건들이 동일하면 저작물의 쪽이나 행에서 처음 인용된 공칭종이 선정되어야 한다(“position precedence”).

제70조. 모식종의 가정.

70.1. **정확한 동정의 전제.** 명확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을 때, 다음의 경우에 저자는 종을 정확히 동정했다고 가정해야 한다.

70.1.1. 과거에 창설된 공칭종을 신공칭속이나 신공칭아속에 포함시킬 때, 또는

70.1.2. 이 종을 새로운 또는 과거에 창설된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모식종으로 확정할 때.

70.2. **모식확정의 결여.** 전의 모식종 확정이 결여되었음이 발견되면 이 확정 결여가 인정되고 사후의 확정이 유효하다. 만약 이 사후확정이 불안정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고려되면, 이 사실은 제정을 위해 심의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70.3. **모식종의 오동정.** 만약 한 저자가 모식종이 오동정되었음을 발견하면(그러나

고의적 오동정의 인용을 통해 확정된 모식종에 대해서는 제11조 10, 67조 13 및 69조 2.4를 보라), 이 저자는 안정성과 보편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음의 종을 선정하여 모식종으로 확정할 수 있다.

70.3.1. 이전에 모식종이라고 인용된 공칭종(제68조 69조), 또는

70.3.2. 오동정에 실제로 관련된 분류학적 종. 만약 후자가 선택되면, 저자는 이 조항을 언급하고 과거에 모식종으로 인용된 종의 명칭과 선택한 종의 명칭을 모두 인용해야 한다.

예. 만약 실제로 관련된 분류학적 종이 선정되면, 지정은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Type species now fixed (under Article 70.3 of the Code) as *Aus bus* Mulsant, 1844, misidentified as *Xus yus* Horn, 1873 in the original designation by Watson (1912)".

Stephens (1829)는 그의 딱정벌레 신속 *Quedius*속에 "*Staphylinus tristis* Gravenhorst"를 포함시켰다. 이후, Curtis (1837)는 이 종을 모식종으로 지적했고 그 후 이 *Quedius* 개념은 인정되어 왔다. Gravenhorst (1802)의 "*S. tristis*" 기재는 그가 신종을 다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나, 오동정으로 인하여 그는 *S. tristis* Fabricius, 1792라는 명칭을 이에 적용했으며, 이 종은 현재 반날개의 상이한 족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오랫동안의 오동정을 접한 Tottenham (1949)은 *Staphylinus levicollis* Brullé, 1832를 모식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는 "*Staphylinus tristis* Gravenhorst, 1802, nec Fabricius, 1792"의 유효 동물이명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S. tristis* Gravenhorst"는 적합명칭이 아니며 진술된 오동정도 아니고(제67조 2.1), 전문 의견 1851 (1996)에서 심의회는 용법을 유지하도록 *S. levicollis*를 모식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제정이 없으면 제70조 3.2 하에서 어떤 저자가 심의회에 제의하지 않고 *S. levicollis*를 모식종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행위는 이 규약의 이전 판에서는 허용될 수 없었다).

70.4. 고의적 오적용에 의한 모식종의 동정.

70.4.1. 과거에 창설된 공칭종의 명백히 진술된 오동정의 의미로 한 종을 신공칭속이나 신공칭아속의 모식종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1조 10 및 67조 13을 보라.

70.4.2. 과거에 창설된 공칭종의 명백히 진술된 오동정의 의미로 원래 포함된 종을 신공칭속이나 신공칭아속의 모식종으로 사후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69조 2.4를 보라.

제16장 종군의 모식

제71조. 적용. 이 장의 규정들은 아종 수준으로 간주되는 분류군을 포함하여, 공칭종이나 공칭아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제45조 6).

제72조. 일반 규정.

72.1. **표본과 관련된 용어 "모식(type)"의 사용.** 용어 "모식"은 분류학자들이 특정 종류의 표본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복합 용어로서, 이 중 일부만이 담명모식이다. 이 규약의 목적상 세 부류의 표본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72.1.1. 모식계열(type series): 명명자가 새로운 종군 분류군을 창설할 때 토대를 둔 모든 표본들(제외된 것을 제외함–제72조 4.1); 정모식 지정이 없거나 총모식 지정이 없거나, 또는 후모식의 사후지정이 없으면, 모든 표본들이 총모식들이며 이들은 공동으로 담명모식을 이루며;

72.1.2. 담명모식(name-bearing types): 담명의 기능을 가지는 표본으로서, 원래 확정되었거나(정모식–제73조 1 또는 총모식–제73조 2) 또는 사후에 지정된 것들이다(후모식–제74조 또는 신모식–제75조);

72.1.3. 기타 표본: 담명 기능이 없는 표본들(부모식–제72조 4.5, 부후모식–제73조 2.2, 74조 1.3; 이들의 정의에 대해서는 용어 해설을 보라).

권고 72A. 용어 "이성모식 (allotype)"의 사용. 용어 "이성모식"은 정모식과 반대인 성의 표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성모식은 담명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72.2. **2000년 이전에 창설된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모식계열에서 담명모식의 확정.** 2000년 이전에 창설된 공칭 종군 분류군은 모식계열 중에서(제72조 4) 원래 확정되었거나(제73조) 사후에 확정된(제74조) 담명모식을 가질 수 있다(담명모식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신모식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제75조를 보라).

72.3. **1999년 이후에 창설된 공칭 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은 원래 확정되어야 한다.** 1999년 이후의 새로운 종군 분류군의 제안(신대체명칭의 부여는 제외–제16조 4, 72조 7)에는 정모식(제16조 4)(제73조 1을 보라) 또는 총모식(제73조 2)의 확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총모식의 경우, 명명자가 신 분류군이 토대를 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정한 표본들만 총모식으로 확정된다.

72.4. **모식계열(type series).**

72.4.1.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모식계열은 명명자가 신공칭분류군에 포함시킨(직접 또는 문헌 참고를 통하여) 모든 표본들로 구성되며, 명명자가 명시적으로 모식계열에서 제외한 것(제72조 4.6)이나 분명한 변이체라고 언급한 것(예. 명칭, 글자 또는 번호를 부여하여), 또는 모호하게 그 분류군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제외한다.

72.4.1.1. 2000년 이전에 창설된 공칭종이나 공칭아종에 대해서는 출판되었거나 출판되지 않은 모든 증거가 어떤 표본이 모식계열을 이루는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예. Linnaeus (1758)는 복족류 *Conus imperialis*를 기재하면서 과거의 저자들이 기재하고 도해한 표본들을 인용하였다. 모식계열에는 인용한 표본들뿐 아니라 현재 웁살라와 런던에 보존된 다른 두 개의 표본도 포함되어 있는데, 후자의 표본들은 린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가 그 공칭종을 창설할 때 *C. imperialis*로 인지했다는 증거가 있다.

72.4.2. 만약 한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과거 저자의 출판된 오동정에 토대를 두었다면, 이 저자가 표본을 직접 참고했든 삽화나 기재를 참고했든, 모식계열은 오동정된 표본 또는 표본들을 포함한다(그러나 권고 73B를 보라).

72.4.3. 최초에 하위동물이명으로 발표되었으나 제11조 6의 규정들에 의하여 1961년 이전에 유효명칭으로 된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모식계열은 발표된 동물이명관계 속에서의 그 명칭으로 인용된 표본(들)이며, 만약 인용된 것이 없다면 한 분류군의 명칭으로서 채택될 때의 명칭이 부여된 것이다.

72.4.4. 부적합명칭과 연관된 기재나 정의에 대한 문헌 참고로 적합명칭이 된 공칭 종군 분류군(제12조 2.1, 13조 1.2)의 모식계열은 그 부적합명칭이 부여된 표본(들)을 구성하거나 포함한다.

72.4.5. 명명자가 정모식을 지정하면(제73조 1) 모식계열의 다른 표본들은 부모식이 된다. 부모식은 총모식이 되지 않으며, 정모식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때 후모식 선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74조); 그러나 이들은 신모식 선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권고 75A를 보라).

72.4.6. 한 공칭 종군 분류군을 창설할 때 명명자가 "총모식"(이 용어로서, 또는 "cotypes"이나 "types"이라는 용어 중 하나만을 사용하여)을 지명하거나 "정모식 및 부모식"을 함께 지명하면서(또는 "allotype"이나 "cotypes"라는 용어와 함께 "typ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추가로 다른 표본들을 기록하면, 후자의 표본들에 대한 이 분리된 언급은 모식계열에서 이들을 제외한다는 명시이다.

72.4.7. 공칭 종군 분류군이 창설된 저작물이 아닌 다른 출판 저작물이나 출판되지 않은 박물관의 카탈로그 또는 라벨에서의 "Type" 또는 이와 동등한

표현의 단순한 인용은 한 표본이 반드시 이 장에서 말하는 모식의 종류나 모식확정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권고 72B. 모식계열이나 총모식에서의 제외 선언.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모식계열(또는 총모식)에서 어떤 표본들을 제외시킨다는 표현은 명확해야 한다. 가령, 전부가 아닌 일부를 도해하는 것 또는 하나 또는 일부 표본들의 표본 번호를 지시하는 것 자체는 도해하지 않았거나 번호가 붙여지지 않은 것을 제외하는 것이 못된다.

72.5. **담명모식의 자격.** 다음의 것들만이 한 공칭 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이나 담명모식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다:

72.5.1. 하나의 동물, 동물의 일부분, 동물의 화석화된 활동치성물의 예, 또는 1931년 이전에 창설된 명칭이 근거를 둔 현생 동물의 활동치성물;

72.5.2. 하나의 개체로부터 무성번식 또는 영양번식으로 생긴 단일의 실체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의 군체(예. 산호와 같은 자포동물의 군체), 또는 이러한 군체의 일부분;

72.5.3. 화석의 경우, 천연 치환물, 천연 인흔(impression), 천연 주형(mould), 한 동물이나 군체의 천연 주조(cast), 또는 이들의 일부;

72.5.4. 원생생물의 현생종에서, 생활사의 상이한 단계를 나타내는 직접 관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본(하판토모식)(제73조 3);

72.5.5. 담명모식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고 동정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체가 들어 있는, 현미경 관찰을 위한 표본(예. "모식슬라이드", type slide).

권고 72C. 중요한 개체들의 표시. 하나 이상의 표본이 들어 있는 현미경 관찰용 표본(모식슬라이드)에 토대를 두고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을 창설하는 명명자는 가능한 한 분류학적 형질을 나타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표본의 위치를 직접 표시해야 한다.

72.5.6. 삽화나 기재 또는 삽화나 기재에 대한 문헌 참고에 토대를 둔 공칭 종군 분류군의 경우, 담명모식은 도해되거나 기재된 표본(들)이다(삽화나 기재 자체가 아니라).

72.6. **이미 담명모식인 표본.** 하나의 표본이 이미 한 공칭 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이거나 담명모식의 일부라는 사실이 다른 공칭 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이나 담명모식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72.7. **신대체명칭(nomina nova)이 부여된 공칭 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 만약 명명자가 이전의 적합명칭의 대체명칭으로 새로운 종군명칭을 명시적으로 제안하

면 두 명칭들은 객관동물이명들이다; 특정 표본들에 대한 신대체명칭(nomen novum)의 동시 제한이나 동시 적용, 상반된 모식확정, 또는 신대체명칭에 대한 상이한 분류학적 용법이 있을지라도 이 두 공칭분류군은 동일한 담명모식을 가진다.

예. *Mus terraereginae* Alston, 1879는 *Mus leucopus* Rafinesque, 1818의 후이물동명인 *Mus leucopus* (Gray, 1867)에 대한 신대체명칭(nom. nov.)이었다; 따라서 두 명칭은 동일한 담명모식을 가진다. *Betpakodiscus aliminimus* Brenckle, 1993은 *Archaediscus minimus* Reitlinger, 1950 sensu Grozdilova & Lebedeva (1953)에 대한 신대체명칭(nom. nov.)으로서 창설되었다. *B. aliminimus*와 *A. minimus*는 동일한 담명모식을 가지지 않는데, 이는 "*Archaediscus minimus* Grozdilova & Lebedeva, 1953, non Reitlinger, 1950"이 적합명칭이 아니기 때문이다(*B. aliminimus* Brenckle, 1993의 담명모식은 제72조 4.4의 규정들에 따라 확정되었다).

72.8. **공칭모식아종의 담명모식.** 공칭종과 이의 공칭모식아종은 동일한 담명모식을 가진다(제47조 1, 61조 2).

72.9. **공칭 종군 분류군들의 합병.** 만약 둘 또는 그 이상의 공칭 종군 분류군이 그 종군의 동일 분류계급의 단일 분류학적 분류군 안에 포함되면, 이들 각각의 담명모식은 변함없이 존속된다(제23조의 지배를 받아, 이와 같이 형성된 분류학적 분류군의 유효명칭은 가장 고참인 잠재적 유효명칭을 가진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명칭이다).

72.10. **담명모식의 가치.** 정모식, 총모식, 후모식 및 신모식은 모든 공칭 종군 분류군(간접적으로는 모든 동물 분류군)의 학명의 담명자들이다. 이 모식표본들은 동물 명명에서 객관성을 제공하는 국제적 참고 기준이며, 그 자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권고 72D~72F를 보라). 이 모식표본들의 안전한 보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과학을 위해 기탁해야 한다.

권고 72D. 담명모식의 라벨 쓰기. 정모식, 총모식, 후모식 및 신모식은 이들의 지위를 확실히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지되어야 한다.

권고 72E. 라벨 자료의 출판. 정모식, 후모식, 신모식, 총모식을 지정하는 명명자는 표본과 함께 있는 라벨에 표기되는 모든 자료를 출판하여, 장래에 표본의 인지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권고 72F. 연구 기관의 책임. 담명모식을 소장하는 모든 기관은

72F.1. 명확하게 표지하여 담명모식으로서 확실히 인지되도록 해야 하며;

72F.2. 안전한 보존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72F.3. 연구를 위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72F.4. 소장하는 담명모식의 목록을 출판해야 하고;

72F.5. 문의가 왔을 때 가능한 한 담명모식에 관한 자료를 밝혀야 한다.

제73조. 원출판물에서 확정된 담명모식(정모식 및 총모식).

73.1. 정모식(holotype). 정모식은 원출판물에서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이 토대를 둔 단 하나의 표본이다(군체성 동물과 원생생물에서의 정모식이 될 자격이 있는 표본에 대해서는 제72조 5.2, 72조 5.4, 73조 3을 보라).

73.1.1.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을 창설할 때 원출판물에서 단 하나의 표본을 정모식 또는 “the type” 또는 이와 동등한 표현을 하면, 이 표본이 원지정으로 확정된 정모식이다.

73.1.2. 만약 공칭 종군 분류군이 단일 표본에 토대를 두고, 원출판물에서 그와 같이 진술되거나 암시되면, 그 표본이 단모식성(monotypy)으로 확정된 정모식이다(권고 73F를 보라). 만약 그 분류군이 2000년 이전에 창설되었으면 그 저작물 자체 밖에서 나온 증거가 그 표본의 동정을 돕는 데 참작될 수 있다(제72조 4.1.1).

73.1.3.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의 정모식은 원저작물 안에서만, 원저자에 의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정모식이라는 용어의 오사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제74조 6을 보라).

73.1.4. 단일 표본의 삽화를 정모식으로 지정한 것은 도해된 표본의 지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표본이 현존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 지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73.1.5. 만약 사후 저자가 여러 구성요소로 된(예. 구분된 몸의 부분들) 정모식이 하나의 동물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발견하면 적절한 인용과 함께 이질적인 부분이 정모식에서 제외될 수 있다(하판토모식에서 하나보다 많은 분류군의 구성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제73조 3.2).

권고 73A. 정모식의 지정.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을 창설하는 명명자는 이의 사후 인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모식을 지정해야 한다.

권고 73B. 저자가 연구한 표본이 선호됨. 저자는 문헌상의 기재나 삽화로 알게 된 표본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연구한 표본을 정모식으로 지정해야 한다.

권고 73C. 정모식의 자료.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을 창설하는 저자는 정모식에 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료 중에서 해당되는 것과 저자가 알고 있는 것을 발표해야 한다.

73C.1. 크기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관 또는 부분의 크기;

73C.2. 상세한 채집지 정보(지리적 좌표 포함), 채집 일자, 라벨에 적힌 기타 자료;

73C.3. 해당될 경우, 성(sex);

73C.4. 발생 단계, 분류군이 한 개보다 많은 계급을 포함할 경우, 계급;

73C.5. 채집자 이름;

73C.6. 표본 보존 장소, 부여된 표본 번호 또는 표본 등록 번호;

73C.7. 기생충의 경우, 숙주 종의 명칭;

73C.8. 현생 육상 분류군의 경우, 정모식이 채집된 곳의 미터로 표기된 해발 고도;

73C.9. 현생 수생 분류군의 경우 정모식이 채집된 곳의 미터로 표기된 수심;

73C.10. 화석 분류군의 경우, 정모식이 채집된 곳의 지질 연대 및 잘 확립된 평면으로부터 미터로 표기된 상하 층위.

권고 73D. 부모식의 라벨 적기. 정모식의 라벨이 작성된 후, 모식계열의 나머지 표본들(제72조 4.5)은 원래의 모식계열의 구성원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부모식"이라고 라벨되어야 한다.

권고 73E. "동모식" (cotype) 용어 사용 금지. 저자는 총모식 또는 부모식의 의미로 동모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권고 73F. 정모식 추정 금지. 2000년 이전에 창설된 공칭 종군 분류군에서 정모식이나 총모식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칭 종군 분류군이 하나 이상의 표본에 토대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저자는 정모식을 추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들이 총모식인 것처럼 가정하여 후모식을 지정해야 한다(또한 제74조 6을 보라).

73.2. **총모식**(syntypes). 총모식은 모식계열에서 집단적으로 담명모식을 구성하는 표본들이다. 총모식은 총모식이라고 명기될 수도 있다(허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제73조 2.1을 보라); 2000년 이전에 창설된 공칭 종군 분류군에서(제72조 3) 정모식이나(제72조 1) 후모식(제74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모식계열의 모든 표본들이 자동적으로 총모식이 된다. 공칭 종군 분류군이 총모식을 가지면, 이들 총모식 모두가 담명모식의 구성 인자들로서 명명법상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73.2.1. 총모식은 "동모식(cotype)" 또는 "모식(type)"(모두 총모식의 의미로 사용됨)으로 라벨된 표본들이나, 라벨이 없는 표본들, 명명자가 보지 않았

으나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을 창설할 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바탕을 둔 과거에 출판된 기재나 삽화의 근간이 되는 표본들을 포함할 수 있다(제72조 5.5).

73.2.1.1. 공칭분류군이 1999년 이후에 창설되었을 때 명명자가 신 분류군의 토대라고 명기한 표본들만이(제72조 3) 총모식이다.

73.2.2. 후모식의 유효한 지정(제74조) 이전에 총모식이었던 표본들은 이 지정 이후에는 더 이상 총모식이 아니다; 이 행위로 이 총모식들은 후모식과 부후모식(paralectotypes)이 된다(권고 74F를 보라); 부후모식은 담명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후모식이 분실 또는 파손될 때 총모식으로 회귀되지 않는다.

73.2.3. 만약 한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모든 총모식이 동일한 출처(제76조 1)를 가지면 이는 모식산지이다; 그러나 만약 총모식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장소에서 나온 것이면(상이한 지층 포함), 모식산지는 이 모든 출처를 포함한다. 후모식이 사후지정될 경우 모식산지는 이 후모식이 나온 장소이다(제76조 2).

73.3. 하판토모식(hapantotypes). 현생 원생생물의 공칭 종군 분류군이 창설될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현미경 관찰용 표본 또는 배지로 구성된 하판토모식(용어 해설을 보라)이 지정될 수 있다. 이 하판토모식은 공칭분류군의 정모식이다.

73.3.1. 하나의 하판토모식은 다수의 분리된 개체들로 구성되지만 분할될 수 없으며 후모식 선정으로 제한될 수 없다; 그러나

73.3.2. 만약 하나의 하판토모식이 한 종 이상의 종군 분류군의 개체들을 포함하는 것이 발견되면, 단일의 종군 분류군의 개체들만 남을 때까지 나머지 구성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다(하나 이상의 개체들로부터 유래한 구성요소들로 구성된 것이 발견된 정모식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3조 1.5를 보라).

제74조. 모식계열 중에서 사후에 확정된 담명모식(총모식에서 나온 후모식).

74.1. 후모식 지정. 총모식 중에서 지정된 후모식은 공칭 종군 분류군 명칭의 유일한 담명자가 되며 이 명칭 적용의 기준이 된다(하판토모식의 경우는 예외-제73조 3).

74.1.1. 후모식의 유효 지정은 그 담명 분류군의 유일한 담명모식으로서의 표본 지위를 확정한다; 사후의 후모식 지정은 유효성이 없다.

74.1.2. 후모식의 유효 지정은 해당 분류군 명칭의 이전의 적용상의 제한을 해소한다.

74.1.3. 후모식의 유효 지정은 해당 공칭분류군의 총모식이었던 모든 표본들의 총모식 지위를 박탈한다(제73조 2.2); 이 표본들은 부후모식(paralectotypes)이 된다.

74.2. **총모식이 아니었던 후모식.** 후모식으로 지정된 표본이 총모식이 아니었던 것임이 증명되면, 이 표본은 후모식 지위를 상실한다.

74.3. **지정 대상의 개체.** 후모식은 일반적 설명으로 집합적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후모식 지정은 단일 공칭분류군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야 하며 해당 분류군의 객관적 대상으로서 정의를 가져야 한다.

예. Smith는 Dupont의 출판물들에 기재된 채집물들을 재검토하면서, Dupont이 기재한 각 신종에서 "저자의 동정 라벨을 가진 표본이 모식표본이다" 또는 "그 출판물에서 목록에 처음 기록된 표본을 후모식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Smith의 이러한 행위는 유효한 후모식 지정이 되지 못한다.

74.4. **삽화나 기재를 이용한 지정.** 한 총모식의 삽화나 기재를 후모식으로 지정한 것은 도해되거나 기재된 표본의 지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표본이 존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지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74.5. **2000년 이전의 후모식 지정.** 2000년 이전에 이루어진 후모식 지정에서 "lectotype"이라는 용어나 이의 정확한 번역 또는 동등한 표현(예. "the type")은 그 분류군의 담명모식으로 작용하도록 사용되었음이, 또는 저자는 이를 위해 하나의 특정 총모식을 모호하지 않게 선정했음이 분명하다. 원출판물이 해당 분류군이 하나보다 많은 표본에 토대를 두었음이 드러나면 사후의 "정모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저자가 그 용어를 잘못 사용할 때 담명모식 역할을 하도록 모식계열에서 그 특정 표본을 선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지 않은 한, 유효한 후모식 선정을 이루지 않는다.

74.6. **2000년 이전의 "holotype" 또는 "the type"의 추정에 의한 후모식 지정.** 하나의 공칭 종군 분류군이 단일 표본에 근거를 두었으며 원기재가 총모식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지도 규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약 원기재가 하나보다 많은 표본에 토대를 두었다고 사후에 고려되면, 2000년 이전에 그 종군 분류군이 단일 모식표본에 토대를 두었다는 추정을 발표한 최초 저자는 그 표본을 후모식으로 지정했다고 간주된다.

74.6.1. 표본이 “holotype” 또는 “the type”이라는 추정은

74.6.1.1. 한 표본의 삽화나 기재의 참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제74조 4);

74.6.1.2. 제74조 3에 해당되는 개체일 것이다.

예. 화석동물인 유대“사자” *Thylacoleo carnifex* Owen, 1858은 *Encyclopaedia Britannica*에서 간략히 기재되었다. 이 기재에는 두개골 그림이 들어 있다. 비록 하악 치열 상태가 언급되었으나 이것이 동일 표본의 한 부분을 이루지 않았다는 정보는 없었다. McCoy (1876)는 신공칭종 *Thylacoleo oweni*를 기재하면서 Owen이 기재한 두개골은 종 *T. carnifex*의 최초로 기재된 type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두개골은 정모식으로 널리 인정되었다. 원기재는 부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 대악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토대를 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이 오늘날 알려졌다. 두개골이 “the type”이라는 McCoy (1876)의 추정은 후모식확정을 이룬다고 간주된다.

74.7. **1999년 이후의 후모식 지정.** 1999년 이후에 후모식 지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74.7.1. “후모식” 용어나 이를 정확히 번역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 “lectotypus”, 그러나 “the type”은 안 된다).

74.7.2. 지정된 표본의 인지를 보장하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74.7.3. 지정의 분류학적 목적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권고 74A. 이전의 제한과의 일치. 후모식 지정에서 명명법의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자는 이전에 허용된 명칭 적용의 분류학적 제한과 일치하도록 활동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중시해야 한다.

권고 74B. 도해된 표본의 우선권. 후모식을 지정하는 저자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총모식 중에서 삽화로 그려진 표본을 선택해야 한다.

권고 74C. 후모식에 대한 자료. 후모식을 지정하는 저자는 식별에 필요한 개체의 특징을 기재하는 것 외에, 권고 73C에 열거된 자료를 출판해야 한다.

권고 74D. 여러 수장품의 총모식 중에서의 선택. 후모식은 가능하면 공공 연구기관의 수장품에 있는 총모식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며, 공칭 종군 분류군의 총모식의 수가 가장 많은 연구기관, 또는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명명자가 연구했던 수장품이 보관된 연구기관, 또는 그 명명자의 모식표본들 대다수를 소장하는 기관이 좋다.

권고 74E. 채집지의 확인. 후모식을 선택할 때 저자는 가능하면 알려진 채집지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채집지가 알려진 총모식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권고 74F. 부후모식 (paralectotypes). 후모식을 지정하는 저자는 이전의 총모식들을 “부후모식”이라고 명료하게 라벨 기입해야 한다. 부모식이 그러하듯, 부후모식은 담명 지위는 가지지 않으나 신모식 선정의 대상이 된다.

제75조. 신모식(neotypes).

75.1. 정의. 신모식은 담명모식 표본(즉, 정모식, 후모식, 총모식 또는 이전의 신모식)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한 저자가 공칭분류군을 객관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 규약에서 정한 조건하에서 지정한 공칭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이다. 부모식이나 부후모식의 지속적 존속 자체는 신모식 지정을 막지 않는다.

75.2. 예외 사항. 신모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큐레이션 절차의 일로 지정되지는 않아야 하며, 이와 같은 신모식 지정은 무효이다.

예. 만약 한 저자가 지정될 당시에 정체성이 모호하지도 않고 어떤 복잡한 동물학적 문제도 없는 종인 *Xus albus* Smith의 신모식을 지정하다면 그런 의도의 "신모식"은 담명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75.3. 자격 조건. 신모식 지정은 특별한 필요성이 있고 이 필요성이 명시적으로 설명되고 이의 지정이 다음 세부사항을 갖추어 출판될 때만 유효하게 된다:

75.3.1. 한 공칭분류군의 분류학적 지위 또는 모식산지를 밝힌다는 명백한 목적을 위해 지정한다는 설명.

75.3.2. 다른 분류군과의 차이라고 저자가 생각하는, 신모식 지정 대상의 공칭종군 분류군의 형질에 대한 설명, 또는 이러한 설명에 대한 문헌 참고;

75.3.3. 지정된 표본의 인지를 위한 충분한 자료와 기재;

75.3.4. 담명 모식표본(들)(즉, 정모식, 후모식, 모든 총모식, 또는 이전의 신모식)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다고 저자가 믿는 이유와 이 표본(들)의 탐색 과정;

75.3.5. 원기재나 다른 자료를 보아 신모식이 과거 담명모식으로 알려진 것과 일치한다는 증거; 그러나 만약 명명법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경우 신모식은 다른 성이나 생활사 단계에 토대를 둘 수 있다.

75.3.6. 신모식이 실질적으로 거의 원래의 모식산지로부터 채집되었다는 증거(제76조 1) 및 해당되는 경우, 원래의 담명모식과 동일한 지질학적 층위나 동일 숙주 종에서 채집되었다는 증거(또한 제76조 3 및 권고 76A.1을 보라);

75.3.7. 담명모식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연구를 위해 접근을 허용하며, 연구용 수장품을 관리하는, 저명한 과학 기관 또는 교육 기관의

이름을 명기하면서 신모식이 이 기관의 자산임을 또는 출판 직후 그렇게 된다는 진술.

75.4. **우선권.** 한 공칭 종군 분류군에 대하여 이 조항의 제 규정에 맞추어 출판된 최초의 신모식 지정은 유효하며, 심의회가 전권으로(제78조 1) 사후지정한 것 외의 다른 사후지정은 유효성이 없다(또한, 과거의 담명모식이 재발견될 경우의 신모식의 지위에 대해서는 제75조 8을 보라).

75.4.1. 만약 유효하게 지정된 신모식이 분실 또는 파손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신모식을 지정할 경우, 새로운 신모식은 이 조항의 규정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권고 75A. 신모식의 선정. 저자들은 분류학적 필수 사항이 결여된 자료, 표본 상태의 불량, 분류군들이 혼합되었을 가능성 등과 같은 뚜렷한 부정적 사유가 없는 한, 현존하는 부모식이나 부후모식 중에서 신모식을 선택할 것이 권장된다. 모든 사항이 동일하면 모식계열 중에서 산지모식(topotype, 용어 해설을 보라) 표본이 우선되어야 한다.

권고 75B. 전문가의 자문. 신모식을 지정하기 전에 저자는 제안한 지정이 해당 동물군의 전문가들의 심한 반대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5.5. **동정 불가능한 담명모식의 신모식으로의 교체.** 한 저자가 한 공칭 종군 분류군의 분류학적 정체성이 현존하는 담명모식으로 결정되기는 불가능하고(즉, 모호명칭 *nomen dubium*) 그로 인해 안정성과 보편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저자는 심의회로 하여금 전권으로(제81조) 현존하는 담명모식을 폐기하고 신모식을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 암모나이트 일종 *Cycloceras laevigatum* M'Coy, 1844의 정모식에는 중요한 식별 형질들이 결여되어 있었다. 요청에 의하여, 심의회는 전권으로 이 표본의 모식 지위를 폐기하고 신모식을 지정하였다(전문 의견 1720(1993)).

75.6. **신모식에 의한 성행용법의 보존.** 한 공칭 종군 분류군의 현존하는 담명모식이 명칭의 성행용법과 분류학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정성과 보편성이 위협받음을 발견하는 저자는 성행용법(제82조)을 유지하면서 심의회에 요구하여 전권으로 현존하는 담명모식을 폐기하고(제81조) 신모식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예. *Aradus caucasicus* Kolenati, 1857(노린재목)의 유일한 현존 모식표본이 다른 종의 표본임을 발견한 Kerzhner & Heiss(1993)는 심의회의 전권으로 *A. caucasicus*의 신모식 지정을 통해 두 종의 명칭의 성행용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은 전문 의견 1783(1994)에서 승인되었다.

75.7. **1961년 이전에 지정된 신모식의 지위.** 1961년 이전에 출판된 신모식 지정은 만

약 당시에 이 조항의 제 규정을 이행하였다면 그 출판 일자부터 효력을 가진다; 만약 이 규정들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 지정은 무효이다.

권고 75C. 무효 지정. 1961년 이전에 무효인 신모식 지정을 출판한 저자는 가능한 한 다른 저자가 동일한 공칭 종군 분류군의 신모식을 지정하기 전에 이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권고 75D. 과거 무효 "신모식"의 우선. 만약 무효 신모식 지정이 1961년 이전에 출판되었으면, 당시에 지정된 표본은 동일한 공칭 종군 분류군의 신모식이 유효하게 지정될 때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75.8. **재발견된 과거 담명모식의 지위.** 만약 신모식이 지정된 후, 분실되었다고 생각되었던 공칭 종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정모식, 총모식, 후모식, 또는 이전의 신모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면 이 발견에 대한 출판물에서 재발견된 표본(들)은 담명모식이 되며, 신모식은 폐기된다(심의회가 신청을 따라 신모식이 담명모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제76조. 모식산지(type locality).

76.1. **정의.**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모식산지는 담명모식이 포획, 채집, 또는 관찰된 지리적(해당될 경우, 층위적) 장소이다; 총모식이 있고 후모식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모식산지는 이들 모두의 장소들을 포괄한다(제73조 2.3).

76.1.1. 만약 인위적 방법으로 운반된 뒤에 포획이나 채집이 이루어졌으면 모식산지는 담명모식 또는 이의 야생 조상이 비자연적 이동을 시작한 장소이다.

권고 76A. 모식산지.

76A.1. 모식산지(모식 평면, 모식숙주, 및 유사 용어들)를 규명하고 명확히 할 때, 저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76A.1.1. 원 재료에 부수되는 자료;

76A.1.2. 채집자의 기록, 여행 경로, 또는 개인적 통신;

76A.1.3. 분류군의 원기재;

76A.1.4. 최후의 수단으로서, 다른 설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분류군의 분포 범위 안의 채집지, 혹은 그 분류군이라고 일컬어지는 표본들의 채집지.

76A.2. 모식산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 수정되어야 한다.

76.2. 후모식에 의한 모식산지 결정. 모식산지에 관한 출판된 이전의 설명과 관계없이 후모식의 유래 장소가 해당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모식산지가 된다(권고 74E를 보라).

76.3. 신모식에 의한 모식산지 결정. 모식산지에 관한 출판된 이전의 설명과 관계없이 신모식의 유래 장소가 해당 공칭 종군 분류군의 모식산지가 된다.

제17장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제77조. 심의회와 심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원천인 국제단체의 관계.

77.1. 권한의 원천.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는, 이의 모든 권한과 조직이 국제동물학대회(International Congresses of Zoology)나 이의 위임 계승자들의 결의로 부여되는, 영구적 단체이다.

77.2. 차후의 위임. 제17차 국제동물학대회는 이 규약에 관한 권한과 기능 및 심의회의 조직을 국제생물과학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IUBS)에 위임하였다. 이 위임에는 이 조항에서 정한 조건하에 다른 국제동물학자 단체에 권한과 기능을 위임할 권한도 포함된다.

77.3. 위임의 조건.

77.3.1. 한 국제단체로부터 다른 국제단체로 위임되는 경우에, 이 규약과 심의회 조직규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심의회는 새로운 국제단체의 동의를 얻어 동물명명법 분과의 규정을 만들고, 심의회 회원을 선출하며, 심의회의 규약 개정 제안(제90조를 보라)과 조직규정(제84조 1을 보라)을 검토하고, 심의회의 활동사항을 이 국제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77.3.2. 국제동물학자 단체는 기능의 행사를 위해, 합의된 규정들을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77.3.3. 심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조항하에서 국제단체에 의한 위임은 없어야 한다.

77.3.4. 이 조항하에서 위임을 행사하는 단체가 심의회의 전문 의견으로 그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심의회는 위임을 중단하고 다른 국제동물학자 단체에 위임을 양도할 수 있다.

77.3.5. 이 조항하에서, 심의회에 제시되는 제안은 우편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심의회 회원의 유효 투표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7.4. 심의회의 조직규정. 심의회는 조직규정의 규제를 받는다(제77조 1)(또한 제84조를 보라).

77.5. 과도 기간. 위임이 끝난 뒤의(제77조 3.1에 의해서 위임 및 77조 3.4에 의해서 종결) 시기에, 심의회는 이 규약 및 조직규정하에 그 기능을 지속해야 하며, 이전의 단체에 가장 최근에 보고한 뒤의 기간에 위임받은 단체가 이미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 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심의회에 우연한 결석이 생기면 절차에 따라 선거해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제78조. 심의회의 권한과 의무.

78.1. 전권(plenary power). 심의회는 제81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이 장과 다음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에 규약의 규정 적용을 중단할 권한을 제9차 국제동물학대회(1913)의 결의로 부여 받았으며, 이후의 대회들에 의해 차후의 규약들에서 승인되었다. 후속 조치는 이 전권하에 심의회에서 결정되며, 이 결정은 전문 의견(제80조 2)으로서 발표된다.

78.2. 특수 권한(special powers).

78.2.1. 심의회는 제79조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동물적합명칭목록(*List of Available Names in Zoology*)을 제정할 수 있으며, 목록의 일부를 채택할 수 있다(동물적합명칭목록 안의 명칭들의 지위 및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에 대해서는 제79조 4를 보라).

78.2.2. 이 규약의 어느 조항상, 저자가 명명 문제를 심의회에 제기하여 그 결정을 요구하면, 심의회는 관련 조항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결정하고 전문 의견(제80조 2)에 그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78.2.3. 심의회는 주도적으로(제83조) 또는 처리를 요구받을 때 동물명명법적 문제에 대하여 규정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전문 의견(제80조 2)에 그 판정을 제시할 수 있다.

78.3. 규약의 개정.

78.3.1. 심의회는 규약의 개정 제안이 있을 때 조직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검토해야 한다.

78.3.2. 심의회 유효 투표자의 2/3의 찬성으로 한 규정 제정 제안이 중대한 개

정이 아니라 단순히 규정을 명료화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면 제80조 1의 규정에 따라 선고(Declaration)를 발행할 수 있다(규약의 임시 수정).

78.3.3. 심의회는 규약의 중대한 변경이 되는 제안에 대하여 선고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78.4. 기타 책무. 심의회는

78.4.1. 심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재검토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78.4.2. 전문 의견에서 심의회의 제정 대상이었던 명칭과 저작물을 관련 공식 목록(*Official Lists*) 및 공식 색인(*Official Indexes*) 안에 기록해야 하며(공식 수정 포함);

78.4.3. 동물명명법과 관련된 사안과 일반 현안을 동물명명법공보(*Bulletin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발표하여 동물학자들에게 보고해야 하고;

78.4.4. 심의회의 상부 권위 기구인 국제단체에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제77조);

78.4.5. 심의회와의 협의하에 국제단체가 정한 기타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9조. 동물적합명칭목록(*List of Available Names in Zoology*). 국제동물학자 단체(국제 대회, 국제 학회, 국가나 지역사회의 협회, 국제생물과학연합 학술회원 등)는 심의회와의 협의하에 심의회가 주요 분류학 분야(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을 채택하기를 제안할 수 있다. 심의회는 이 제안을 검토할 것이고 제안한 단체 및 심의회 회의의 결정에 따라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을 채택할 수 있다.

79.1. 제안의 양식. 심의회에의 제안은 채택을 위해 제안하는 부분목록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79.1.1. 분류학적 영역, 분류계급, 시기(예. 양서강,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설된 종군의 명칭(완전한 출판 일자, 즉 연도, 월, 일)) 등과 같은 제안의 범위를 명기해야 하고;

79.1.2. 명단에 나오는 각 명칭에 대하여 창설된 저작물에 대한 문헌 참고, 해당 저자, 출판 일자 및 그 지위(기지 우선권과 다를 경우 우선 지위 포함)를 제시하야 하며;

79.1.3. 명단에 나오는 각 명칭에 대하여,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종군명칭의 경우 만약 모식표본의 식별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 명칭이 정모식, 총모식, 후모식 또는 신모식에 토대를 두었는지, 모식확정 시 기록된 기탁 장소(기탁되었을 경우)는 어디인지를 설명해야 하고(그러나 명부 작성 목적상 후모식이나 신모식 지정은 될 수 없다)(제74조 7, 75조 3);

79.1.4. 명단에 나오는, 심의회 제정의 대상이었던(제80조, 81조) 명칭에 대하여 관련 전문 의견과 이 전문 의견에서 결정된 명칭의 지위를 제시해야 하며;

79.1.5. 해당될 경우, 제안의 범위를 넘어서 명칭들의 이물동명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79.2. 심의회에 의한 통보, 상담 및 투표에 관한 필요조건.

79.2.1. 국제동물학자 단체가 부분목록을 제안할 때 심의회는 이의 협의회를 통해 특별위원회(조직구성 제10조)를 임명하여 제안자와 상담해야 한다.

79.2.2. 제안을 접수한 심의회는

79.2.2.1. 동물명명법공보에 제안을 공지하여 제안 단체, 부분목록의 제안 범위, 동물학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제안 부분목록의 복사물(지면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의 원본, 그리고 차후 12개월 동안 동물학자들이 제출한 초청 논평의 세부사항을 제시해야 하고;

79.2.2.2. 제안에 관련된 분류학적 분야의 저작물을 출간하는 학술지에 출판되도록 공지사항을 투고해야 하며;

79.2.2.3. 특별위원회에 제안을 제시하여 이 제안에 대한 논평을 접수하고, 제안자나 기타의 사람들과 상담하며, 제79조 2.2.1에 언급된 공지의 발표일자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정 제안이나 제안의 폐기 권고를 검토해야 하고;

79.2.2.4. 수정 제안 속에 원래의 제안이 제출되기 전 5년 이내에 창설된 명칭이 들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79.2.2.5. 특별위원회로부터 수정 제안을 접수한 뒤 이에 대한 공지와 원래의 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 제안에 대한 논평 초청을 발표해야 하고(제79조 2.2.1, 79조 2.2.2);

79.2.2.6. 접수한 논평(있을 경우)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논평을 참작하여

제안된 부분목록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제안을 폐기할 것인지를 조직 규정(제12조) 및 전권의 표결에 관한 심의회 부칙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

79.3. **부분목록의 발효일자 및 접근성.** 심의회는 동물명명법공보에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의 채택 결정에 대한 공지를 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급적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

79.3.1. 채택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기 전에, 심의회는 새로 채택된 부분목록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획득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공지 안에 이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79.3.2. 심의회에 의해 채택된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은 심의회가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공지한 동물명명법공보가 출판된 일자부터 발효된다.

79.3.3. 공지는 심의회가 채택한 공표될 부분목록의 제목과 범위를 밝혀야 한다(분류학 분야 및 해당 일자 포함).

79.4. **동물적합명칭목록 내에 명기된 명칭, 철자법, 적합 일자 및 모식의 지위.**

79.4.1. 채택된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 내에 나오는 명칭은 유효명칭으로 간주되며 목록에 기록된 철자법, 일자,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상반되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79.4.2. 채택된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에 나오는, 명칭이 부여된 공칭분류군은 그곳에 기록된 담명모식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을지라도).

79.4.3. 채택된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의 범위(분류학 분야, 분류계급, 해당 기간) 안에 목록화되지 않은 명칭은 이전에 적합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물명명법상 아무런 지위도 가지지 않는다.

권고 79A. 이전 적합명칭의 인용. 만약 한 저자가 분류학적, 역사적 목적으로 심의회가 채택한 관련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적합명칭이 아닌 명칭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 이 명칭이 동물명명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혀야 한다.

79.5. **동물적합명칭목록에 나오는 명칭의 지위를 수정하는 심의회의 권한.** 만약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고 동물적합명칭목록에의 가입이 혼란을 야기할 때만 심의회는 전권을 사용하여(제81조) 그 가입을 수정하고 전문 의견에 이의 제정을 발표한다(제80조 2).

79.5.1. 가입 수정이 동물명명법공보에 발표된 일자부터 해당 명칭은 지위, 철자법, 적합성의 일자 및 저작권을 가지며, 가입 수정에 나타난 것처럼 공칭 분류군은 담명모식을 가진다.

79.5.2. 목록에 나오는 명칭들의 지위는 심의회에 의해서만 전권을 사용하여 수정될 수 있다는 필요 사항은 1931년 이전에 발표된 공칭 속군 분류군의 모식종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저자가 이를 지정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동물적합명칭목록에 기록된 총모식 중에서 후모식을 지정하는 것이나(제74조) 신모식 지정이 필요한 상황에서(제75조) 신모식을 지정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권고 79B. 동물적합명칭목록 내의 명칭에 대한 후모식이나 신모식을 지정하는 저자에 대한 요청. 동물적합명칭목록 내 명칭의 공칭분류군에 대하여 후모식이나 신모식을 지정하는 저자는 출판 후 가급적 신속하게 이 사실을 심의회에 통보해 주기를 요청한다.

79.6. **동물적합명칭목록에 누락된 명칭을 추가하는 심의회의 권한.** 만약 채택된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의 범위 안에 있는 이전의 적합명칭이 동물적합명칭목록에 누락되어 있다고 심의회가 결정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심의회는 전권을 사용하여 그 부분목록에 적절히 삽입하고 이를 전문 의견에 기록할 수 있다. 이후 그 명칭의 적합성은 복구된다.

제80조. 심의회 활동의 지위. 심의회는 이 규약이 요구하는 활동의 결과로서 선고, 전문 의견, 공식 목록, 공식 색인을 출판할 수 있고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을 채택하고 출판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된 활동의 지위 및 공식 목록과 공식 색인 안의 명칭과 저작물의 지위는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80.1. **선고(Declarations).** 심의회가 발표한 선고는 규약의 규정 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권한을 가진 국제단체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된다.

80.2. **전문 의견(Opinions).** 개별 저작물, 명칭 또는 명명활동에 대한 규약의 적용에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심의회는 전문 의견에 제정을 제시하고

80.2.1. 규약이 어떻게 적용되거나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거나

80.2.2. 안정성과 보편성을 위하여 전권을 사용하여(제81조) 특별 사안의 규약 적용을 면제해주고 후속 조치를 설명한다.

80.3. **전문 의견의 발효일자.** 전문 의견 속의 제정은 심의회가 동물명명법공보에 이

를 발표한 즉시 효력을 가진다.

80.4. **전문 의견 속의 오류나 누락의 수정.** 오류나 누락(참고문헌 오류, 필기 오류, 공식 목록이나 공식 색인에 보존명칭이나 금지명칭의 기입 누락 등)에 대한 공식 수정은 이 오류나 누락이 제정이나 이의 결과를 부정하지 않는 한 심의회에 의하여 표결없이 발표될 수 있다. 만약 이 제정이 오류나 누락에 의해 부정되면 심의회는 이 사안을 재심의하고 추가적인 전문 의견을 발표한다.

80.5. **전문 의견의 해석.** 전문 의견은 심의회에 닥친 특수 사안에만 적용되며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외의 결론이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80.6. **공식 목록 내의 저작물, 명칭 및 명명활동의 지위.** 심의회는 공식 목록과 공식 색인에 개별 명칭이나 저작물에 대한 전문 의견의 효력을 발표한다. 공식 목록 안의 명칭이나 저작물의 경우:

80.6.1. 공식 목록에 가입된 명칭은 적합명칭이다.

80.6.2. 공식 목록에 가입된 명칭의 지위는 전문 의견의 공식 수정(제80조 4)을 비롯한 관련 전문 의견(들) 내의 제정의 대상이 된다; 이의 지위의 기타 모든 양상은 규약의 정상적 적용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명칭이 동물적합명칭목록에서 다른 지위가 주어지면 후자의 지위가 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제80조 8).

80.6.3. 명칭은 추가적 자격 조건 없이 공식 목록에 등록될 수 있다.

80.6.4. 만약 공식 목록에 가입된 명칭이 다른 적합명칭의 동물이명이라면(공식 목록 안에 있든 없든), 이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심의회가 달리 제정했거나 제정하지 않는 한 규약의 정상적 적용으로 결정된다.

80.6.5. 동물명명법상 적합저작물 공식 목록(*Official List of Works Approved as Available for Zoological Nomenclature*)에 가입된 저작물에 나타나는 명칭이나 명명활동은 규약의 규정들의 지배를 받으며 동물명명법상 그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심의회의 규제 대상이 된다.

80.7. **공식 색인 내의 저작물, 명칭 및 명명활동의 지위.** 심의회는 공식 목록과 공식 색인 내의 개별 명칭과 저작물에 대한 전문 의견의 효력을 발표한다. 공식 색인 내의 명칭이나 저작물의 경우:

80.7.1. 공식 색인에 가입된 저작물, 명칭, 명명활동은 관련 제정(들)에서 부여된 지위를 가진다.

80.7.2. 공식 색인에 가입된 저작물에 나타나는 명칭이나 명명활동은 심의회가 전권으로 달리 제정하지 않은 한 동물명명법상의 적합성이나 유효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은 심의회가 그 저작물이 비출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제정하지 않은 한 동물명명법과 관련된 자료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80.8. 동물적합명칭목록과 공식 목록 안의 명칭들에 대하여 심의회가 허용한 상반된 지위. 동물적합명칭목록, 공식 목록, 또는 전문 의견에 포함된 한 명칭에 대하여 심의회가 상반된 지위를 부여할 경우, 심의회가 달리 제정하지 않은 한(제79조 5), 동물적합명칭목록에서 부여된 지위가 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

80.9. 심의회의 이전의 결정. 특정 저작물, 명칭, 명명활동과 관련하여 심의회가 내린 제정은 심의회의 동의 없이는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제81조. 전권 행사.

81.1. 목적 및 범위. 심의회는 조직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한 규약의 규정들의 적용이 안정성과 보편성을 침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하면, 이 적용을 변경하는 전권을 가진다. 이와 같은 혼란을 막고 명명법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심의회는 전권을 사용하여 명칭, 모식확정이나 다른 명명활동, 출판을 보존하거나 전면적, 부분적 또는 조건부로 금지하거나 어느 것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적합화하고, 교체를 확정할 수 있다.

81.2. 지도 원칙. 전권을 사용할 때, 심의회는 비록 이 권한 행사가 제한받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향한다.

81.2.1. 만약 두 명칭들이 이물동명들일 경우 고참인 이물동명이 완전금지(totally suppressed)되고, 즉 우선권 원칙과 이물동명 원칙의 두 가지 원칙의 목적상 금지되고, 신참 이물동명이 유효명칭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완전금지된 종군명칭은 적합명칭으로서 잔류하면서(제10조 6) 속이나 아속의 모식종명이 될 수 있다(제67조 1.2).

81.2.2. 만약 두 명칭들이 객관동물이명들이면, 고참 동물이명이 이물동명 원칙의 목적상으로는 금지되지 않은 채, 부분금지(partially suppressed), 즉 우선권 원칙 한 가지 목적상 금지될 수 있다.

81.2.3. 만약 두 명칭들이 주관동물이명들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81조 2.2에

서와 같이, 고참 동물이명이 우선권 원칙 한 가지의 목적상 금지되거나 조건금지(conditionally suppressed)되어,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81.2.3.1. 그 명칭이 부여된 분류군이 명확하다고 판단되거나,

81.2.3.2. 신참 명칭이 부여된 분류군의 부속 분류군(예. 한 과 내의 아과 또는 한 속 내의 아속)의 유효명칭일 때.

예. 나비 속명 *Argynnis* Fabricius, 1807과 *Argyreus* Scopoli, 1777에서, 심의회의 전권(전문 의견 161 (1945))에 의해 후자는 조건부로 금지되고 전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Argyreus*는 *Argynnis*와는 분명히 다른 한 속에 대하여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Argynnis* 내의 한 아속의 유효명칭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적합하며 공칭모식 아속과도 분명히 다르다.

81.2.4. 만약 심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전권 행사를 거부하면 전문 의견 속의 제정은 사용될 명칭과 취해야 할 활동(있을 경우)을 명시해야 한다.

제82조. 심의 중인 사안의 지위.

82.1. **성행용법의 유지.** 심의회에 의해 심의되고 있는 사안은 심의회의 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명칭의 성행용법(용어 해설을 보라)은 유지되어야 한다.

82.2. **심의 개시 일자.** 한 가지 사안이 접수되었다는 공지가 동물명명법공보에 발표되는 일자부터 그 사안이 심의회에 의해 심의되고 있다고 간주된다.

제83조. 심의회의 의무 및 재량권. 심의회는 규약 위반의 검색, 신청 안건의 자료 보완이나 입증, 능력 범위 내에서의 어떤 활동을 개시할 재량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제84조. 조직규정 및 부칙. 심의회 회원 자격, 임원, 이사회, 선거, 투표 절차, 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은 심의회의 조직규정과 부칙에 포함되어 있다.

84.1. **조직규정의 수정.** 조직규정은 이 규약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수정될 수 있다 (제90조).

84.2. **부칙의 수정.** 심의회는 조직규정에 설명된 절차를 거쳐 부칙을 제정, 수정, 중지한다.

제18장 규약을 지배하는 규정

제85조. 제목과 저작권. 이 조문들과 권고들의 제목은 국제동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이다. 저자는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Zoological Nomenclature)이다.

권고 85A. 규약의 인용. 규약을 인용하는 저자는 판본(현 판본은 제4판이다), 저작권(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출판 일자, 사용한 언어로 공식 원본의 출판자를 밝혀야 한다(제86조 2 및 87조를 보라).

제86조. 규약의 발효일자 및 효력.

86.1. 발효일자. 이 규약의 현 판본(제4판)은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86.1.1. 만약 저자가 제23조 9, 65조 2.3 또는 70조 3 하에 명칭의 사용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면, 사후의 저자는 이 활동을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폐기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회는 그 활동을 승인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그 활동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86.1.2. 만약 저자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당시 발효되고 있던 규약 제3판(1985)의 제 규정하에 제안한 명칭이나 명명활동이 들어 있는 저작물의 출판을 위해 투고하였으나 그 저작물이 1999년 12월 31일 이후까지 출판되지 않으면, 그 명칭과 명명활동이 제4판의 변경된 규정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되지는 않아야 한다. 심의회는 그 명칭과 명명활동을 유효화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그 활동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86.2. 원본의 효력. 이 규약의 영문 및 불문 원본은 공식 원본이며 효력, 의미 및 권한이 동일하다(또한 제87조를 보라).

86.3. 과거 규정 및 규약의 효력. 국제동물명명규칙(International Rules of Zoological Nomenclature) 및 국제동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의 과거 판본에 담긴 동물명명법 지배 규칙 및 규약에 영향을 주는 수정안은 현 판본에서 재확정하지 않은 한 무효이며, 이후 여기에 밝힌 대로이다.

권고 86A. 1999년에 출판을 위해 투고된 신명칭 및 모식확정. 2000년 1월 1일(이 규약의 현 판본의 출판

일자) 이전에 발표되지 않아서 담명모식의 신명칭이나 새로운 확정의 제안이 무효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999년에 투고된 저작물의 저자와 편집자는 그 저작물이 현 판본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권고한다.

제87조. 공식 원본. 심의회는 심의회가 결정하는 조건하에서 다른 언어로 이 규약이 출간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승인된 문건들은 모두 공식적이며 영어나 불어 원본과 효력, 의미, 권한이 동등하다(제86조 2). 공식 원본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이 문제는 심의회에 제기되어야 하며, 심의회의 해석이 최종 확정이다.

제88조. 규약의 적용. 1758년 이전에 출판된 명칭이나 명명활동은 동물명명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3조). 1757년 이후에 출판된 동물학적 명칭, 저작물, 명명활동(이보다 전에 출판된 저작물 속의 자료는 이용할 수 있음)은 이 규약의 제 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제89조. 규약의 해석.

89.1. **단어와 표현의 의미.** 이 규약을 번역할 때 용어 해설에 나온 단어와 표현의 의미를 이 규약의 목적상 그 의미로 취해야 한다.

89.1.1. 이 규약과 용어 해설에서 사용된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의심이나 곤란이 생길 때 질문은 심의회에 제시되어야 하며, 심의회의 판정이 최종 확정이다.

89.2. **권고, 예, 제목 및 부록의 지위.** 권고, 예, 모든 제목과 부록은 이 규약의 법정 원본의 일부가 아니다.

제90조. 규약의 개정. 이 규약은 국제동물학대회의 위임 권한을 가진 국제동물학자 단체가 이 권한을 심의회에 위임하고(제77조), 심의회에서 나와 이 국제단체에 제출되고 승인된 권고에 작용함으로써만 개정될 수 있다(제78조 3, 80조 1).

용어 해설

가설적 개념 hypothetical concept. 출판 시 과거 또는 현재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을 포함하지 않고 추측이든 아니든 오직 저자의 마음 속에만 있는 일종의 분류학적 개념(제1조 3.1).

간주(看做)하다 deem. 시비(是非)에 관한 사안을 고려 또는 제정(裁定)하다.

강제적 변경 mandatory change. (1) 제34조 1이 요구하는 과군명칭 어미의 철자 변경. (2) 제34조 2가 요구하는 종본명 또는 아종본명 어미의 변경.

객관동물이명(客觀同物異名) objective synonym. 동일한 담명모식을 가지는 공칭분류군을 칭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동물이명들 중 각각의 것, 또는(과군 분류군과 속군 분류군의 경우) 명칭 자체가 객관적으로 동물이명인 담명모식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동물이명 중 각각의 것.

객관의, 객관적인 objective. 개인적 견해 사항이 아닌, 실증적 진실인. "주관의(subjective)"와 반대의 뜻인 단어.

견본 인쇄물 preprint. 집합적 또는 누적적 저작물의 한 부분으로 차후의 재발행에 앞서 자체적인 명기(각인 일자)된 출판 일자를 가지고 출판되는 저작물이다. 견본 인쇄는 동물명명법의 목적상 출판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계(界) kingdom. 분류학적 계층에서 가장 높은 분류계급(이 규약의 이전 판에서는 계 분류계급에서 단일 분류군 "Animalia"를 일컬었으나, 오늘날에는 널리 수용되지는 않고 있다).

계급 caste. 사회성 곤충에서 특정 종이나 아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한 집단으로서 이들은 동일 종 또는 아종의 다른 집단과는 형태적으로 다르고 흔히 기능적으로도 다르다(예. 벌에서 일벌, 수벌, 여왕벌이 있다).

공식 개정 Official Correction. 이전에 발표된 전문 의견(Opinion)의 오류와 누락 사항에 대한 심의회의 개정9 제80조 4). 또한 지시를 보라.

공식 목록 *Official List*. 심의회가 출판하고 관리하는 네 가지 목록 제목의 약칭으로서, 심의회의 전문 의견으로 규제된 적합저작물과 명칭이 인용되어 있다. 이 목록들에 있는 저작물, 명칭, 명명활동의 지위에 대해서는 제80조 6을 보라. 이 목록들의 완전한 제목은 다음과 같다.

동물명명법상 적합저작물 공식 목록 *Official List of Works Approved as Available for Zoological Nomenclature*.
동물 과군명칭 공식 목록 *Official List of Family-Group Names in Zoology*.
동물 속명 공식 목록 *Official List of Generic Names in Zoology*.
동물 종본명 공식 목록 *Official List of Specific Names in Zoology*.

공식 색인 *Official Index*. 심의회가 출판하고 관리하는 네 가지 색인 제목의 약칭으로서, 심의회의 규제로 거부된 저작물과 명칭이 인용되어 있다. 이 색인들에 인용된 명칭 및 인용된 저작물 안의 명칭과 명명활동의 지위에 대해서는 제80조 7을 보라. 이 색인들의 완전한 제목은 다음과 같다.

동물명명법의 폐기 및 무효 저작물 공식 색인 *Official Index of Rejected and Invalid Works in Zoological Nomenclature*.
동물학의 폐기 및 무효 과군명칭 공식 색인 *Official Index of Rejected and Invalid Family-Group Names in Zoology*.
동물학의 폐기 및 무효 속명 공식 색인 *Official Index of Rejected and Invalid Generic Names in Zoology*.
동물학의 폐기 및 무효 종본명 공식 색인 *Official Index of Rejected and Invalid Specific Names in Zoology*.

공식 원본 official text. 언어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 규약에서 심의회가 승인한 원본. 모든 공식 원본은 동등한 효력과 의미 및 권위를 지닌다(제87조).

공칭분류군(公稱分類群) nominal taxon. 적합명칭이 부여된 분류군(예. Mollusca, Diptera, Bovidae, *Papillio*, *Homo sapiens*)의 개념. 과군, 속군, 종군 내의 각 공칭분류군은 담명모식에 기초를 둔다(속군과 종군에서는 모식이 실질적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칭모식 분류군(公稱模式分類群) nominotypical taxon. 과군, 속군 또는 종군 각각의 하위 분류계급에서 분류학적 분류군의 담명모식을 가지는 공칭분류군. 제37조, 44조, 47조를 보라.

과(科) family(복수, families). (1) 과군 내의 상과 및 아과 사이의 한 분류계급. (2) 과 분류계급의 한 분류군.

과군(科群) family group. 분류계급 중에서 그 안의 명칭들이 모두 이 규약에 의해 규제를 받는 최상위 분류계급 집단. 과군에는 상과, 과, 아과, 족, 그리고 상과 아래의 다른 분류계급이나 아족과 같은 속군 이상의 분류계급이 포함된다(제35조 1).

과군명칭 family-group name. 과군 분류군의 학명.

과명(科名) family name 또는 name of a family. 과 분류계급의 분류군의 학명. 이 명칭들은 접미사 -dae를 가진다.

광의(廣義)의 *sensu lato* (*s. lat.*, 또는 *s. l.*). "넓은 의미의"의 뜻을 나타내는 라틴어 용어. *sensu stricto* (*s. str.*)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다.

구별하다 differentiate. 어떤 사물(예. 분류군)을 다른 것과 구분하는 일(제13조). 또한 정의를 보라.

권고(勸告) Recommendation. 이 규약의 조항에 제시된 권고성 설명. 권고는 조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강제성은 없고, 강제 규정들과는 구별된다.

규약(規約) Code. (1) 국제동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의 약칭. (2) 국제동물명명규약이나 다른 국제명명규약의 기준(즉, 세균학이나 식물학에서 사용되는 학명에 대한 규정).

규정 provisions (단수 provision). 조문(rules)의 동의어.

그것 자체 as such. 인용된 본체(예. "a photograph as such"는 저작물에 인쇄된 것이 아닌,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을 말한다).

금지(금지하다) suppression (suppress). 심의회의 전권 사용을 통한 일종의 판정으로서, (1) 하나의 저작물이 명명법적 목적상 비출판으로, 또는 그 안의 명칭과 명명활동을 부적합으로 간주하거나, (2) 하나의 적합명칭이 (a) 이물동명 처리를 위해서만 적합하거나(부분금지) 또는 (b) 우선권과 이물동명 처리의 목적상 부적합하기(완전금지)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판정이며; 그러나 완전금지된 종군명칭은 여전히 공칭속이나 공칭아종의 모식종을 표시할 수 있고(제81조 2.1); 또는 (3) 하나의 적합명칭이 공인된 조건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판정이다(예. 특정 최근 명칭을 동물이명으로 고려하지 않을 때) (조건금지).

금지 저작물 supressed work. 심의회가 미출판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 저작물.

기재(記載) description. 표본 또는 분류군의 분류학적 특징에 대해 설명한 글(제12조, 제13조).

기형표본(畸形標本) teratological specimen. 비정상 표본 또는 기형물(제1조 3.2).

다수 원철자법 multiple original spellings. 동일 명칭에 대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원철자법(제32조 2.1).

단모식성(單模式性) monotypy. (1) 명명자가 단일의 분류학적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종에 적합명칭을 부여하면서 이 단일 종을 토대로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을 창설하는 경우(이와 같이 명명된 공칭종이 단모식성 모식종이다)(제68조 3); 또는 (2) 명명자가 단 하나의 표본에 공칭 종군 분류군의 근거를 두면서 이를 명백히 정모식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단모식성 정모식; 제73조 1.2를 보라).

담명모식(擔名模式) name-bearing type. 공칭분류군의 명칭을 짓는 데 객관적 참고 기준이 되는 모식속, 모식종, 정모식, 후모식, 총모식 계열(집단적으로 담명모식을 구성한다).

동등 원칙 Principle of Coordination. 과군, 속군 또는 종군 내에서 어느 한 분류계급의 분류군에 대하여 창설된 명칭은 동일한 담명모식을 토대로 한 다른 분류계급의 분류군과 동일한 명명자와 출판 일자로 동시에 창설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원칙(제36조, 43조, 46조를 보라).

동모식(同模式) cotype. 총모식이나 부모식을 일컫는,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로서 이 규약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물명명법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용어어다(권고73E).

동물 animal. 이 규약의 목적을 위하여 "동물"이라는 용어는 후생동물(Metazoa)을 포함하며 명명법적 목적으로 동물로 취급할 경우에는 원생생물 분류군도 포함한다.

동물 분류군 zoological taxon. 동물의 자연 분류군(명칭이 부여되었거나 부여되지 않은).

동물명명법 zoological nomenclature. 동물 분류군의 학명들의 체계 및 이 명칭들의 형성, 처리, 사용에 관한 제 규정.

동물명명법공보 *Bulletin of Zoological Nomenclature*.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의 공식 간행물.

동물이명(同物異名) synonym. 동일 분류계급 동일한 분류학적 분류군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명칭들 중 각각의 것.

동물적합명칭목록 *List of Available Names in Zoology*. 제79조에 의거 심의회에 의해 채택된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에 대한 누적성 용어.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 Part of the *List of Available Names in Zoology*. 제79조의 지배하에 심의회가 채택한 주요 분류학적 범주의 적합명칭 목록.

동물학 공식(公式) zoological formulae. 한 분류 집단 전체를 통하여 표준화된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서 그 안의 분류군이 해당 집단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도록 적합명칭을 개조하는 것(제1조 3.7). 동물학 공식은 이 규약의 제 규정에서 제외된다. 과군명의 접미사는 분류계급을 나타내지만, 분류 집단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동물학 공식을

이루지는 않는다.

동물학 명칭 zoological name. 이명식 명명법의 동물 분류군의 학명.

동물학자 zoologist. 직업에 관계없이,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

동물활동 치성물(致成物) work of an animal. 동물체의 일부가 아닌, 동물 활동의 결과물(예. 굴, 구멍, 혹, 둥지, 서관, 고치, 족적). 이 용어는 흔적화석(**생적분류군**을 보라)에 적용되나 내부 주형, 외인흔(外印痕), 대체물과 같은 화석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의 활동에 기초를 둔 명칭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제1조 2.1, 제1조 3.6, 제10조 3, 제12조 2.8을 보라.

등사인쇄, 유인(油印) mimeographing. 철필로 쓰고 잉크로 밀어 원본(및 그림)의 수많은 복사물을 만드는 방법.

라틴어의, 라틴어 Latin. 고대 라틴어와 중세 라틴어를 포함한다.

라틴어화하다 latinize. 라틴어가 아닌 단어에 라틴어 형태와 특징을 부여하는 것(라틴어 어미 또는 라틴어 접미사를 포함하여).

린네반복명칭관계 Linnaean tautonymy. 1931년 이전에 창설된 신속명 또는 신아속명과 원래 이 속에 포함된 종이나 아종 중 하나의 한 동물이명이라고 인용된 1758년 이전의 명칭이 동일한 철자로 이루어진 것(제68조 5).

망각명칭(忘却名稱) *nomen oblitum* (**복수**, *nomina oblita*). 제23조 9.2의 효력으로 인하여 현재의 성행용법상 최근의 이물동명이나 동물이명에 앞서서 우선 지위를 갖지 못하고 1899년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 명칭에 대하여 200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라틴어 용어("잊힌 이름"이란 뜻)로서; 이 망각명칭에 앞선 우선 지위를 가지는 최근의 명칭을 보호명칭(*nomen protectum*)이라고 한다. 망각명칭이라는 용어는 또 1961년 11월 6일부터 1973년 1월 1일 사이에 당시의 이 규약 판의 제23b조에 의해 거부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던 상위동물이명에도 적용된다(제23조 12.1). 망각명칭들은 적합명칭으로 잔존한다; 이 명칭들이 유효명칭으로 사용되도록 조정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규약의 제23조 9, 23조 12를 보라.

명명 지위 nomenclatural status. 명칭, 명명활동 또는 저작물의 명명법상의 지위(즉, 이것들의 적합성 또는, 명칭의 경우 이의 철자법, 공칭분류군의 모식화, 다른 명칭들에 대한 상대적인 우선 지위).

명명법(命名法) nomenclature. 명칭의 체계 및 명칭의 형성과 사용에 관한 제 규정들.

명명활동(命名活動) nomenclatural act. 한 학명의 명명 지위나 한 공칭분류군의 모식화에

영향을 주는 저술 활동.

명사구(名詞句) noun phrase. 하나의 명사와 다른 명사 또는 변형된 형용사의 조합으로 구성된 복합어로서, 이 복합어는 하나의 명사와 동격으로 처리된다; 만약 이 형용사가 종군명칭의 마지막 요소일 경우 이의 어미는 이것이 변형시키는 명사의 성에 의해 결정된다(종군명칭과 조합되는 속군명칭의 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1조 2.1에서 그 예를 보라.

명칭 name. (1) (일반) 통상적으로 특정 실체(예. 사람, 장소, 사물, 개념)를 나타내고 식별하는 데 쓰이는 단어 또는 정돈된 단어들의 배열. (2) 학명과 동의어. (3) 종군 분류군 명칭의 요소: 속명, 아속명, 종본명, 아종본명을 보라.

명칭 또는 명명활동의 우선권 priority of a name or nomenclatural act. 적합성 일자에 의해 확정되는 서열.

모식(模式) type.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복합 용어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특정 종류의 표본이나 분류군을 일컫는다.

모식 숙주(宿主) type host. 한 공칭종 또는 공칭아종이 담명모식이 공생 또는 기생하는 숙주 종(권고 76A.1).

모식 층면(層面) type horizon. 한 공칭종이나 공칭아종이 채집된 지질 층면.

모식계열(模式系列) type series. 새로운 공칭 종군 분류군에 대하여 명명자가 기초를 둔 제72조 4 및 73조 2에서 규정한 표본 계열. 정모식 지정이 없을 경우 이 표본 중 하나가 담명모식(후모식)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후모식 지정이 이루어지까지는 모식계열의 모든 표본은 총모식이며 모두가 집합적으로 담명모식을 이룬다. 모식계열 외의 표본들은 명명자가 명백히 제외시키거나 분명한 변이 개체라고 언급했거나 또는 모호하게 해당 분류군에 포함시킨 것이다.

모식산지(模式産地) type locality. 한 공칭종 또는 공칭아종의 담명모식을 포획, 채집 또는 관찰한 지리적(해당될 경우, 지질 층위) 장소(제76조 1, 권고 76A).

모식속(模式屬) type genus. 공칭 과군 분류군의 담명모식인 공칭속.

모식종(模式種) type species.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의 담명모식인 공칭종.

모식표본(模式標本) type specimen. 이 규약의 이전 판에서 사용된, 정모식, 후모식, 신모식, 또는 총모식을 일컫는 용어. 또한 일반적으로 모식계열의 한 표본에 대하여 사용된 용어.

모식화(模式化) typificaton. 한 분류군 명칭의 적용에 필요한 객관적 참고 기준을 제공하

기 위하여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을 확정하는 것.

모식화 원칙 Principle of Typification. 과군, 속군, 종군의 각 공칭분류군은 그 명칭의 적용에 객관적, 잠재적 객관적 참고 기준이 되는 확정된 담명모식을 가진다는 원칙(제61조).

모호명칭(模糊名稱) *nomen dubium* (복수, *nomina dubia*). "용도 불명의 명칭"이란 뜻의 라틴어 용어.

무자격명칭 *nomen nudum* (복수, *nomina nuda*). 1931년 이전에 출판되었을 경우 제12조에 합당한 명칭, 또는 1930년 이후에 출판되었을 경우 제13조에 합당한 명칭을 일컫는 라틴어 용어. 무자격명칭은 적합명칭이 아니며, 따라서 동일한 명칭이 이와 동일하거나 다른 개념으로 차후에 다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창설 활동에 대하여 저작권과 출판 일자가 부여되며, 이보다 먼저인 무자격명칭의 출판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무효명명활동 invalid nomenclatural act. 이 규약의 각 규정상 유효하지 않은 취득 가능한 명명활동.

무효명칭 invalid name. 적합명칭 중에서 (1) 객관적으로 무효인 명칭(즉, 하위이물동명이거나 잠재적 유효명칭의 하위객관동물이명, 또는 이 규약의 제 규정상 폐기된 명칭, 또는 심의회가 금지 판정을 내린 명칭)이거나, 또는 (2) 주관적으로 부적합명칭인 것(주관적으로 하위동물이명이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특정 분류학적 분류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무효의 invalid. 적합명칭이나 적합명명활동 중에서 이 규약상 유효하지 않은 것.

문헌 참고 bibliographic reference. 출판물을 가리키는 발표의 인용.

미출판 저작물 unpublished work. 제8조 및 제9조의 의미상 출판되지 않는 저작물, 또는 심의회가 미출판이라고 판정한 저작물.

미확정종(未確定種) *species inquirenda* (복수, *species inquirendae*). 분류학적 위치가 모호하여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종.

반복명칭관계(반복명칭의) tautonymy (tautonymous). 속군 분류군 명칭과 이에 소속된 종이나 아종 중 하나의 종군명칭이 동일한 단어로 된 것.

발음부호 diacritic mark. 한 글자의 차별되는 억양을 지적하는 기호(액센트, 갈고리형 부호 cedilla, 물결표 tilde, 움라우트 등).

발췌 인쇄물, 분책, 추인본(抽印本) separate. 정기간행물, 서적이나 기타 대형 저작물에 들

어 있는 연구 결과물의 배포 목적의(통상 저자 개인적인) 복제물(증쇄나 발췌물)로서, 대형 저작물로부터 분리된 것이지만 그 자체의 출판 일자(각인 일자)는 가지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발췌 인쇄물의 진보된 배포 방법은 동물명명법적 목적상 출판을 구성하지 않는다.

발표물(publication). "출판물"의 동의어.

발표일자, 출판 일자 date of publication. 한 저작물(또한 이에 포함된 명칭과 명명활동)의 복제물이 구입 또는 무료 배포로 취득할 수 있게 된 날짜. 만약 실제적 출판 일자가 알려지지 않으면 제21조 2~7의 규정들에 의해 출판 일자가 결정된다.

배제명칭(排除名稱) excluded name. 제1조 3의 적용에 의해 적합명이 될 수 없는 명칭, 또는 부정성명 대상의 명칭(제8조 2, 8조 3을 보라).

변이체 variety. 1960년 이후에 출판되었을 경우 아종하 분류계급을 나타내지만 1961년 이전에 출판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 6.3~4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변형철자법(變形綴字法) variant spellings. 이물동명관계 원칙의 목적상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종본명 또는 아종본명의 서로 다른 철자법(제58조).

보존명칭(保存名稱) conserved name. 심의회가 전권을 사용하여 장애 상황을 제거하여 유효명칭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하거나 무효인, 명칭.

보존저작물 conserved work. 심의회가 적합저작물이라고 판정한 저작물.

보존(保存)하다 conserve. 다음과 같은 경우를 위하여 이 규약의 한 규정을 보류 또는 변경하는 것: (1) 장애가 되는 상황의 우회를 통하여 하나의 명칭을 유효한 것으로 보호 또는 허용하기 위하여, 또는 (2) 분류학적으로 볼 때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한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또는 (3) 정상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작물을 출판되었거나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보존 조치는 심의회의 전권으로 결정된다.

보호명칭(保護名稱) *nomen protectum*. "보호되는 명칭"이란 뜻의 라틴어 용어로서, 사용되지 않고 망각명칭의 위치로 강등된 상위동물이명이나 상위이물동명에 앞서 우선 지위가 부여된 명칭을 가리킨다(또한 제23조 9.2를 보라).

복위(復位) reinstate. 전에 하위후이물동명(junior secondary homonym)으로 폐기 처리된 명칭을 제59조 4의 조건이 맞을 경우 유효명칭으로 처리하는 것.

복제 인쇄본, 증쇄 reprint. 이 규약의 목적상 발췌 인쇄물과 동의어이다.

복제자 착오 copyist's error. 복제물 제작 시의 부정확한 철자법.

복합의 compound. 한 단어나 학명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본 구성요소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단어처럼 만든 것(즉 접두사와 접미사를 제외시킨 것)(32조 5.2.4)으로서 32조 5.2.4.3에 제시된 예는 예외이다.

부(部) division. (1) 속 또는 아속의 한 계급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명명법의 의도상 아속 분류계급으로 간주되는 분류계급(제10조 4). (2) 부(division) 분류계급의 분류군.

부모식(副模式) paratype. 정모식 외의 모식계열의 각 표본(권고 73D).

부속 분류군 subordinate taxon. 비교되는 동일 동등 군의 분류군보다 하위인 분류계급의 분류군.

부적당명칭 inappropriate name. 해당 명칭의 분류군을 포함하지 않는 형질, 성질, 또는 기원을 칭하는 명칭.

부적합명명활동 unavailable nomenclatural act. 취득이 불가능한 저작물에 발표한 명명 활동.

부적합명칭 unavailable name. 제10~20조에 합당하지 않는 학명, 또는 제1조 3에 의거하여 제외된 명칭.

부적합저작물 unavailable work. 이 규약의 제 규정상 또는 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확립되지 못하는 명칭이나 명명활동을 포함하는 출판된 저작물. 이러한 저작물은 (1) 1758년 이전에 간행되었거나(제3조), (2) 이명식 명명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거나, (3) 1950년 이후에 저자 불명 상태로 출판되었거나(제14조), (4) 부정성명이 들어 있거나, 심의회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부적합저작물에 들어 있는, 명명법에 영향 주는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12조 2.1, 12조 2.7, 13조 1.2를 보라.

부정당수정(不正當修正) unjustified emendation. 정당수정이 아닌 수정(제33조 2.3).

부정성명(否定聲明) Disclaimer. 저자, 편집자, 또는 출판자가 (1) 저작물 전체 또는 (2) 저작물 내 명칭이나 명명활동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이 동물명명법의 의도에서 제외된다고 해당 저작물에 적은 성명.

부정확한 사후철자법 incorrect subsequent spelling. 적합명칭 철자법의 강제적 변경이나 수정이 아닌 변경(제33조 3).

부정확한 원철자법 incorrect original spelling. 부정확한 원래의 철자법(제32조 4 및 32조 5).

부후모식(副後模式) paralectotype. 후모식 지정 후 남은, 과거 총모식 계열이었던 각 표본

(제72조 1.3, 권고 74F).

분류 집단 taxonomic group. 분류군 또는 분류군들의 집단; 예를 들어, 분류군 집단 곤충강(Insecta)은 모든 곤충들과 그 안의 분류된 분류군들을 포함한다.

분류계급 rank. 분류학적 계층 구조에서 분류군의 명명법적 목적상의 준위(예. 모든 과들은 명명법적 목적상 상과와 아과 사이의 동일한 분류계급에 위치한다). 공칭분류군이 창설될 수 있는 과군, 속군, 종군의 분류계급들은 제10조 3, 10조 4, 35조 1, 42조 1, 45조 1에 언급되어 있다.

분류계층 taxonomic hierarchy. 일련의 분류계급들이 단계적으로 포용성이 확대되도록 한 분류 체계. 분류군을 보라.

분류군(分類群) taxon(복수, taxa). 분류학적 단위를 말하며, 명칭의 유무와는 관계없다. 즉, 흔히 계통적으로 유연관계가 깊다고 언급되고 동등의 다른 분류학적 단위(예. 지리적 집단, 속, 과, 목)로부터 이 단위를 구별시키는 형질들을 공유하는 생물의 집단 또는 집단의 집합. 하나의 분류군은 하위 분류계급의 모든 부속 분류군들과 각개 생물들을 포괄한다. 이 규약은 상과와 아종 및 그 사이의 분류군들의 명칭만을 규제한다.

분류학(分類學)(분류학의) taxonomy(taxonomic). 생물 분류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분류학 범주 taxonomic field. 하나의 분류군 또는 일련의 분류군들(예. "갑각강: 단각목 및 등각목").

분류학 자료 taxonomic information. 기재, 삽화 및 분류군에 관련된 다른 자료. 명칭이나 명명활동과는 달리 이러한 자료는 한 명칭을 적합하게 만들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출판된(그러나 부정성명이 없는) 저작물로부터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적합하지 않는 출판물의 예는 1758년 이전에 출판된 것, 일관되게 이명식 명명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또는 심의회가 금지한(그러나 비출판이라고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되지는 않은) 것 등이다.

분류학적 분류군 taxonomic taxon. 동물학자가 어느 시기에 동물 분류군의 경계를 규정하고자 숙고했던 공칭분류군이나 개체를 포함한 하나의 분류군(예. 과, 속, 종). 분류학적 분류군은 포함된 공칭분류군의 적합명칭 중에서 결정된 유효명칭이 부여된다.

비고의적 착오 inadvertent error. *lapsus calami*(오기), 복제자 착오, 인쇄자 착오와 같은, 원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확한 철자법(제32조 5.1).

사후단모식성(事後單模式性) subsequent monotypy. 1931년 이전에 공칭종을 포함하지 않

고 하나의 공칭속이나 공칭아속이 창설되고, 적합명칭을 가지는 단 한 가지 분류학적 종이 사후에 처음으로 그 속이나 아속에 해당된다고 제안되었을 경우(제69조 3).

사후지정(事後指定) subsequent designation. 공칭분류군을 창설한 뒤의 담명모식 지정(제69조 1, 74조, 75조).

사후철자법 subsequent spelling. 한 적합명칭의 원철자법과 다른 철자법(제33조).

산지모식(産地模式)(산지모식의) topotype(topotypic). 모식계열의 일부이건 아니건, 모식산지에서 나온 종 또는 아종의 한 표본을 일컬으며, 이 규약이 규정한 용어는 아니다.

삼명식 명칭(三名式 名稱) trinomen(복수, trinomina) 또는 trinominal name. 속명, 종본명, 아종본명의 조합으로서, 일괄하여 한 아종의 학명을 이룬다(제5조 2).

삽입명칭(揷入名稱) interpolated name. 괄호 안에 넣는 명칭으로서, (1) 아속을 칭하는 속명 뒤의 명칭, (2) 종의 집합을 칭하는 속군명 뒤의 명칭, 또는 (3) 아종 집합을 칭하는 종본명 뒤의 명칭(제6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명칭은 이명식 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의 하나로 취급되지 않는다.

상과(上科) superfamily(복수 superfamilies). (1) 과 위의 과군 분류계급; 이 규약의 통제를 받는 명칭들을 포함하는 가장 최상위 분류계급. (2) 상과 분류계급의 분류군. 상과명은 접미사가 -oidea이다.

상과명(上科名) superfamily name 또는 name of a superfamily. 상과 분류계급의 분류군 학명. 어미가 -oidea로 끝난다.

상위동물이명(上位同物異名) senior synonym. 두 개의 동물이명 중에서 먼저 창설된 것, 또는 동시에 창설된 경우에는 제24조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 또한 제23조 9를 보라.

상위이물동명(上位異物同名), 상위 동명(上位同名) senior homonym. 두 개의 이물동명 중에서 먼저 창설된 것, 또는 동시에 창설되었을 경우 제24조에 의거하여 우선 지위를 가지는 것.

색인(索引) index(복수, indexes). 저작물에서 명칭이나 주제를 특정 순서(대개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 목록으로서, 대개 이것들이 다루어진 쪽을 참고로 제시되어 있다.

생략(省略)하다 elide. 하나의 단어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문자를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제29조 3.1.1에 있는 바와 같이).

생적분류군(生跡分類群) ichnotaxon. 동물의 기어간 자국 화석, 족적 화석, 서식 구멍 화석(生跡化石) 등과 같은 생물의 활동 화석에 근거를 둔 분류군. 또한 동물활동 치성물을

보라.

선고(宣告) Declaration. 심의회가 출판하는 이 규약의 임시 수정안(제78조 3.2, 80조 1).

성(性) gender. 속군명칭에서 라틴어나 라틴어화된 형용사적 또는 분사적 종군명칭을 철자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문법적 특성(남성, 여성, 중성). 이는 종군명칭의 성적 형태가 이와 조합되는 속명의 성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의 어미 gender ending. (1) 단어의 성을 나타내는 속군명칭의 어미(주격 단수 명사여야 하거나 그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제11조 8); 라틴어 사전이나 그리스어 사전에 없는 단어의 어미가 나타내는 성에 대해서는 제30조 2를 보라. (2) 라틴어 단어나 라틴어화된 형용사형 종군명칭의 어미. 종군명칭의 어미는 속명과 성이 일치해야 한다(제31조 2를 보라).

성의 일치 gender agreement. 속명과 원래 또는 사후에 라틴어인 또는 라틴어화한 형용사적 또는 분사적 종군명칭과 성이 일치함.

성행용법, 현행용법 prevailing usage. 출판 연도를 불문하고 해당 분류군에 대한 최근 연구자들의 다수가 채택하는 명칭의 사용.

소유격 어미 genitive ending. (1) 종군명칭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장소, 숙주 또는 해당 분류군과 관련된 다른 존재의 소유격(속격)일 경우, 소유격을 형성하고 성과 수를 나타내는 종군 어미(예. 그 어미는 한 남자일 때 *-i*, 한 여자일 때 *-ae*, 복수의 남자 또는 복수의 남자와 복수의 여자일 때 *-orum*, 복수의 여자일 때 *-arum*이다)(제31조 1.2). (2) 접미사를 붙여서 과군명칭을 만들 때 그 어간을 만들기 위해 삭제되는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 속명의 소유격 어미(제29조 3).

속(屬) genus(복수, genera). (1) 속군 내에서 과군의 아래, 아속 위의 분류계급. (2) 속 분류계급의 분류군.

속 이상의 suprageneric. 속 이상의 분류계급에 있는 분류군의.

속군(屬群) genus group. 분류계급에서, 과군과 종군 사이에 있는 분류군 집단. 속군에는 속 분류계급과 아속 분류계급의 분류군들이 포함된다(제42조 1). 집합군이나 속군 수준에서 창설된 생적분류군(ichnotaxa)의 명칭은 속군명칭으로 취급된다(제42조 2.1).

속군명칭 genus-group name. 속군 수준의 집합군과 생적분류군의 명칭을 포함한, 속이나 아속의 학명.

속명(屬名) generic name, 또는 genus name, 또는 name of a genus. (1) 속 분류계급의 분

류군의 학명. (2) 이명식 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의 첫 번째 명칭(제5조).

수장품(收藏品) collection. 연구나 전시를 목적으로 소장되는 표본들.

수정(修正) emendation. (1) 적합명칭의 원철자법의 고의적 변경(제32조 2). (2) 적합명칭의 원철자법의 고의적 변경으로 만들어진 적합명칭.

순화동물, 가축 domesticated animals. 인간의 인위적 또는 비인위적 선택 활동으로 야생의 조상과는 다르게 된 동물들(예. 개 *Canis familaris*, 고양이 *Felis catus*, 소 *Bos taurus*).

식별특징(識別特徵) diagnosis. 혼동하기 쉬운 유사 분류군과 구별하도록 한 분류군의 형질들을 적은 글.

신대체명칭 new replacement name (*nomen novum*). 이미 창설된 명칭을 대체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창설한 명칭. 신대체명칭이 부여된 공칭분류군은 명칭 교체 이전의 공칭분류군과 동일한 담명모식을 가진다(제67조 8, 72조 7). 치환명칭을 보라.

신모식(新模式) neotype. 공칭분류군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나 담명모식이 현존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한 공칭종이나 공칭아종의 담명모식으로 지정한 단일 표본. 만약 현존하는 담명모식이 분류학적으로 부적당하거나 명칭의 성행용법과 불일치해서 안정성이나 보편성이 위협 받으면 심의회는 전권을 사용하여 그 모식을 인정하지 않고 신모식을 지정할 수 있다.

신조합(新組合) new combination. 속명과 이전에 창설된 종군명칭의 최초 조합.

신학명(新學名) new scientific name. 하나의 분류군에 대하여 처음으로 제안된, 적합 또는 부적합인 학명.

실질반복명칭관계 virtual tautonymy. 한 속명이나 아속명과 이명식 명칭 또는 삼명식 명칭에 있는 종본명이나 아종본명과 거의 동일한 철자를 가지거나 동일한 어원이나 의미를 가지는 것.

심의회 Commisssion.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Zoological Nomenclature)의 약칭(제71조 1).

심의회의 제정 ruling by the Commission. 전문 의견(Opinion, 제80조 2), 선고(Declaration, 제80조 1) 또는 지시(Direction, 이 규약에서 과거에는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임)에 발표된 심의회의 결정.

아과(亞科) subfamily (복수, subfamilies). (1) 과 아래의 분류계급. (2) 아과 분류계급의 분류군.

아과명(亞科名) subfamily name 또는 name of a subfamily. 아과 분류계급에 위치한 분류군의 학명. 어미가 -inae로 끝난다.

아속(亞屬) subgenus(복수, subgenera). (1) 속 아래의 속군 분류계급. (2) 아속 분류계급의 분류군.

아속명 subgeneric name, 또는 subgenus name, 또는 name of a subgenus. 아속 분류계급에 위치한 분류군의 학명.

아족(亞族) subtribe. (1) 족(族) 아래의 과군 분류계급. (2) 아족 분류계급의 분류군. 아족명의 어미는 -*ina*이다.

아족명(亞族名) subtribe name 또는 name of a subtribe. 아족 분류계급에 위치한 분류군의 학명. 어미가 -ina로 끝난다.

아종(亞種) subspecies(단수 및 복수). (1) 종 아래의 종군 계급. (2) 아종 분류계급의 분류군.

아종명(亞種名) subspecies name 또는 name of a subspecies. (1) 한 아종 분류계급의 분류군 학명. (2) 삼명식 명칭, 즉 속명, 종본명, 아종본명의 조합(아속명이나 삽입된 종군명칭과 같은 삽입명칭은 삼명식 명칭의 한 명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제6조).

아종본명(亞種本名), 아종소명(亞種小名) subspecific name. 삼명식 명칭의 세 번째 명칭(제5조 2).

아종하 명칭(亞種下名稱) infrasubspecific name. 아종하 실체의 명칭.

아종하 분류군 infrasubspecific taxon. 아종 분류계급보다 하위인 분류계급의 분류군. 이러한 분류군들은 이 규약이 규정하지 않는다.

아종하 실체(亞種下 實體) infrasubspecific entity. (1) 아종 분류계급 이하의 분류군. (2) 한 종 내에서의 집단내 변이(예. 성의 차이, 계급, 암수모자이크, 간성, 기형 개체, 연령, 계절형, 비단절 변이나 다형현상, 세대 차이)로 인한 다른 표본과 차이나는 표본.

아종하의 infrasubspecific. 아종 분류계급보다 낮은 분류계급, 분류군, 또는 명칭의. 아종하 실체의 명칭은 이 규약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제1조 3.4).

약자 abbreviation. 한 단어나 제목을 줄여 쓴 글자. 동물학 저술 중에서 속군명칭은 흔히 하나 또는 두 개의 문자로 간략화 하는데, 이러한 약자는 항상 바로 뒤에 점이 뒤따르며, 그 명칭을 처음 적을 때는 약자를 쓰지 않아야 한다. 아종의 삼명식 명칭에서 종본명의 약자를 적을 때에도 그러하다.

어간(명칭의) Stem(of a name). 이 규약의 목적상, (1) 과군 어미가 붙여지는 모식속의 명

칭 일부(또는 전체)(제29조를 보라), 또는 소유격 명사인 종군명칭을 형성할 때 소유격 어미가 붙여지는 명칭의 부분(제31조 1.2).

연결모음(連結母音) connecting vowel.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해주는 모음(제58조 12를 보라), 그러나 연결된 두 단어 중 뒤쪽의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되면 연결모음은 필요 없다.

예, 격 case. (1) 판정을 위해 심의회에 제시된 명명 문제(선고, 지시, 전문 의견을 보라). (2) 문법상 명사와 형용사의 어미 변화, 이 중에서 주격과 소유격이 동물명명법에 이용된다.

오동정 misidentify. 실수로 하나의 표본을 특정 분류군에 속한다고 하는 것.

오적용(誤適用)하다 misapply. 이 규약의 제 규정상 고의로 또는 다른 이유로 부정확한 의미로 명칭을 적용하는 것(예. 담명모식에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완모식(完模式). 정모식의 동의어.

우선권 원칙 Principle of Priority. 한 분류군의 유효명칭은, 이 명칭이 이 규약의 규정이나 심의회의 결정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은 한, 이 분류군에 붙여진 가장 오래된 적합명칭이라는 원칙(제23조의 다른 규정들을 고려하여)(제23조).

우선순위 precedence. 적합명칭 또는 명명활동의 서열로서, (1) 제23조에 의해 우선권 원칙의 적용으로 결정되거나, (2) 동시에 출판된 명칭이나 명명활동의 경우 제24조에 의해 결정되거나, (3) 심의회가 전권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원기재(原記載) original description. 한 공칭분류군을 창설하는 최초의 기재.

원래 포함된 공칭종 originally included nominal species. 공칭 속군 분류군에서 원래 제67조 2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공칭종.

원생생물(原生生物). 원생생물계(Protista)로 분류된 생물. 일부 이러한 생물들(예. 전에 원생동물 Protozoa로 분류된 것들)은 명명법 목적상 통상 동물로 취급되며, 이와 같이 취급되었을 경우 이들의 명칭은 이 규약의 지배를 받는다(제1조 1.1).

원이물동명(原異物同名), 원동명(原同名) primary homonym. 서로 다른 공칭분류군을 대상으로 창설되고 원래 동일한 속명과 조합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종본명들 또는 아종본명들 중 각각의 것(제57조 2).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변형철자법에 대해서는 제58조를 보라.

원지정(原指定) original designation. 공칭분류군을 창설할 때의 담명모식 지정(제68조 1, 73조 1.1).

원철자법(原綴字法) original spelling. 한 명칭이 창설될 때의 철자법 또는 철자법들 중 하나(제32조 1, 32조 2.1).

원출판물, 원발표물 orginal publication. (1) 명칭이나 명명활동이 최초로 출판된 저작물. (2) 명칭이나 명명활동의 최초 출판.

유효 명명활동 valid nomenclatural act. 이 규약의 각 규정상 허용되는 명명활동(즉, 특정 명칭이나 공칭분류군과 관련된 최초의 적합 명명활동으로서, 이 규약의 각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

유효명칭(有效名稱) valid name. 분류학적 분류군의 정확한 명칭, 즉 해당 분류군에 대한 명명자의 개념과 합당한 담명모식의 가장 오래된 잠재적 유효명칭(그러나 **우선권 원칙** 항을 보라).

유효의(유효성) valid(validity). 적합명칭이나 적합 명명활동 중에서 이 규약의 제 규정상 인정되는 것, 또한 하나의 명칭의 경우, 저자의 분류학적 판단으로 본 한 분류군의 정확한 명칭.

~의미의, ~가 말하는 *sensu*. 통상 한 저자가 하나의 명칭을 명명자나 일부 다른 과거 저자가 사용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라틴어 용어이다.

이명식 명명 원칙 Principle of Binominal Nomenclature. 다른 분류계급의 분류군이 아닌, 종의 학명은 두 개 명칭의 조합(이명식 명칭)이라는 원칙으로서, 아종의 명칭을 위한 삼명식 명칭이나 종군 이상의 분류군을 위한 일명식 명칭의 사용은 이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 제5조 및 제11조 4를 보라.

이명식 명명법 binominal nomenclature. 두 가지 명칭의 조합(이명식 명칭)으로 종의 명칭이 부여되는 명명법 체계.

이명식 명칭(二名式 名稱) binomen(복수, binomina) 또는 binominal name. 두 개 명칭의 조합. 첫째 명칭은 속명이고 둘째 명칭은 종본명으로서, 두 명칭이 함께 한 종의 학명을 이룬다(제5조 1). 여타의 삽입된 명칭(제6조)은 이명식 명칭의 한 구성요소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물동명(異物同名), 동명(同名) homonym. (1) 과군에서: 동일 철자로 이루어져 있거나 어미만 다르지만 서로 다른 공칭분류군을 칭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적합명칭들 중 각각의 것. (2) 속군에서: 동일 철자를 가지지면서 서로 다른 공칭분류군을 칭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적합명칭들 중 각각의 것. (3) 종군에서: 동일 철자, 또는 제58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철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서로 다른 공칭분류군을 대상으로 창설되고 원래(원이물동명) 또는 사후에(후이물동명) 동일 속명

과 조합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적합명칭 중 각각의 것(제53조 3). 예로서, 과군명칭의 경우 제53조 1, 속군명칭의 경우 제53조 2, 종군명칭의 경우 제53도 3을 보라.

이물동명관계, 동명관계 homonymy. (1) 이물동명들 간의 관계. (2) 이물동명 상태.

이물동명관계 원칙 Principle of Homonymy. 각 분류군의 명칭은 독특(유일)해야 한다는 원칙. 그러므로 다른 명칭의 하위이물동명인 명칭은 유효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제52조).

이상개체(異常個體) aberration, ab. 한 종의 특정 부류의 개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상개체라고 명시된 개체에 대한 명칭은 무효이다(제45조 6.2).

이성모식(異性模式) allotype. 정모식과 반대인 성의 지정된 표본을 일컫는 용어로서, 이 규약에서 규정하지는 않은 용어이다(권고 72A).

인가된 validated. 보수적 관점에서 전에 사용된 용어.

인쇄자 착오 printer's error. 식자 시에 생긴 부정확한 철자법(흔히 오타 typographical error라고 함).

일명식(一名式)의 uninominal. 단일 명칭의(예. 과군명칭이나 속군명칭)(제4조).

일명식 명칭(一名式 名稱) uninominal name. 한 단어로 된 학명으로서, 종군 이상의 분류군에 적용된다(제4조 1).

임의 문자 조합 arbitrary combination of letters. 명명자가 기존의 단어에 기초를 두지 않고 만든 학명.

자역(字譯)(자역하다) transliteration(transliterate). 글자 번역, 즉 한 알파벳의 글자를 다른 알파벳의 동등 글자로 대체하는 것. 학명은 라틴어 글자로 적어야 하므로 라틴어가 아닌 글자로 된 명칭은 자역이 필요하다.

잠재적 유효명칭 potentially valid name. 객관적으로 무효는 아닌 적합명칭.

잡종(雜種) hybrid. 서로 다른 분류군에 속하는 두 개체들의 자손. 잡종이나 잡종 기원의 분류군에 부여된 명칭의 처리를 위해서는 제1조 3.3, 17조, 23조 8을 보라.

장(章) Chapter. 이 규약의 일차적 구분.

저자, 명명자 author(**복수**, authors). 한 저작물, 학명, 또는 명명활동의 귀속인(들)(제50조, 제51조, 또한 **저자 불명의**를 보라). 이 규약의 목적을 위하여, 한 저작물의 귀속인이 편집자, 사무원(예. 서기), 또는 한 관계자(심의회나 모임의)라면 이 사람(들)만이 이 저작물, 명칭, 명명활동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저자로 간주된다(제50조).

저자 불명의, 익명(匿名)의 anonymous. (1) 한 저작물에서 저자(또는 저자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것. (2) 한 이름이나 명명활동에서 저작물 자체를 보고는 저자를 판명할 수 없는 것(제50조 1); 저자 불명의 저자나 명명활동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14조를 보라. (3) 하나의 저자에 대하여, 저작물 자체를 보고는 신원이 판명되지 않는 것.

저자 불명의 저작물, 익명의 저작물 anonymous work. 내용을 보고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출판된 저작물.

저자들의 *auctorum* (*auct.* 또는 *auctt.*). 라틴어로서, 통상 원래의 명명자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사후의 여러 저자들에 의해 사용된 명칭(명명자의 관점과는 다른)을 가리킨다.

저작물 work. 출판 여부나 부정성명의 유무를 불문한 글 또는 삽화.

적합, 적합성(적합한) availability (available). (1) 저작물에 관해서는 **저작물**을 보라. (2) 명칭에 관해서는 **명칭**을 보라. (3) 명명활동에 관해서는 **명명활동**을 보라.

적합명명활동 available nomenclatural act. 취득 가능한 저작물에 발표한 명명활동.

적합명칭(適合名稱), 적격명(適格名) available name. 제1조 3에 의해 배제되지 않고 제10~20조의 제 규정에 합당한 동물 분류군에 적용되는 학명.

적합저작물 available work. 이 규약의 제 규정에 합당하게 또는 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는 명칭이나 명명활동이 들어 있는 출판된 저작물.

전권(全權) plenary power. 특별한 경우에 명명법의 안정성과 보편성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약의 제1~76조의 적용을 정지 또는 수정하는 심의회의 권한. 제78조 및 81조를 보라.

전문 의견 Opinion. 명시된 명칭, 명명활동, 또는 저작물에 영향 주는 사안에 대하여 이 규약의 규정들의 적용, 해석, 정지에 대한 규범이 들어 있는 심의회의 공고. 하나의 전문 의견에는 특정 사안에서 이 규약이 적용되고 해석되는 방법과 뒤따라야 할 과정이 진술되어 있다(제80조 2~5).

전자명칭(轉字名稱) anagram. 한 단어 또는 여러 단어의 철자 위치를 바꾸어 만든 명칭.

절(節) section. (1) 명명법적 목적상 하나의 속이나 아속 내의 한 부류가 아속 분류계급인 것으로 처리될 때의 한 분류계급(제10조 4). (2) 절 분류계급의 분류군.

절대반복명칭관계 absolute tautonymy. 속명 또는 아속명과 원래 여기에 포함된 공칭종이나 공칭아종 중 하나의 종본명 또는 아종본명이 동일한 철자로 이루어진 것(제18조,

68조 4).

절멸의 extinct.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분류군의.

접두사 prefix(복수, prefixes). 단어의 기본적 부분의 앞에 붙이는 글자(들)로서 대개 파생어를 만들 때만 사용하고 독립적 단어로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접미사 suffix(복수, suffixes). 하나의 글자나 글자들의 집합으로서, (1) 과명에서 -idae, 아과명에서 -inae와 같이 단어의 어간에 추가되거나(제29조 2); 또는 (2) 일부 속명에서(제30조 2) *-ella*나 *-istes*와 같은 라틴어 어미를 형성하는 것(제30조)이 있다.

정기준표본(正基準標本). 정모식의 동의어.

정당수정(正當修正) justified emendation. 부정확한 원철자법의 수정(제33조 2.2).

정모식(正模式), 완모식(完模式), 정기준표본(正基準標本) holotype. 공칭종이나 공칭아종이 창설될 때 담명모식으로 지정되거나 확정된 단일 표본(하판토모식은 예외).

정오표(正誤表) corrigendum(복수, corrigenda). 한 저작물의 저자, 편집자 또는 출판자가 저작물 안의 오류나 누락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한 기록.

정의(定義) definition. 한 분류군을 구별하도록 독특한 형질 조합을 문장으로 진술한 것(제12조, 제13조).

정확한 원철자법 correct original spelling. 제32조 5에 의거 명백하게 부정확하지 않을 경우, 한 적합명칭의 창설될 때의 명칭.

제안, 제의 proposal. (1) 성공적이든 비성공적이든, 공칭분류군이나 명칭의 창설 또는 명명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2) 제79조에 의거,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의 채택을 위한 심의회에의 신청.

제외의, 제외된 excluded. (1) (a) 이 규약의 제 규정상 또는 (b) 부정성명(제8조 2, 8조 3)으로 인하여, 동물명명법의 의도상 무시되어야 할 저작물, 명칭, 명명활동을 지적하는 (2) 담명모식의 모식계열에서 명시적으로 누락되거나 제외된 표본이나 구성요소를 지적하는(제74조 4.1, 제73조 1.5).

제외확정법 fixation by elimination. 원래 어느 한 속에 포함되어 있던 공칭종들 중에서 사후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전출시켜서 모식종을 추정적으로 확정하는 방법. 이는 적합한 모식확정 방법은 아니다(제69조 4, 그러나 제69조 1.1을 보라).

젤라틴 인쇄 hectographing. 원본을 젤라틴 표면에 옮긴 뒤 원문과 삽화를 복제하는 인쇄기술.

조(款) Articles. 이 규약의 강제적 조항.

조건부의, 조건적인 conditional. (1) 하나의 명칭이나 모식확정의 제안 중에서 명백한 조건부로 제안된 것(제15조 1). (2) 하나의 분류군을 상위 분류계급의 다른 분류군에 포함시킬 경우 명백한 조건부로 한 것(제51조 3.3).

조문 rules(단수 rule). 제목, 권고, 예를 제외한 이 규약의 조문들. 조문들은 강제적이다. 규정(provisions)의 동의어이다.

조직규정(組織規程) Constitution.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조직규정(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Zoological Nomenclature)의 약칭.

조합(組合) combination. 종명을 만들기 위한 속명과 종본명의 연합, 또는 아종명을 만들기 위한 속명, 종본명, 아종본명의 연합.

족(族) tribe. (1) 아과 이하의 과군 분류계급. (2) 족 분류계급의 한 분류군. 족의 명칭은 어미가 -ini로 되어 있다.

족명(族名) tribe name 또는 name of a tribe. 족 분류계급의 분류군 학명. 어미가 -ini로 끝난다.

종(種) species(단수 및 복수). (1) 속군 아래의 분류계급; 동물 분류의 기본 분류계급. (2) 종 분류계급의 분류군.

종군(種群) species group. 동물 분류에서 이 규약의 규제를 받는 분류군명을 포함하는 최하위 분류계급 집단. 종군은 종 및 아종 분류계급의 모든 분류군을 포함한다(제45조 1).

종명(種名) species name 또는 name of a species. 종 분류계급에 위치한 분류군의 학명. 속명과 종본명의 조합으로 된 이명식 명칭(아속명이나 삽입된 종군명칭과 같은 삽입명칭이 사용될 경우, 이 삽입명칭은 이명식 명칭의 한 명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제6조).

종군명칭(種群名稱) species-group name. 종본명 또는 아종본명.

종본명(種本名), 종소명(種小名) specific name. 이명식 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에서 둘째 명칭(제5조).

종하명칭(種下名稱) infraspecific name. 종 분류계급 아래의 명칭에 대한 일반 용어. 이 용어는 아종본명이나 아종하 명칭을 포함한다.

주관동물이명(主觀同物異名) subjective synonym. 동물이명관계가 개인적 관점(객관적이지

않은)일 뿐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명칭들 중 각각의 것. 또한 제61조 3.1을 보라.

주관(主觀)의, 주관적인 subjective. 개인의 판단에 의한; 객관의(objective)와 반대 의미를 가지는 단어. 주관동물이명, 동물이명을 보라.

지면 인쇄(紙面印刷) printing on paper. 원문이나 삽화의 수많은 복제를 지면에 제작하는 것. 이 규약의 목적상 사진(즉, 인화지에 제작된 영상)은 인쇄로 취급되지 않는다(제9조 2).

지시(指示) Direction. 이 규약의 이전 판에서 사용되고 현재는 폐기된 용어로서, 전문 의견(Opinion)에 제시된 내용을 완성 또는 수정하는 표결 결과를 발표한 성명. 지시라는 용어는 공식 개정(Official Correction)으로 대체되었다.

지위미정(地位未定) *incertae sedis*. "불확실한 분류학적 위치"를 뜻하는 라틴어.

지정(指定)(지정하다) designation(designate). 새로이 또는 이전에 창설된 공칭 속, 아속, 종, 또는 아종의 담명모식을 발표하여 확정하는, 저자 또는 심의회의 명명활동.

지증(指證) indication. 정의나 기재는 없으나 제10조 및 11조의 제 규정을 충족시키는, 1931년 이전에 제안된 명칭을 유효하게 만드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에 대한 참고 또는 출판된 명명활동(제12조 2). 또한 제13조 6.1을 보라.

집단 aggregate. 한 속 내의 아속 집단이 아닌 한 종 집단. 또는 한 아속 내의 한 종 집단. 또는 한 종 내의 한 아종 집단. 한 집단은 하나의 종군명칭으로서 괄호 안에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제6조 2).

집합군(集合群) collective group. 공칭속에 확실하게 배치시킬 수 없는 종의 집단 또는 생물의 발생 단계(예. 난자, 유생). 집합군을 대상으로 제안되거나 사용된 명칭들은 속군명칭으로 취급되지만 이들에게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제42조 2.1을 보라).

착오 error. 명칭이나 단어의 부정확한 철자법.

창설하다, 확립하다 establish. 이 규약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서 공칭분류군의 명칭을 적합하게 만드는 것.

채택 adoption.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List of Available Names in Zoology*) 중에서: 제7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의회에 의한 해당 부분의 채택.

채택하다 adopt. 한 분류군의 부적합명칭을 명명자와 명명 일자를 제시하여 신명칭으로 창설하는 방식으로 유효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제11조 6, 45조 5.1, 45조 6.4.1).

철자법 spelling.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선정과 배열.

총모식(總模式) syntype. 정모식이나 후모식이 지정되지 않는 모식계열 중 각 표본(제72조 1.2, 73조 2, 74조). 이 총모식은 집단적으로 담명모식을 이룬다.

최초 교정자 First Reviser. 동일 일자에 출판된 명칭들(동일 명칭의 상이한 원철자법 포함) 또는 명명활동들을 인용하고 그중 하나를 다른 것(들)보다 앞선 우선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선정한 최초의 저자. 제24조를 보라.

최초 교정자 원칙 Principle of First Reviser. 동일 일자에 출판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명칭이나 명명활동, 또는 동일 명칭에 대한 서로 다른 원철자법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는 최초 교정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이다(제24조 2).

출판물, 출판, 발표물, 발표 publication. (1) 출판된 저작물. (2) 제8조, 9조에 합당한 저작물 발행.

출판하다, 발표하다 publish. (1) 출판물을 발행하는 것. (2) 제8조에 합당하고 제9조의 제 규정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 (3) 위의 (2)에 합당한 저작물, 명칭, 명명활동 또는 명명법에 영향 주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

치환명칭(置換名稱) substitute name. 기존의 적합명칭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명칭이든 아니든, 다른 적합명칭. **신대체명칭** new replacement name (nomen novum), **동물이명** synonym을 보라.

토속명칭 vernacular name. 동물명명법을 위해 제안된 명칭이 아닌, 일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된 동물 또는 동물들의 명칭.

폐기명칭 rejected name. (1) 이 규약의 제 규정상 유효명칭으로 사용될 수 없고,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보류되고 있는 명칭. (2) 분류학적 판단 사안으로서, 한 유효명의 하위주관동물이명으로 처리되거나 고려 대상의 분류군에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명칭.

폐기저작물 rejected work. 심의회가 동물명명법의 폐기 및 무효 저작물 공식 목록에 포함시킨 저작물.

폐기하다 reject. 명칭과 분류학적 판단과 관련하여, 이 규약의 제 규정에 맞도록 (1) 동물명명법적 목적상 한 저작물을 보류하거나 (2) 다른 명칭을 취하고 한 명칭을 보류하는 것.

표본(標本) specimen. 한 동물의 예, 또는 동물의 화석이나 활동 결과물의 예, 또는 이것들의 한 부분. 공칭종군의 공칭분류군의 담명모식이 될 자격이 있는 표본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72조 5를 보라.

필기 오류 *lapsus calami* (단수 및 복수). 필기 오류("slip of the pen")를 뜻하는 라틴어, 즉, 원문을 적을 때의 한 명칭의 철자 오류와 같은 저자의 오류; 복제자 오류나 인쇄자 오류와 대비된다(제32조 5.1).

하위동물이명(下位同物異名) junior synonym. 두 개의 동물이명 중에서 나중에 창설된 것, 또는 동시에 창설된 경우에는 제24조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 또한 제23조 9를 보라.

하위이물동명(下位異物同名), 하위 동명(下位同名) junior homonym. 두 개의 이물동명 중에서 후에 창설된 것, 또는 동시에 창설되었을 경우 제24조에 의거 우선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

하이픈 hyphen. 글자 연결 부호. 구두점으로 사용되거나 다음과 같은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는 "-" 부호이다. 즉, (1) 복합적인 종본명이나 아종본명의 두 부분 중에서 앞 부분이 단수의 라틴어 문자일 경우(제32조 5.2.4.3) 두 부분을 연결하거나, 또는 (2) 만약 세 번째 단어를 변형시키는 데 사용할 경우 처음의 두 단어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예. 속군의 명칭들과 대조를 이루는 속군명).

하판토모식 hapantotype. 현생 원생생물 종의 담명모식에서 함께 기원한 원생생물 생활사의 특정 단계를 나타내는 직계의 개체들이 들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표본(제72조 5.4, 73조 3). 하나의 하판토모식은 일련의 개체들이면서도 후모식 선정이 제한되지 않는 하나의 정모식이지만, 만약 한 하판토모식이 한 종 이상의 개체들이 포함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단일종의 개체들만 포함될 때까지 구성원들이 제외될 수 있다(제73조 3.2).

학명(學名) scientific name. 한 분류군에서, 제1조에 합당한 명칭으로서, 토속명의 반대적 의미의 명칭. 종군 이상의 분류계급의 분류군의 학명은 한 가지 명칭으로 구성되고; 종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명칭(이명식 명칭)으로 구성되며; 아종의 경우에는 세 가지 명칭(삼명식 명칭)으로 구성된다(제4조, 5조). 학명은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

확정(確定) fixation. 원지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지정을 불문하고, 담명모식의 결정을 뜻하는 일반적 용어. 또한 **지정** designation (제68조 1, 69조 1, 73~75조), **단모식성** monotypy (제68조 3, 69조 3), **반복명칭관계** tautonymy (제68조 4, 68조 5)를 보라.

현생의 extant. (1)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물을 포함하는 분류군의. (2) 현재 존재하는 표본의.

형(型), 종형(種型) form. (1) 1960년 이후에 출판되었을 경우 이 용어는 아종하 분류계급 나타내고, 1961년 이전에 출판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 6.3~4에 의거하여 해석되어

야 한다. (2) 한 종이나 아종 내에서 다른 개체들과는 다르다고 기술된 일부 개체들 (예. 유생형, 성체형, 웅성형, 자성형, 생태형, 계절형).

형질 character. 분류군의 인지, 식별, 분류에 이용되는 생물의 특징.

협의(狹義)의 *sensu stricto* (*s. str.* 또는 *s. s.*). "엄격한 의미의"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용어. 흔히 부속 공칭모식 분류군을 좁은 의미의 공칭분류군으로 칭할 때 보통 그 명칭과 결합하여 사용된다(*sensu lato*의 반대 의미이다).

후모식(後模式) lectotype. 공칭종이나 공칭아종을 창설한 후 단일의 담명모식 표본으로 지정된 총모식(제74조).

후생동물(後生動物) Metazoa. 명명법적 목적상 동물로 취급되는 다세포 생물.

후이물동명(後異物同名), 후동명(後同名) secondary homonym. 서로 다른 공칭분류군을 대상으로 창설되고 원래 서로 다른 속명과 조합되었으나 나중에 동일 속명과 조합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종본명들 또는 아종본명들 중 각각의 것(제57조 3).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변형철자법에 대해서는 제58조를 보라.

부 록

A. 윤리 규정
B. 일반 권고

이 부록들은 명명법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제시되었다. 규약의 핵심 부분인 머리말, 제1~90조 및 용어 해설과는 달리 이 부록들은 권고성 지위를 가지며 동물학자들은 규약의 관련 조항에 추가된 권고들과 함께 이를 따르기를 촉구한다.

부록 A 윤리 규정

1. 신명칭을 제안하는 저자는 "윤리 규정"을 구성하는 다음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신 분류군을 이미 인지하고 이를 창설하려고 하는 것(또는 사후의 저작물에서 명명될 계획인 분류군)을 알고 있는 동물학자는 동일 분류군의 신명칭을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동물학자는 이 다른 사람(또는 대표자)과 교신하고, 만약 이 사람이 납득할만한 기간(최소 1년) 내에 이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만 안심하고 신명칭을 창설해야 한다.

3. 동물학자는 하위이물동명의 명명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이 명칭의 신대체명칭(nomen novum)이나 다른 치환명칭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이 명명자에게 이물동명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환명칭을 창설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최소 1년)을 주어야 한다.

4. 명명자는 그가 알고 있는 한 어떤 이유로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5. 동물명명법과 관련된 논의나 문장에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논의는 예의바르고 친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동물학 학술지 출판에 책임이 있는 편집자나 다른 관계자는 위의 원칙들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출판을 피해야 한다.

7. 이 원칙들의 준수는 동물학자 개인의 고유 정서나 도덕심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심의회는 이 원칙들의 침해를 조사하고 제지할 권한은 없다.

부록 B 일반 권고

다음 권고들은 완벽한 것은 아니며, 규약의 관련 조항 뒤에 나오는 권고나 예들이 이를 보충한다.

명명법의 안정성

1. 각 분류군에 독특하고 명료하며 보편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명명법의 목표이기 때문에 과학적 이유(즉 분류군의 재분류)로 필요하지 않는 한, 저자는 명칭의 성행용법, 즉 명칭이 사용되는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어떤 명칭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분류군과 확연히 다른 분류군으로 이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만약 이 규약의 규정들이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해당 사안을 심의회에 통보하여 자문을 받기 전에는 이 행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신명칭의 창설 및 형성

3. 새로운 공칭분류군을 기재할 때 저자는 유연 분류군과 비교하여 그 분류군의 차후 동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담명모식 표본은 도해되어야 한다(또는 이 삽화에 대한 참고를 해야 한다). 새로운 종군명칭의 경우, 담명모식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존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수장품의 명칭과 장소가 인용된 수장처에 이들을 기탁하여야 한다(제16조 4); 가능하면 이 수장품은 적절한 연구기관에 수용되어야 한다.

4. 새로운 공칭분류군을 창설하는 저자는 이 분류군이 속하는 상위 분류군(예. 과, 목, 강)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5. 새로운 속군이나 종군명칭을 창설하는 저자는 이 명칭의 유래(어원)와 속군명칭의 경우 이의 성(명칭 자체의 형태로 보아 성이 명확해야 한다)을 언급해야 한다. 신명칭은 라틴어 형태여야 하며; 또한 어감이 좋고 쉽사리 기억될 수 있으며, 어떤 분류계급의 것이든 다른 분류군의 명칭이나 토속 단어와 쉽사리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속군명칭은 식물이나 미생물의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칭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신과군명칭의 경우 모식속의 인용은 강제적이며(제16조 2), 모식속의 명명자와 발표 연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6. 속군이나 종군의 분류군 학명은 본문에서 사용된 활자체와 달리 인쇄되어야 하며; 학명은 대개 이탤릭체로 인쇄되는데, 상위 분류군 명칭을 적을 때도 이탤릭체로 인쇄해서는 안 된다. 종군명칭은 항상 소문자로 시작하며, 인용할 때 속명이(또는 약자가) 앞서야 한다; 종군 이상의 분류군 명칭은 모두 대문자로 시작한다.

7. 만약 새로운 공칭분류군이 과학계에서 널리 통용되지 않는 언어가 사용된 저작물에서 창설될 경우, 이 저작물은 신명칭에 대해 주의를 끌고 널리 통용되는 언어로 쓰인 요약문을 포함해야 한다.

8. 신명칭은 지면 인쇄로 된 저작물에서 창설되어야 하며, 이 저작물은 이 규약의 의미상 자명하게 출판되고 널리 배포되며, 동물학자들이 해당 분류학 분야의 신명칭이 게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저작물은 아니어야 한다. 명칭이 검색표, 표, 요약문, 각주 또는 이와 유사한 저작물 본문의 보조적 항목에서 창설되어서는 안 된다.

9. 저자와 편집자는 모든 신학명이 Zoological Record (영국의 BIOSIS가 출판함)에 의해 주목되게 할 것을, 그리하여 넓은 동물학자 층에게 주목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명칭의 인용

10. 종군, 속군, 과군의 분류군 명칭을 언급하는 저자는 해당 저작물에서 적어도 한 번은 이의 저자와 발표 연도를 인용해야 한다. 명칭이 창설되기도 전에 인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부록 A, "윤리 규정"을 보라), 창설될 때를 제외하고는 "new"라고 언급해서도 안 된다.

11. 저작물에서 속군명칭은 최초로 언급된 뒤에 (제목에서 언급할 경우는 제외하고), 이명식 명칭이나 삼명식 명칭에서 약자로 인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약자는 (1) 항상 뒤에 마침표를 찍거나 (2) 유사 속군명칭의 약자와 혼동되지 않는 형태로 (예. 모기에 관한 저작물에서 *Aedes*나 *Anopheles*에 대하여 똑같이 *A.*로 표기하면 모호해짐)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동일한 경우로서, 종본명도 삼명식 명칭에서 약자로 표기될 수 있다 (예. *Danaus plexippus*의 아종명은 *D. p. plexippus* 및 *D. p. menippe*로 표기할 수 있다).

12. 학명에서의 명명자의 성은 약자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명칭의 명명자가 3명보다 많을 때는 본문에서 제1저자의 성 (원출판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만 적은 다음 그 뒤에 "et al." ("and others"라는 뜻)을 적을 수 있다; 모든 명명자들의 이름은 참고문헌에 인용되어야 한다.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조직규정

제1조. 심의회의 지위 및 기능. 심의회의 지위, 임무 및 권한은 국제동물명명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제2조. 심의회의 회원 자격.

2.1. 임원. 심의회는 통상 18명 또는 심의회가 결정하는 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특정 시기의 회원의 수와 주소는 동물명명법공보(Bulletin of Zoological Nomemlature)에 고지될 것이다.

2.2. 자격. 심의회의 회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동물학 분야에서 뚜렷한 기록을 나타내고 동물명명법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저명한 과학자이다.

2.3.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 심의회는 가급적 균형있는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3.1. 동물계 주요 분야의 계통분류학자;

2.3.2. 세계 각처의 동물학자;

2.3.3. 고동물학자;

2.3.4. 계통동물학자뿐 아니라 동물 명칭의 사용자로서 명명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동물명명법의 일반 원리를 이해한다고 알려진 일반동물학 및 응용생물과학(예. 의약학, 농업 등)의 종사자.

제3조. 심의회 회원의 임기.

3.1. 정규 임기. 심의회 회원의 정규 임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1.1. 회원은 선임 일자 또는 가장 최근의 재선임 일자에 따라 회원집단들으로 구분된다. 그중 한 회원집단은 국제생물과학연합회(IUBS)(또는 규약 제77조에 따라 IUBS의 승인을 받은 단체)의 동물명명법 분과의 특별 회의에서 선임된 회원들과 이 회의와 다음 회의 사이에 보선으로 선임된 회원으로 구성되며;

3.1.2. 한 회원집단 내의 모든 회원들은 동일한 서열을 가지며, 제3.2조에 의거하여 이들의 임기는 심의회의 본 회의 폐막 시 만기가 되면 끝난다(제11

조 1).

3.1.3. 이 조항의 목적상, 한 회원집단은 제3조 3의 규정 또는 유고에 의하여 회원들 전부가 심의회를 이미 퇴임했을 경우에도 본회의 폐막 시까지 최고 선임으로서 존속한다.

3.2. **최장 임기 및 재선임의 자격.** 정규 임기가 만료되는 회원은 재선임될 수 있다. 단,

3.2.1. 연임 기간이 18년이 되면(또는 회원이 심의회 회장일 경우에는 24년) 해당 회원은 심의회의 다음 본회의 폐막 때 임기가 끝나며;

3.2.2. 제3조 2.1에 규정된 최장 임기가 끝난 회원이 심의회 회원으로 재선임되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야 하고;

3.2.2.1. 퇴임 회원이나 전임 회원이 재선임되어 심의회의 예선으로 회장으로 선출되거나 연임할 경우에는 이 규정(제3조 2.2)은 적용되지 않는다.

3.2.3. 과도적 조치로서, 이 규정의 목적상 1985년 1월 1일 이전의 근무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3.3. **회원 자격의 조기 종료.** 심의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3.3.1. 회원의 연령이 75세가 되는 날짜;

3.3.2.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사직서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될 때;

3.3.3. 만약 회원이 심의회의 결의에 연속적으로 5회 결석 또는 기권하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서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이 사유서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심의회 회원의 선출.

4.1. **고지.** 심의회는 적어도 본회의 1년 전에 고지를 발행하여(제11조 1):

4.1.1. 제3조에 의거, 해당 본회의 폐막 시에 임기가 끝나는 회원의 성명, 국적, 전공 분야를 알리고;

4.1.2. 제2조 2를 인용하면서 심의회 회원 추천을 요청하며;

4.1.3. 차기 본회의 3개월 이내의 추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짜를 알린다.

4.2. 배포. 제4조 1에 규정된 고지는 IUBS (또는 이의 승인을 받은 단체), 본 회의가 개최되는 총회의 주최인, 세계 각지의 적당한 학술지에 제출되어 이의 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4.3. 추천. 추천서는 각 추천자의 전공 분야와 제2조 2 하의 자격에 대한 언급과 함께 심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추천서에 해당 정보가 결여되면 사무국장은 각 피추천인에게 추천에 대한 동의서, 이력서, 연구 업적, 명명법적 경험에 대한 설명서를 요청한다.

4.4. 후보자 명단. 심의회는 본 회의에서:

4.4.1. 동물명명법 분과 표결로 본 회의 폐막 시 퇴임하는 회원 수의 반수 이상의 장소를 정하여;

4.4.2. 제4조 3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추천을 고려하여 제4조 4.1의 표결로 결정된 장소 수의 2배의 후보자 명단을 마련한다.

4.5. 선출. 심의회는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동물명명법 분과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다.

4.6. 보선. 심의회는 우편 투표를 통하여 회원 자격의 종료 전에 생기는 공석(제3조 3)이나, 동물명명법 분과회의 선거로 채워지지 못한 공석(제4조 4.1), 또는 제2조 1에 의거하여 심의회에 의해 결정된 회원수 증가로 인한 공석을 채울 수 있다.

제5조. 심의회 및 회원의 직무.

5.1. 개회 기간. 심의회 회원의 임무는 가능한 한 심의회의 각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사회자가 납득할만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한 회기 중의 각 회합에 참석하는 것이다.

5.2. 회기 사이. 심의회 회원의 임무는 사무국장이 제시한 각 문제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투표하는 것이다.

5.3. 결석.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의회 회원은 특정 기간 동안 결석함을 사무국장을 통해 통보한다(가능한 한 사전에).

제6조. 회장단. 심의회의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심의회가 정한 다른 임원이다. 회장단의 임무는 부칙에 언급되어 있다.

제7조. 이사회. 회장, 부회장 및 4명의 선출된 심의회 회원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심의회를 대신하여 조직규정의 각 규정에 특별히 적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임원이나 사무국장에게 특별히 할당되지 않거나 회장이 심의회의 정식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회기 사이의 심의회 업무를 관리한다. 이사회는 특정 직책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 회원을 지명할 수 있다.

7.1. 심의회의 사무국장은 또한 이사회의 사무장이 되지만 이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의 다른 임원은 심의 안건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임원진 및 이사회원의 선출. 회장단 및 이사회의 회원은 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제9조. 사무국. 이사회는 부칙에 정해진 바와 같은 기간과 임무를 위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심의회 회원은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국제동물명명법신탁회와 같은 관련 단체의 고용인이 사무국장이 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10.1. 임명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을 통하여 사무국의 편집 업무나 진상조사 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심의회를 조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회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원이 아닌 동물학자들은 이러한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10.2. 보고서 제출. 각 특별위원회 회원은 임명 기간 동안의 정해진 시점에 또는 이사회나 심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 제출과 함께 또는 이사회에 의해 그 전에 해촉되면 해산한다.

제11조. 회의.

11.1. 본 회의.

11.1.1. 회장은 6년 이내의 간격으로(또는 관련 집회나 학술총회의 6년 전에) IUBS 총회, 국제 계통 및 진화생물학 대회(ICSEB) 또는 광범위하게 동물학자들이 참석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연합하여 본 회의를 소집한다.

11.1.2. 본 회의에는 심의회 회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IUBS의 동물

명명법 분과(혹 IUBS의 승인 단체)에 제출하여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회합이 포함된다(제4조 5).

11.1.3. 본 회의는, 심의회 회원 전원에게 사전에 통지되고 이 학술대회 기간 동안에만 선거가 있을 경우, 연합하여 개최되는 학술대회 이전에 시작되어 학술대회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

11.2. 임시 회의. 심의회는 아래의 조건하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임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11.2.1. 심의회의 전 회원에게 당해 회의에 처리되어야 할 업무가 사전에 통지되고;

11.2.2. 이와 같이 통지된 업무만이 회의 중에 처리되며;

11.2.3. 임시 회의에서 선거가 거행되지 않을 경우.

제12조. 투표. 규약과 본 조직규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심의회가 동물명명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투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이 적용된다.

12.1. 일반 사안. 전권의 사용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투표용지에 명기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심의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12.2. 전권 사용이나 명명규약 또는 조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안. 이러한 사안에서(전권의 사용에 대하여 명명규약 제78조~81조를, 명명규약이나 조직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조직규정 제16조를 보라) 제안에 대한 고지가 동물명명법공보에 발행되고 투표 6개월 전에(명명규약이나 조직규정의 개정에 관한 제안은 12개월 전) 적어도 3개의 관련 학술지에 투고된 뒤 3개월 동안의 우편 투표를 통하여 유효 투표의 2/3의 찬성을 얻을 경우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3조. 재무 처리. 심의회는 자체 기금을 모으고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동물명명법신탁회와 같은 단체와 자선 관계를 맺고 심의회와 IUBS (또는 이의 승인 단체)의 정책적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심의회는 재량으로 이러한 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회의 편집 임무. 심의회는 이사회의 지도하에 사무국이 준비하고 편집

한 각종 통신문을 발행하고 재정이 허락할 경우 자체적으로 출판한다.

14.1. **결정 사항.** 명명규약 제77조와 제8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의회의 결정을 구현하는 선고나 전문 의견을 발행하는 일은 심의회의 임무이다.

14.2. **정보 제공.** 재정이 허락할 경우 정기간행물인 동물명명법공보를 출판하여 심의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하여 동물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심의회의 진행과정을 출판하고, 공고를 하며, 명명법 문제의 일반적 논의를 하는 것은 심의회의 임무이다.

14.3. **공식 목록 및 색인의 관리.** 심의회는 아래의 목록과 색인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14.3.1. 동물의 과군명칭 공식 목록(*Official List of Family-Group Names in Zoology*);

14.3.2. 동물의 속군명칭 공식 목록(*Official List of Generic Names in Zoology*);

14.3.3. 동물의 종본명 공식 목록(*Official List of Specific Names in Zoology*);

14.3.4. 동물의 폐기 및 무효 과군명칭 공식 색인(*Official Index of Rejected and Invalid Family-Group Names in Zoology*);

14.3.5. 동물의 폐기 및 무효 속명 공식 색인(*Official Index of Rejected and Invalid Generic Names in Zoology*);

14.3.6. 동물의 폐기 및 무효 종본명 공식 색인(*Official Index of Rejected and Invalid Specific Names in Zoology*);

14.3.7. 동물명명법상 인가된 적합저작물 공식 목록(*Official List of Works Approved as available for Zoological Nomenclature*);

14.3.8. 동물명명법의 폐기 및 무효 저작물 공식 색인(*Official Index of Rejected and Invalid Works in Zoological Nomenclature*).

14.4. **동물적합명칭목록.** 심의회는 규약 제7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물적합명칭목록(또는 이로서 생긴 부분목록)과 관련된 고지를 심의, 채택, 출판한다.

제15조. 비상 권한. 이사회는, 또는 이사회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비상시에 심의회의 지속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특별 권한을 예단하고 행사할 수 있다.

15.1. 비상 상황의 종료와 동시에 비상 권한이 정지되고;

15.2. 명명규약을 수정할 권한 포함되지 않으며 심의회의 승인 없이 선고나 전문 의견을 발행하지 않고;

15.3. 상황 종료 즉시 비상 상황이라고 예단했던 사람들과 그 이유 및 기간이 심의회와 IUBS(또는 이의 승인 단체)에 보고된다.

제16조. 명명규약 및 조직규정의 수정.

16.1. 절차. 심의회는:

16.1.1. 조직규정 제12조 2에 따라 수정안을 출판하고(제78조에 의해 결정된 명명규약의 개정으로서 주요 변경이 아닌 한);

16.1.2. 수정안의 출판 후 1년 동안 동물학자들로부터 접수한 논평들을 심의하며;

16.1.3. IUBS의 동물명명법 분과(또는 이의 승인 단체)에 주요 원칙 변경 제안을 통지하면서 분과는 주요 변경을 승인하고 심의회가 동의한 개정안의 비준을 지원해줄 것을 추천하고;

16.1.4. 3개월에 걸친 우편 투표를 통해 개정안에 대하여 투표하며(제12조 2)(이 개정안은 동물학자들과 분과의 논평을 참고하여 변형될 수 있음);

16.1.5. 우편 투표를 통해 유효 투표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개정안을, 주요 원리의 개정안일 경우는 분과의 지원을 얻어서, IUBS(또는 이의 승인 단체)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고(명명규약 제90조);

16.1.5.1. IUBS(또는 이의 승인 단체)에 의한 개정안의 잠정적 비준을 미리 통보 받고, 이 비준은 심의회의 가결이 이루어진 직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6.1.6. 결정 사항과 비준된 개정 사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일자를 발표한다.

16.2. 편집위원회. 이 조에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고 활동하는 특별편집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부칙. 심의회는 조직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심의회의 규정과 활동을 지배하는 일단의 부칙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심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다수결

로 부칙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 부칙들은 사무원의 임무, 심의회의 공석이 생길 때 추천을 받는 방식, 심의회와 사무국과와 관계, 처리되어야 할 각종 안건에 관련된 규정들, 시간 계획과 우선순위의 채택, 그리고 심의회의 기타 사무이다.

제18조. 발효. 이 조직규정과 이의 모든 개정은 심의회의 승인을 받고 제16조에 따라 IUBS (또는 이의 승인 단체)의 비준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색 인

이 색인은 규약 조문, 권고, 용어 해설을 포괄한다. 규약의 규정들은 각 조와 항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예. “32.5.2”), 권고는 해당 조의 수와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으며(예. “40A”), 부록 B(일반 권고)의 경우에는 B 다음에 숫자로(예. “B6”), 그리고 용어 해설은 “G”로 표시되어 있다.

이 색인은 규약의 법정 본문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각 항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였으나, 아래에 열거한 것들 외에도 주제들이 규약 조문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 인용이 완벽하지는 않다.

가변성 속군명칭의 어미: 30.1.4.2
가설적 개념: 1.3.1, G
강제적 변경, 명칭의: 19, 32.5, 34, G
개념, 가설적: 1.3.1, G
객관동물이명: 33.2.3, 61.3, 67.1.1, 67.8, 72.7, G
객관적: G
검색표
  검색표 안의 신학명: B8
격, 문법상의: G
견본 인쇄물: 21.8, 21A, 21E, 21G, G
계급: G
  계급의 변경: 10.2, 23.3.1, 29.2, 34, 36, 43.2, 45.5.1, 46.2, 50.3, 61.2
  과군명칭의 어미: 29.2, 34.1, 36
계급, 분류학적: G
공동기재: 기재, 공동을 보라
공동저자(저작권): 50, 51
공식 목록: 78.4, 80, G
공식 색인: 78.4, 80, G
과군: 35, G
과군명칭: 11.7, 13.2, 29, 34~41, 61~65, G
  과군명칭들 사이의 우선 지위: 23, 24, 35.5, 40, 55.5
  과명: 29.2, G
  대문자 첫 글자: 4.1, 28
  동등의: 36
동물이명관계: 23.3, 35.5, 40, G
모식속: 모식속을 보라
모식속 명칭의 동물이명관계: 40
모식속 명칭의 부정당수정: 35.4
모식속 명칭의 부정확한 어간: 29.3~5
모식속 명칭의 이물동명관계: 39
모식속의 동정: 65
모식속의 명칭에 근거를 둔: 11.7, 12.2.4, 13.2, 29, 35, 39, 61~65
부정확한 어미: 11.7, 29.2, 34.1
부정확한 철자법: 32.5.3, 34.1
분류계급의 변경: 29.2, 34.1, 36
분류군의 합병: 23.3
상과명: 29.2, G
색인 내에 발표된: 11.4, 12.2.2
생적분류군의: 10.3
세분된 과군 분류군: 37
속 이상의 명칭: 1.2.2, 11.7.1.2
수정: 11.7, 29, 32.5.3, 34.1, 35.4
심의회에 통보된 사례: 55.3, 65.2
아과명: 29.2, 35.3, 37, G
어미: 11.7, 29.2, 34.1
이물동명관계: 29.6, 29A, 39, 55
저작권: 11.7, 12.2.4, 13.2, 29
족명: 29.2
토속명칭: 11.7.2

하위동물이명인 속명에 근거를 둔: 40
하위이물동명인 속명에 근거를 둔: 39
형성: 11.7, 12.2.4, 13.2, 19, 29, 33, 34.1, 35
교정쇄: 9.3
교정자, 최초: 24, 32.2.1, 50.6, G
구두점
생략부호: 27, 32.5.2
쉼표: 22A.2
구별하다: 11.1.1, 13A, 13B
국제동물명명규약: 머리말, 1, 85~90
공식본문(어문): 86.2, 87
규정: G
규정의 잠정 시행: 머리말, 78.1, 81
목표: 머리말
발효일자 및 효력: 86
수정: 78.3, 80.1, 90
예외: 1.3
정의 및 범위: 머리말, 1, 85~90
조문: G
해석: 78.2.3, 80.2, 87, 89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심의회를 보라
국제생물과학연합회: 머리말, 77.2, 79, 90
국제세균명명규약: 10.5
국제식물명명규약: 10.5
군: 집합군, 과군, 속군 종군 등을 보라
권고: G, 또한 관련 조문 내의 권고, 부록 A(윤리 규정), 부록 B(일반 권고), 편집자를 보라
규약 조문의 잠정 시행: 머리말, 78.1, 81
규약, 명명: 10.5, G
규약, 국제동물명명: 국제동물명명규약을 보라
규약의 공식 문건: 86.2, 87
"규정, 윤리": 부록 A
"그것 자체": G
그리스어: G
명칭의 형성에서: 26, 29, 30
그림: 삽화를 보라
금지, 과군명칭 안의 이물동명관계: 29.6, 29A
금지, 명칭, 활동 및 저작물: 81, G
금지, 심의회: 79~81, G
금지명칭: 10.6, 39, 67.12, 81, G
부분의: 81.2.2
완전의: 81.2.1
조건부의: 81.2.3
기록, 음성의: 9.5
기생자: 69A.6
기재: G
공동
신과 및 신속의: 13.5, 13C
신속 및 신종의: 12.2.6, 13.4, 13C
권장 언어: 13B
명칭의 적합성에 필요한: 12, 13
모식표본의: 16D, 16F, 73A, 73C, 74C, 75.3.3
삽화 대신의: 12.2.7, 13.6.1
중단된: 10.1.1, 10A
기재 및 자료: B7
기준
발표의: 7~9
적합성의: 10~20

다수 원철자법: 19.3, 24.2, 32.2.1, G
단모식성: 68.3, G
사후의: 69.3, G
정모식확정: 73.1.2
담명모식: 61, 63, 67, 72, G
과군 명명분류군의: 모식속을 보라
담명모식으로 결정된 학명의 적용: 35.5, 42.3, 45.3, 61
동등분류군의: 46
모식표본의 라벨 적기: 16D, 72D~F, 73D, 74F
모식표본의 소장: 16.4.2, 16C~D, 72.10, 72D~F, 73C, 74D, 75.3.7
모식표본의 재발견: 75.8
모식화 원칙: 61.1, G
속군 명명분류군의: 모식종을 보라
심의회에 통보되어야 할 경우: 72.2, 75.6

종군 명명분류군의: 모식표본을 보라
대문자, 학명 속의: 4.5.6, 28
도서관, 저작물 소장의: 8.6, 9.7
동격 명사: 11.9, 31.1, 31A
동등 명칭: 36, 43, 46, G
동등 원칙: 36, 43, 46, G
동등분류군: 43.1
동모식: 72.4.6, 73E, 73.2.1
동물
  부분 및 발생단계: 17, 72.5
  활동치성물: 활동치성물을 보라
동물 분류군: G
  의미, 및 명칭의 적용: 1.2, 10.5, G
동물명명법: 머리말, 1~3, G
동물명명법공보: 78.4.3, 79.2, 79.3, 80.2, 80.3, 82.2, G
동물이명: G
  객관적: 61.3, G
  상위동물이명: 23, 24, G
  적합성: 10.6, 11.6
  주관적: 61.3, G
  치환명칭: 23.3.5, 40, 60
  하위동물이명: 10.6, 11.6, 23, 24, 50.7, G
동물이명관계: G
  과군명칭의: 23.3, 35.5, 40, 61.3
  동물이명관계 안에 출판된 명칭: 11.6, 67.12, 72.4.3
  모식속 명칭의: 40, 61.3
  속군명칭의: 23.3, 61.3, 67.10, 67.12
  종군명칭의: 23.3, 61.3
동물학자: G
동시 발표, 한 명칭의: 24, 55.5, 56.3, 57.7
동정, 담명모식의: 11.10, 41, 49, 65, 67.2.1, 67.9, 67.13, 69.2, 70
  둥근 괄호
    명명자의 성명이 들어 있는: 22, 51.2.1, 51.3
    아속명이 들어 있는: 6.1
    일자가 들어 있는: 22A.2.3, 40A
    집단의 명칭이 들어 있는: 6.2

라틴어: G
  라틴어 문장 속의 명칭: 11.8, 11.8, 32.5.2.7
  명칭의 어간: 29
  명칭의 형성: 11, 26, 30
  문자: 11.2
  복합 명칭의 라틴어 문자: 32.5.2
  형용사: 31.2, 34.2
라틴어 문장의 술어: 색인 및 용어 해설을 보라
라틴어화: G
  그리스어 문자의: 30.1.3
  기타 문자의: B5
  부정확한: 32.5.1
  인명의: 31.1
린네반복명칭관계: 68.5, G
린네의, 자연 계통: 3.1

마이크로필름: 9.4
망각명칭: 23.9.2, 23.12, 55.3.1, G
명명규약: 10.5, G
명명모식 분류군: 37, 44, 47, 61.2, 67.1.1, 68.3.1, 72.8, G
명명모식아속의: 44.1, 61.2
명명법: G
  동물학적: 머리말, 1~3, G
  이명식: 5, 11.4, 12.2, G
명명분류군: G
명명의: G
명명자 성명의: B12
명명자, 저자 G
명명자(저작권): 50~51
  과군명칭: 11.7.1.3, 13.2, 36.1, 40.2.1, 40A, 50.3.1
  동물이명관계에 발표한 명칭: 11.6, 50.7
  동시에 발표된 명칭의: 50.6
  명명자 성명의 약자: B12

배제된 명칭의: 50C, 51F
변경된 계급의 분류군 명칭: 50.3
부적합명칭: 50B, 51D
속군명칭: 43, 50
수정: 33.2, 50.4, 50.5
승격된 아종하 명칭: 10.2, 45.5.1, 50.3
신조합 명칭: 50.3.2, 51.3
인용: 51
저자 불명의: 14, 50.1, 51D, G
종군명칭: 46.1, 50
회의 자료 안의 명칭의: 50.3
명사, 동격의: 11.9.1.2, 31.1, 31.2, 34.2.1
명사, 성이 가변적인: 30.1.4.2
명사구: 31.2.1, G
명칭: G
가변적 성: 30.1.4.2
공식 색인 및 목록 속의: 78.4, 80, G
과군: 과군명칭을 보라
과군 이상의 분류군의: 1.2.2, 4.1, 28
금지의: 10.6, 39, 67.1.2, 81, G
부분금지: 81.2.3
전면금지: 81.2.1
조건부 금지: 81.2.3
기재에 근거를 둔: 72.5.6, 74.4
다형성 종의: 17.3
대체의: 신명칭(신대체명칭), 치환명칭을 보라
동등의: 36, 43, 46, G
동물 활동치성물의: 1.2.1, 1.3.6, 13.6.2, 23.3.2.3
동물의 몸의 일부, 한 쪽 성, 발생과정, 형 또는 계급의 일부에 근거를 둔: 17, 23.3.2
모욕적인: 부록 A
무효의: 10.6, 23, 39, 40, 50, 57, 59, 60, G
반복명칭의: G, 반복명칭관계를 보라
배제된: 1.3, 1.4, 3.2, 8.3, 8.4, 23.3.4, 45.5, G
변이체 또는 종형의: 15.2, 45.5, 45.6, G
보류의: 81.1, G
보편성: 머리말, 23.2, 23.9, 65.2, 70, 75.5, 81
복합의: 11.2, 11.9.5, 26, 30.1, 31.2.3, 32.5.2, G
부적당의: 18, 23.3.7, B5, G
부적합의: G, 적합성을 보라
사후 사용자의 인용: 51.2.1
삼명의: 5.2, G
삽입의: 6, 11.9.3.5, 23.3.3, G
삽화에 근거를 둔: 12.2.7, 13.6.1, 72.5.6, 73.1.4, 74.4
상과: 29.2, G
상이한 세대 중 하나에 근거를 둔: 17.3
"새로운"이라고 재출판: B10
생적분류군 명명의: 1.2.1, 10.3, 13.3.3, 23.7.3, 42.2.1, 55.1, 56.1, 57.1, 66.1
속 이상의: G
속군: 속군명칭을 보라
신명칭: 또한 신명칭(신대체명칭), 치환명칭을 보라
1999년 이후 생적분류군 및 종군 분류군에 대한 강제적 모식확정: 13.3.3, 72.3
1999년 이후 "신"강제적이라고 명확히 인용한: 16, 16A
아과: 29.2, 35.5, 37, G
아속의: 4.2, 6.1, 42~44, 56.3, 57.4, G
아종본명의: 5, 6.2, 45~49, G
아종의: 5.2, 45, G
안정성: 머리말, 23.2, 65.2, 70, 75.6, 81, B1~2
어원: 11A, 25B~C, B5
유효의: 11.5, 23, 24, G
이명식: 5, 6.1, G
이물동명관계에 가입하지 못하는: 54, 57.8.1
인명: 31.1
일명식의: 4.1, G
일시적 참고만을 위한: 1.3.5
일자: 일자를 보라
잠정적으로 유효한: G
잠정적인: 1.3.5
잡종에 근거를 둔: 1.3.3, 17.2, 23.8
저자 불명의: 14, 50.1, 51D, G

저작권: 저작권을 보라
조건부의: 11.5.1, 15.1, 51.3.3, G
종군: 종군명칭을 보라
종군 집단 명명의: 6, 11.9.5, 23.3.3
종명: 5, G
종본명: 5, G
종하의: G
종형 또는 변이체의: 15.2, 45.5, 45.6, G
집합군 명명의: 1.2, 10.3, 13.3.2, 23.7, 42.2.1, 66, 67.14
철자법: 철자법을 보라
출판된
  1757년 이후: 3, 11
  1900년 이전: 11.7.2
  1930년 이후: 13.6, 9.1, 13, 67.4.1
  1931년 이전: 11.4.3, 12, 67.2.2, 68.2.1, 69
  1950년 이후: 14
  1960년 이후: 15, 45.6
  1961년 이전: 10.2, 11.5, 11.6, 13.2.1, 15, 45.6, 51.3.3, 72.4.3
  1985년 이전: 32.5.2.1
  1999년 이후: 8.6, 13.3.3, 16, 21.8, 29.4, 29.6, 66.1, 72.3, 86.1.2
  2000년 이전: 8.5, 13.3.3, 21.8, 66.1, 72.2
  동시에: 24, 55.5, 56.3, 57.7
  라틴어 본문 내에: 11.8, 11.9, 32.5.2.7
  색인 내에: 11.4.3, 12.2.2, 13.6.1
  오동정 종으로서: 11.10, 49, 67.2.1, 67.9, 67.13, 69.2.4, 70.3
  적요, 목차, 서문, 또는 검색표 내에: B8
  하위동물이명으로서: 11.6, 50.7, 67.12, 72.4.3
  회의 자료 내에: 9.9, 9A, 50.2, 50A
치환의: 10.6, 23.3.5, 33.2.3, 35.4.2, 37.2, 40.2, 59, 60, G
토속명칭: 1.3.5, 11A, 12.3, G
폐기의: 1.4, 18, 23.3.7, 23.12, 59.2, 59.3, 60, G
학명: 1, 4~6, G
  한 문자 차이: 55.4, 56.2, 57.6, 58
  형성: 형성, 라틴어화, 철자법, 어미 등을 보라
  화석에 근거를 둔: 1.2.1, 20, 72.5.3, 73.1.5
명칭 인용의: 11.9.2.3, 25A, B11
명칭의 원철자법의: 32.5.2.4
모식: G, 또한 모식속, 모식종, 모식표본을 보라
모식계열: 72, 75A, G
모식산지: 76, G
모식속: 61, 63~65, G
  동등분류군의: 36.1, 37, 61.2
  명명모식아과의: 61.2
  명칭의 동물이명관계: 40, 61.3
  명칭의 어간: 11.7, 29, 55.3
  명칭의 이물동명관계: 39
  심의회에 제출한 사례: 41, 55.3, 65.2
  오동정의: 41, 65.2
  확정된: 61.4, 64, 65.2
  확정시의 아속: 61.4
모식숙주: 73C.7
모식종: 61, 66~70, G, 또한 모식종 확정을 보라
모식표본: 61, 71~76, G
  담명의: 61, 63, 67, 72, G
  동모식: 72.4.6, 73E, 73.2.1, G
  부모식: 72.1.3, 72.4, 73D, G
  부후모식: 73.2.2, 74.1.3, 74F, 75.1, 75A, G
  산지모식: 75A, G
  신모식: 72.2, 72.10, 75, 76.3, 79.1.3, 79.5.2, G
  이성모식: 27A, G
  “인자형”: 67A, G
  정모식: 16.4, 72~75, G
  총모식: 72, 73.2, 74, 75, G
  하판토모식: 72.5.4, 73.3, G
  후모식: 72.1.1, 72.1.2, 72.10, 73.2.2, 74, 75.1, 75.8, G
모식하판토: 72.5.5
모식화 원칙: 61, G
모식확정: 확정을 보라
모음 변화: 32.5.2.1
모음, 연결: 35.2, 58.12

목록, 동물적합명칭의: 78.2, 79.80, G
목록, 정식의: 78.4, 80, G
무자격명칭: G
무효명칭: 10.6, 23, 39, 40, 52, 57, 59, 60, G
무효의: G
문법용어
  동격 명사: 11.9.1.2, 31.1
  명사, 변성의: 30.1.4.2
  명칭의 어간: 29, 31.1.2, 55.3
  성의 어미: 30, 31.2, 34.2, G
  소유격 어미: 29, 3~5, 31, 33.4, G
  접속사, 문법용어로 연관된 단어들의: 11.9.4
  형용사적 종군명칭: 11.9, 31.2, 34.2
문자
  라틴어의: 11.2
  복합 명칭의: 31.2.1, 32.5.2
  첫 문자: 4.1, 5.1, 28
  한 문자 명칭: 11.8, 11.9.1
문헌참고: 참고, 문헌을 보라
미확정 명칭: 75.5, G
미확정종: 67.2.5, G

발췌 인쇄물(복제 인쇄물): 21.8, 21A, 21E, G
변경
  분류계급의: 10.2, 23.3.1, 29.2, 34, 36, 43.2, 45.5.1, 46.2, 50.3, 61.2
  어미의: 29, 31~36, 48
  접미사의: 29.2, 32.5.3, 34.1, 36.1
  조합의: 22A.3, 48, 50.3, 51.3, 51G
보호명칭: 23.9.2, 57.2.1, G
부록, 규약의 지위: 89.2
부적합명칭: 18, 23.3.7, B5, G
부적합성, 명칭 · 활동 및 저작물의: G
부정당수정: 10.6, 19.1, 33.2, 35.4, 50.5, 51.3.1, 67.6, 67.8, B1~2, G
부정성명: 8.2, 8.3, 8E, 9A
부정확한 철자법: 철자법을 보라
부칙, 심의회의: 84.2
분과, 동물명명법(IUBS): 77.3.1, 90
분류 집단: G
분류, 신분류군의: B4
분류계급: G
분류군: 1, G
  과군: 35~41, 62~65, G, 또한 과군명칭을 보라
  과군 이상의: 1.2.2
  동물학적: 23.3
  명명모식: 61.2, 67.1.1, 68.3.1
  명명의: G
  분류학적: G
  비동물의: 1.2, 10
  생적분류군: G, 또한 생적분류군 항을 보라
  속군: 42~44, 66~70
  신분류군의 분류: B3
  아종하의: G, 또한 아종하 명칭을 보라
  유연분류군과의 비교: 13A, B4
  종군: 42~49, 71~75, 또한 종군명칭을 보라
  하위의: 37, 44, 47, G
  합병: 23.3
  화석: 1.2.1, G
분류학: G
분류학 영역: 79.1.1, G

사진: 9.2
사후의
  단모식성: 69.3, G
  사용, 명칭의: 51.2.1, 51G
  지정, 담명모식의: 67.4, 68, 74, 75, G
  철자법: 철자법을 보라
산지(지점): 모식산지를 보라
산지모식: 75A, G
삽입명칭: 6, 11.9.3.5, 23.3.3, G
삽화, 표본의: 12.2.7, 13.6.1, 16F, 72.5.6, 73.1.4, 74.4
상과: 35, G
상과명: 과군명칭을 보라

상위동물이명: 동물이명을 보라
상위이물동명: 이물동명을 보라
색인: G
  공식적: 78.4, 80, G
  색인 내 명칭: 11.4.3, 12.2.2, 13.6.1
생략부호: 27, 32.5.2
생적분류군의: 13.3.3, 66.1
세분
  과군 분류군의: 37
  속의: 10.4
속 이상의: G
속 이상의 명칭: 1.2.2, 11.7.1.2, G, 또한 과군명칭을 보라
속군: 42, G
속군명칭: 4, 6.1, 10.3, 10.4, 11.8, 12, 13, 16.3, 20, 24, 30, 32, 33, 42∼44
  계급의 변경: 23.3.1, 43, 50.3
  글자 형태: 136
  대문자: 4, 28
  대체: 23.3.5
  동물이명관계: 23.3, 61.3, 67.11, 67.12
  모식속: 모식속을 보라
  모식종: 모식종을 보라
  별도의 종의 기재가 없는 속명: 12.2, 13.4
  부 및 절: 10.4, G
  분류군의 합병: 23.3, 67.10
  생적분류군: 생적분류군을 보라
  성: 30, B5
  속군명칭 사이의 우선 지위: 23, 24, 56.3
  속명: 11.8, 13.3, 16.3, 20, 30, 42∼44, 56, G
  수정: 11.8, 19, 32, 33
  아속, 모식확정시의: 61.4
  아속명: 4.2, 6.1, 42∼44, 56.3, 57.4, G
  어미, 화석: 26
  우선권: 23
  유효성: 23
  이물동명관계: 53.2, 56, 60
  저작권: 43, 44, 50, 51
  적합성: 적합성을 보라
  조건부의: 11.5, 11.9.3.6, 15, 51.3.3
  종이 없는 속명: 12, 13.3, 69
  집합군: 집합군을 보라
  철자법: 철자법을 보라
  형성: 형성을 보라
속명: 11.8, 13.3, 16.3, 20, 30, 42∼44, 56, G
수정: G
  과군명칭의: 11.7, 19, 29, 32.5.3, 33, 34.1, 35.4
  부정당의: 10.6, 19.1, 33.2, 35.4, 50.5, 51.3.1, 67.6, 67.8, G
  속군명칭의: 11.8, 19, 32, 33
  수정에 영향받지 않은 모식표본: 67.8
  일자의: 19, 33.2
  저작권의: 19, 33.2, 50.4, 50.5
  적합성의: 19, 33
  정당의: 19.2, 32.2, 33.2, 50.4, G
  종군명칭의: 11.9, 19, 31.2, 32, 33, 34.2
수정, 규약의: 78.3, 80.1, 90
숙주: 12.3, 69A.6, 73C.7
숫자, 복합 명칭 안의: 11.2, 32.5.2.6
스웨덴의 거미류, 클러크의: 3.1
식물명명법: 1.4, 1A, 10.5
식별특징, 분류군의: 13A, 13B, G
신명칭(신대체명칭): 12.2.3, 13.3.1, 16.1, 16.4, 39, 60A, 67.8, 69.2.3, 72.3, 72.7, G
신모식: 72.2, 72.10, 75, 76.3, 79.1.3, 79.5.2, G
“신속”, “신종”: 12.2.6, 13.4, 68.2.1
“실질반복명칭관계”: 69A.2, G
심의회에 제출한 사례: 70.2

악센트: 부호, 발음을 보라
안정성, 학명의: 머리말, 23.2, 65.2, 70, 75.5, 81, B1∼2
약자: G
어미, 명칭의: G
  성: 30, 31, 34.2, G
  소유격: 29, 3∼5, 31, 33.4, G, 또한 어미를 보

라
어원, 명칭의: 어원을 보라
언어
규약의 공식 문건: 86.2, 87
기재 및 정보: B7
명칭: 11, 11A, 26, B5
연결모음: 32.5, 58.12
연결부호: 11.2, 27, 32.5.2.3, G
예, 규약 안의 지위: 89.2
오기: 32.5.1, G
오동정의: 11.10, 67.13, 69.2.4, 70.3
오적용 또는 오동정: G
고의적 사용: 11.10, 67.13, 69.24
모식속의: 41, 65.2
모식종의: 11.10, 41, 49, 67.13, 69.2.4, 70.3
종의: 11.10, 49, 65.2, 67.13, 69.2.4, 70
우선: G, 또한 우선권을 보라
과군명칭 사이의: 23.9, 24, 35.5, 40, 55.5
동시 발표된 명칭의: 24, 55.5, 56.3, 57.7
모식종 확정의: 68
속군명칭 사이의: 23, 24, 56.3
종군명칭 사이의: 23, 24, 57.7
우선권: 23, G, 또한 우선을 보라
원래 포함된 종: 67~70
원생생물: 1.1.1, 72.5.4, 73.3, G
원이물동명: 23.9.5, 53.3, 57.2, 57.4, G
원지정: 67.5, 68.2, G
원철자법: 철자법을 보라
원출판물: G
원칙
동등: 36, 43, 46, G
모식확정: 61, G
우선권: 23, G
이명식 명명법: 5, 11.4, 12.2, G
이물동명관계: 52, G
최초 교정자: 24, G
“위치우선”: 69A, 10
윤리 규정: 부록 A
음성 기록: 9.5
이물동명: G
대체: 23.3.5, 39, 55.3, 59, 60
변형철자법: 58
상대적 상위 성: 23, 24, 50.6, 52, 55.5, 56.3, 57.7, 81.2.1
상위이물동명: 23, 52, 55.5, 56.3, 57.7, G
원이물동명: 23.9.5, 53.3, 57.2, 57.4, G
하위이물동명: 10.6, 23, 39, 52~56, 67.1.2, G
후이물동명: 53.3, 57.3, 57.4, 59, 60, G
이물동명관계: 50~60, G
과군명칭: 29.6, 29A, 38, 39, 53, 55
모식속 명칭: 39, 67.1.2
비목록화된 명칭: 54, 55.4, 56.2, 57.6, 57.8
생적분류군의 명칭: 56.1, 57.1
속군명칭: 53.2, 56, 60
이물동명관계 원칙: 52, G
이상개체: 45.6.2, G
종군명칭: 23.9.5, 53.3, 57~60
집합군 명칭: 23.7, 56.1, 57.1
한 글자 차이: 55.4, 56.2, 57.6
이성모식: 72A, 72.4.6, G
이탤릭체, 학명 표기의: B6
“인자형”: 67A, G
일명식 명칭: 4.1, G
일시적 참고, 명칭 사용의: 1.3.5
임의 문자 조합의 글자: 11.3, G
성: 30.1.4.1, 30.2
어간: 29.3.3

잡종: 1.3.3, 17.2, 23.8, G
저자, 명명자: G
저자 불명의: G
명명활동: 14
저작권: 14, 50.1, 51D, G
저작물: G
저작물: 8, 9, G, 또한 발표물을 보라
공식 색인 및 목록의: 78.4, 80, G
금지의: 8.7, 81, G

미발표의: 8, 9, G
발표 중단의: 10.1.1, 10A
배포: 8.1, 8.5, 8.6, 8A∼C, 9, 21A
보존의: G
부정성명의: 8.2, 8.3, 8E, 9A, G
저자 불명의: 14, 50.1, G
적합의: 8, 9, 11, 14, G
출판: 8, 9, G
1758년 이전의: 3
동시의: 24, 50.6
부분적: 21.5, 21C
부적합의: 8, 9, 11, 14, 81, G
폐기의: G
적합성, 명명활동의: 10, 11, 14, 15, G
적합성, 명칭의: 10∼20, 79.4, 80.6, G
강제적 변경의 영향: 19.4
공식 목록에 포함된: 80.6.1
과군명칭의: 10∼15, 17∼20
금지명칭의: 10.6
다수 원철자법의: 19.3, 24.2.3
다형성 종의 한 가지 형에 근거를 둔 명칭의: 17.3
동등 명칭의: 36, 43, 46
동물 활동치성물에 근거를 둔 명칭의: 1.2.1, 1.3.6, 10.3, 13.3.3, 13.6.2, 23.7.3, 42.2.1, 66.1
동물의 생활사 단계에 근거를 둔 명칭의: 17.3
동물의 한 쪽 성에 근거를 둔 명칭의: 17.3
동물적합명칭 공식 부분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명칭의: 10.7, 79.4.3
동물적합명칭 부분목록에 포함된: 79.4.1
동물체의 일부에 근거를 둔 명칭의: 17.3
망각명칭의: 23.9.2, 23.12
반복명칭의: 18
복합 명칭의: 11.2, 11.9, 32.5.2
부적당명칭의: 18
무효명칭의: 10.6
삽입명칭의: 11.9.3.5
아종하 명칭의: 10.2, 45.5, 45.6
부정확한 철자법의: 19.1, 32.4, 33.3
불필요한 치환명칭의: 10.6
사용된
비동물 분류군에 대하여: 2.2, 10.5
오동정된 종에 대하여: 11.10, 67.13
생적분류군을 위한 명칭의: 10.3, 13.3.3, 23.7.3, 42.2.1, 66.1
속군명칭의: 10∼15, 17∼20
속의 구분을 위한 명칭의: 10.4
수정된 원철자법의: 19.2, 33.2.2
수정의: 10.2, 45.5.1
숫자 또는 기호가 포함된 명칭의: 11.2, 27, 32.5.2
"승격된" 아종하 명칭의: 10.2, 45.5.1
잡종에 근거를 둔 명칭의: 1.3.3, 17.2, 23.8
저자 불명의: 14
적합명칭의 저작권: 11.10, 45.5, 50
정확한 원철자법의: 19.2, 33.2.2
제안된 명칭의
1758년 이전의: 3.2, 11.1, 11.6.2
1900년 이후의: 11.7.2
라틴어 본문의: 11.8, 11.9.2
조건부로 제안된 명칭의: 11.5, 15.1
종 집단 또는 아종 집단 명칭의: 6.2, 11.9.3, 23.3.3
종군명칭의: 10∼19
부적합 속명으로 제안된: 24.2.3
일시적 조합으로 제안된: 11.9.3.4
"지증"에 의한: 12, 13.6
집합군을 위한 명칭의: 10.3, 23.7
최초 교정자가 폐기한 철자법의: 24.2.3
최초에는 동물로 분류되지 않은 생물에 대한 명칭의: 10.5
출판된
1930년 이후: 1.3.6, 9.1, 11.4.3, 13
1931년 이전: 11.4.3, 12
1950년 이후: 14
1960년 이후: 13.2.1, 15, 45.6

1961년 이전: 10.2, 11.5, 11.6, 13.2.1, 15, 45.6, 51.3.3, 72.4.3
1985년 이전: 32.5.2.1
2000년 이전: 8.5, 13.3.3, 21.8, 66.1, 72.2
2000년 이후: 8.6, 1.3.3.3, 16, 21.8, 29.4, 29.6, 66.1, 72.3, 86.1.2
금지저작물 내에: 8.7.1, 80.7.2
변이체 또는 종형에 대하여: 10.2, 45.5, 45.6
색인 내에서: 11.4, 12.2.2
하위동물이명으로서: 11.6
토속명칭의: 11A, 11.7.2, 12.3
필요조건: 10~20
하나 이상의 분류군에 근거를 둔 명칭의: 17.1
하위동물이명의: 10.6
하위이물동명의: 10.6
한 글자로 구성된 명칭의: 11.8, 11.9.1
현재 동물로 분류되지 않는 생물에 대한 명칭의: 2.2
화석에 근거를 둔 명칭의: 1.2, 20
적합성, 저작물의: G, 출판, 저작물을 보라
전자명칭: G
전자적으로 배포된 문건: 9.8
전통적 인쇄법: 8.4, 8.5
절, 속 이하의: 10.4, G
절대반복명칭관계: 68.4, G
절멸의: G
접속사
접속사로 관계 지어진 단어: 11.9.4
정오표: 33.2, G
정지, 규약 조문 시행: 머리말, 81~83
제안(제의): G
동물적합명칭목록의 일부 채용: 70
명칭: 11.5.1, 15
조문, 규정의: G
조직규정, 심의회의: 77, 84, G
조합: G
새로운(변경된): 22A.3, 34.2, 48, 50.3.2, 51A, 51.3, 51G
잠정적: 11.9.3.4
조합, 문자, 임의적: 임의 문자 조합을 보라
족: 29.2, 35, G
종: G
다형적: 17.3
명명의: 용어 해설을 보라(명명분류군)
분류학적: 68.3
숙주: 12.3, 69A.6, 73C.7
오동정의: 11.10, 49, 65.2, 67.13, 69.2.4, 70
원래 포함된 명명종: 11.10, 67.2, 67.3, 67.13, 68, 69, G
종, 지위미정의: 67.2.5, G
종군: 45~49, G
종군 분류군(모식표본)의
1999년 이후 강제적: 72.3
담명모식 표본의 기재 및 삽화: 72.5.6
동물이명 발표의 명명종의: 72.4.3
신모식의: 75
정모식의: 73
총모식의: 72.3, 74.6
합격된 표본: 72.5
후모식의: 73F, 74
종군명칭: 5, 6, 31~34, 45~49, G, 또한 적합성, 형성, 라틴어화, 명칭, 철자법을 보라
1999년 이후 담명모식의 확정 및 소장: 16
1999년 이후 새로운 강제적 종군명칭이라고 인용된: 16.1
동등의: 46.1
동물이명관계: 23.3, 61.3
명칭들 사이의 우선 지위: 23, 24, 57.7
모식종: 모식종을 보라
변이체 또는 종형: 15.2, 45.5, 45.6, G
복합의: 11.2, 11.9.5, 31.2.3, 32, 5.2
부적합 속명으로 창설된: 11.9.3
삽입의: 6, 11.9.3.5, 23.3.3, G
생적분류군의: 10.3, 13.3.3, 23.7.3, 42.2.1, 66.1
성의 일치: 31.2, 34.2

수정: 11.9, 19, 31.2, 33, 34.2
숫자 또는 기호가 포함된: 11.2, 27, 32.5
아종본명: 5, 45, G
아종하 분류계급에서 “승격된”: 10.2, 45.5.1, 50.3
오적용 또는 오동정의: 11.10, 49, 67.13, 69.2.4, 70, G
이물동명관계: 52~55, 57~60
임시적 속명 조합으로 창설된: 11.9.3.4
저작권: 46, 50
조합의 변경: 22A.3, 34.2, 48, 51.3
종본명: 5, G
종형 또는 변이체: 15.2, 45.5, 45.6, G
집단에 대한: 6.2, 10.4, 23.3.3, G
첫 글자: 5.1, 28
하위분류군의: 47
형성: 5, 11, 25~28, 31~33, 58
종명: 5, G
종본명: 5.1, G
종하명칭: G
종형: 15.2, 45.5, 45.6, G
지배, 분류학의: G
집단, 종: 6.2, 10.4, 23.3.3, G
집합군: 1.2, 10.3, 13.3.2, 23.7, 42.2.1, 66, 67.14

착오, 철자법의: 32.5, G
참고, 문헌의: G
명칭의 원출판물의: 51A, B10
삽화의: 12.2.27, 13.6.1
정의 또는 기재의: 12.2, 13.1.2, 75.3.2
창설: G
철자법: 24.2, 25, 27~29, 32~34, G, 또한 임의 문자 조합, 명칭의 형성, 접미사를 보라
강제적 변경: 19, 32.5, 34, G
다수 원철자법: 19.3, 24.2, 32.2.1, G
발음부호: 27, 32.5.2, G
변형의: 53, 58, G
부정확한: 19, 32, 33, 54.3, 67.6, G
부정확한 사후철자법: 33, 34, G
부정확한 원철자법: 19, 24.2, 32.4, 32.5, 33.2, G
사후철자법: 19, 33, 34, 35.4, 67.6, 79.4, G
원철자법: 24.2, 32, G
정확한 원철자법: 24.2, 29, 31, 32, G
첫 글자, 명칭의: 4.1, 5.1, 28
총모식: 72, 73.2, 74, 75, G
최초 교정자: 23.1, 24.2, 32.2.1, G
원칙: 24.2, G
출판, 출판물: 7~9, G, 또한 저작물, 적합성을 보라
견본 인쇄물: 21.8, 21A, 21E, 21G, G
대체명칭: 명칭, 신명칭, 치환명칭을 보라
동시 발표의, 명칭의: 24, 55.5, 56.3, 57.7
발췌 인쇄물(복사본): 21.8, G
방법: 8~9
신학명이라고 재출판하는 것: B10
용어: 머리말, 89
원출판물: G
일자: 10.1.1, 10A, 21~22, G
저자 불명의, 명칭 또는 명명활동의: 14, 50.1, G
중단된 출판: 10.1.1, 10A
편집자에 대한 건의: 편집자를 보라
치환명칭: 10.6, 23.3.5, 33.2.3, 35.4.2, 37.2, 40.2, 59, 60, G

특징, 분류학적: 13.1, 13A, G

판정, 심의회의: 78~83, G
편집자
명칭, 활동, 또는 정보의 출판: 10A, 21B
발췌 인쇄물 및 복제 인쇄본 안의 자료: 21E
부정성명: 8E
윤리적 원칙을 위반하는 저술: 부록 A
출판 일자 표기: 21A~C, 21E

편집자에 대한 권고: 8B, 8D, 8E, 부록 A 및 B
폐기: G
폐기, 명칭의: 1.4, 1.8, 23.3.7, 23.12, 59.2, 59.3, 60, 60.3, G
표본: G
기형의: 1.3.2, G
모식: 모식표본을 보라
비정상의: 17.3
잡종: 1.3.3, G

하나 이상의 속군 분류군의: 67.11
하위동물이명: G, 동물이명을 보라
하위이물동명: G, 이물동명을 보라
하판토모식: 72.5.4, 73.3, G
학명: 1, 4~6, G
한 개 단어 명칭: 11.8, 11.9.1
한 글자 명칭: 11.8, 11.9.1
한 글자 차이: 55.4, 56.2, 57.6, 58
한 글자 차이, 명칭의: 55.4, 56.2, 57.6, 58, G
합병, 분류군의: 23.3
합병된 속군 분류군의: 67.10
해석, 규약의: 머리말, 78.2.3, 89
현생의: G
형성, 학명의: 4.5, 11.7, 25~29, 31, 32, 또한 라틴어화, 철자법, 어미, 음역 등을 보라
과군명칭: 4, 11, 12.2.4, 13.2, 29, 32, 33, 34.1
라틴어: 라틴어화를 보라
명명자에 대한 권고: B5
명사적 유래: 11.8, 11.9, 31
명칭의 그리스어 어간: 29
명칭의 라틴어 어간: 29
명칭의 첫 글자: 4, 28, 32.5.2.5
복합 명칭 안의 숫자: 30.5.2.6
속군명칭: 4, 11, 20, 25~28, 30, 32, 33, B3~9
속군명칭의 성: 30, B5
연결부호 및 발음부호: 27, 32.5.2.3
인명에서 유래: 31.1, 31A
임의 문자 조합: 11.3, 29.3.3, 30.2, 31.2.3
종군명칭: 5, 11, 25~28, 31~33, 58
종군명칭의 성의 일치: 31.2, 34.2
학명의 어간: B6
형용사, 명칭의: 11.9, 31.2
형용사적 유래: 11.9, 31
화석: 또한 생적분류군을 보라
표본: 1.2.1, 72.5, 73.1.5, 73C.10
화석에 적용된 속군명칭: 20
확정, 담명모식: 61, G
결여된: 65.2.2, 70.2
모호한: 67.5.3
부정성명의: 8.2, 8.3
저자 불명의: 14
조건부의: 15, 67.5.3, G
확정, 모식속: 64
아속: 61.4
오동정의 모식속: 65
확정, 모식종: 13.3, 66~70
1930년 이후: 13.3
고의적 오동정: 11.10, 67.13, 69.2.4
단모식성: 68.3, G
동물이명의 지정: 69.2.2
문헌 기록성 출판물 안의: 69.1.2
반복명칭관계: 반복명칭관계를 보라
부정확성의 이유: 69.1.1
부정확한 인용: 67.7
부정확한 철자법: 67.6, 69.2.1
사후단모식성: 69.3
사후지정: 69.1, 69.2, G
수정: 67.6, 69.2.1
아종: 61.4
우선: 69A
우선순위: 68.1
원지정: 67.5, 68.2, G
"위치": 69A, 8~10
"제외법": 64.4, 69A.3, G
지정의 엄격한 해석: 67.5
"typicus" 및 "typus"의 사용: 68.2.2
활동, 명명: G

금지: 81.1
무효의: 70.2, G
부적합의: 14, 15.1, G
부정성명의: 8.2, 8.3
유효의: 23.1, 69.1, 70.2, G
저자 불명의: 14, G
적합의: 3.2, 10, 11, G
조건부의: 15.1
회의
요약 및 보고서 안의 명칭: 9.9, 9A, 50.2, 50A
회의 자료: 9.9, 9A, 50.2, 50A
획득성, 출판물의: 8.1.3
후모식: 72.11, 72.1.2, 72.10, 73.2.2, 74, 75.1, 75.8, 76.2, G
후생동물: 1.1.1, G
후이물동명: 53.3, 57.3, 57.4, 59, 60, G

Zoological Record: 8A, B9

■ 역자: 김일회

전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현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소속

국제동물명명규약 (제4판) 한국어판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Fourth Edition) Korean Edition

발 행 일 2017년 10월
발 행 처 국립생물자원관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032-590-7200, 홈페이지 www.nibr.go.kr
저　　자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번　　역 김일회
감　　수 민기식, 박중기, 한호연
기　　획 남은정, 길현종, 유정선, 서민환
편집·출판 정행사
전화 02-2232-3281～2, 홈페이지 www.junghaengsa.co.kr

ISBN 978-89-6811-286-7 (93490)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241-01

Copyright @ International Trust for Zoological Nomenclature
Korean Edition Copyright @ 2017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비매품/무료
93490
9 788968 112867
ISBN 978-89-6811-286-7